I·SEOUL·U
너와 나의 서울

#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603호
2020. 8. 27.(목)

서울특별시

# 목 차


◈ 자치법규

[예 규]

제726호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전부개정규정 ·····3

제727호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18

[입법예고]

제2020-2531호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1

◈ 고 시

제2020-350호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2

제2020-351호 은평구 대조동 2-9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66

제2020-352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70

제2020-356호 도시관리계획(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71

제2020-357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81

제2020-358호 도시관리계획(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중구 광희동1가 16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83

◈ 공 고

제2020-2423호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 등록 계획 공고 ·····96

제2020-2429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100

제2020-2449호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장 공시송달(공고) ·····100

제2020-2467호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104

제2020-2471호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을 위한 의견 수렴 ·····105

제2020-2472호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13

제2020-2474호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115

제2020-2478호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116

제2020-2479호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116

제2020-248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117

제2020-2498호 서울특별시 문화재 등록 계획 ·····118

제2020-2499호 중도매업 허가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121

제2020-2513호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122

제2020-2521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129
제2020-2530호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130

◈ 공직자윤리위원회
제2020-8호 2020년 수시 재산변동사항 공고 ·····131

◈ 구 고 시
제2020-129호 도시계획시설(숭인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종로구) ·····133
제2020-132호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종로구) ·····141
제2020-134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종로구) ·····142
제2020-15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용산구) ·····142
제2020-9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동대문구) ·····146
제2020-169호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구로구) ·····147
제2020-145호 도시계획시설(암사역사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강동구) ·····149

◈ 구 공 고
제2020-95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공고(변경)(강북구) ·····152
제2020-1294호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시설:예술의전당)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서초구) ·····157
제2020-129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서초구) ·····158
제2020-1322호 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송파구) ·····158

◈ 사업소고시
제2020-23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60
제2020-240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60
제2020-241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61

◈ 사업소공고
제2020-242호 한강 불법어구 폐기처분 공고(안)(한강사업본부) ·····162

◈ 기 타
제2020-251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63
제2020-253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63

◈ 정 정
제2020-354호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지정 정정 고시 ·····165

# 자치법규

[예 규]

◈ 서울특별시예규 제726호

##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전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보호의 원칙) ① 수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기본 권리인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중시하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인권존중 수사 환경 구축과 수사관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수사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교사(敎唆)·방조하여서도 안 된다.

② 수사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속적인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수사관은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을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하거나 변호인과 접견·교통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 자백도 이와 같다.

제4조(차별의 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공정한 수사) ① 수사관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하여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사관은 사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분이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하거나 소속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수사관은 사건관계인의 가입 정당, 소속 기업, 사회단체, 그 밖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6조(수사의 비례성) 수사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수사해서는 안 된다.

제7조(명예·사생활 등의 보호) 수사관은 수사의 전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임의수사의 원칙) ① 수사관은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나 승낙 하에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를 활용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② 수사관은 임의수사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임의동행을 한 경우 필요한 확인이 끝나는 즉시 귀가시켜야 한다.

④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낮은 수사 절차와 방법을 강구한다.

제9조(인권교육의 실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관에 대하여 반기 1회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2장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제10조(인권보호 제도의 안내) 수사관은 사건관계인을 대상으로 조사 또는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휴식시간 보장, 심야조사 제한, 메모 허용 등 본 준칙의 주요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당한 수사방식 제한) ① 수사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

② 수사관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인권침해 신고) ① 사건관계인은 이 준칙 위반을 비롯하여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게 그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사실을 민생사법경찰단에 신고한 경우 이를 접수한 수사관은 즉시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사건관계인이 인권보호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120다산콜재단이나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도 이를 접수한 수사관은 즉시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불이익 금지) 수사관은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4조(인권에 관한 의견 청취)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향상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나 각종 인권단체의 권고,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인권에 관한 각종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 제1절 수사의 착수

제15조(내사·수사의 착수) 수사관은 범죄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빙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내사·수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16조(내사·수사의 종결) 수사관은 내사·수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고,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속히 내사·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제17조(출국금지 등의 억제) 수사관은 수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나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 제2절 체포·구속

제18조(체포·구속의 최소화) 체포·구속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에 그쳐야 하고,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9조(체포의 남용 금지) 체포는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20조(긴급체포할 때 유의사항) ① 긴급체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범죄의 중대성과 긴급성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하게 긴급체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담당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보고를 할 경우 긴급체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진출석 등 임의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체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21조(보호장구 등 사용의 한계) ① 수사관은 직무수행 중 피의자의 체포·구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갑, 호신용스프레이, 삼단봉, 방검복, 포승줄 등(이하 "보호장구"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호장구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최소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② 피의자의 자살·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호장구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필요한 최소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제22조(불구속수사 원칙) ①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소명되었는지 충분히 검토한다.
2. 범행의 성격, 예상되는 선고형량, 피의자의 성행, 전과,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3.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 또는 그 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제23조(구속영장신청서 등 작성 시의 유의사항) 수사관은 긴급체포서나 체포영장·구속영장신청서에 긴급체포·체포 또는 구속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체포·구속 시의 준수사항)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체포·구속되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2. 피의자에게 체포·구속하는 공무원의 소속과 성명,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체포·구속되는 피의자가 자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4. 체포·구속할 때 상대방의 신체와 명예 등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는 장소, 시간, 방법 등을 선택하여야 한다.
5.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6. 수사관은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경우, 검찰, 경찰 등과 협조하여 신속하게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5조(체포 등의 신속한 통지) ① 수사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호

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죄명, 체포·구속한 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수사관은 제1항에 따른 서면통지와는 별도로 체포·구속하여 인치(引致)한 즉시 전화, 문자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제1항 전단에 따른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다만, 공범의 도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체포·구속 당시 제1항 전단에서 정한 사람에게 이미 통지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26조(지명수배의 신속한 해제) 수사관은 지명 수배자를 검거 또는 인수하였거나 지명수배자가 자진 출두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절 압수·수색·검증 등

제27조(압수·수색영장 신청 시의 유의사항) ① 압수·수색·검증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에 압수·수색할 물건이나 장소, 검증할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압수·수색·검증의 필요성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③ 피의자가 아닌 자의 신체·물건·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제2항의 자료 외에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제28조(압수·수색시의 준수사항) 수사관은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압수·수색의 대상자에게 압수·수색하는 공무원의 소속과 성명을 알려주고,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압수·수색의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영장이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고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3. 원칙적으로 주간에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취지가 기재된 영장에 의하여 야간에 할 수 있다.
4. 압수·수색의 대상자, 변호인, 그 밖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5.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6. 압수·수색은 수사상 필요한 목적을 달성한 즉시 신속하게 종료해야 하고, 불필요하게 장시간 진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수사에 필요한 물건만을 압수하고, 다른 물건이 압수 대상물과 섞여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가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돌려준다.

8.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는 신속히 압수목록을 교부한다.
9. 압수한 서류 등은 신속히 검토하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수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이를 돌려주는 등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10. 회계장부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등은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으면 신속히 돌려주어야 하며, 장기간의 압수로 영업 등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제29조(정보저장매체 등의 압수·수색) 수사관이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압수·수색 대상자(「형사소송법」 제121조 및 제123조에 따른 참여인을 포함한다)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등을 압수하거나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할 수 있다.

제30조(신체의 수색·검증) ① 신체를 수색·검증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장소·방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야 하고, 특히 탈의 상태로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가려진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검증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금융계좌추적) 수사관은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의 대상자와 유효기간은 혐의 유무의 입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2.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각 호의 요청 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제32조(통신제한조치 등의 최소화) 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제33조(압수한 물건의 부당한 사용 금지 등) ① 압수한 물건은 적절하게 보관·관리되어야 하고, 정당한 직무 수행에만 활용되어야 한다.
② 압수·수색·검증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직무 외에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4절 피의자 신문

제34조(출석 요구)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수사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의 필요성,

우편·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 등 수사 상황과 진행 경과를 고려해야 한다.

2. 피의자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출석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다.
3. 출석 요구 방법, 출석 일시 등을 정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거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4.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가 출석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고, 주요 죄명 또는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5.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기업체나 그 대표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우편을 통한 진술 등을 활용하여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
6. 피의자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하지 않는다. 특히 진술을 거부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출석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제35조(대형조사실 사용) 수사관은 여성,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문 시에는 대형조사실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36조(진술거부권 고지) 수사관은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진술거부권 고지확인서에 피의자의 서명을 받아 기록에 첨부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제37조(영상녹화 및 메모의 권리 안내) ①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각 조사실 마다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사관은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신문사항에 대해 영상녹화가 가능함을 사전에 안내하고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할 경우 영상녹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사관은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신문 내용을 메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구두로 알리고, 메모용지와 필기도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8조(변호인의 접견·교통 보장) ① 수사관은 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체포·구속된 사람을 소환하였거나 조사하고 있는 중에도 제1항의 접견·교통은 보장되어야 한다.

제39조(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 ① 수사관은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 수사관은 피의자나 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2항의 참여를 불허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④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고 하는 변호인이 2명 이상일 때에는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대표변호인 1명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 수사관이 1명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수사관은 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사유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제40조(피의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수사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신뢰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해야 한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41조(피의자의 조사)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자백을 받기 위하여 강압적이거나 무리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
2. 피의자가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3. 조사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는 언행,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의 다른 사건이나 가족 등 주변 인물에 대한 형사처벌을 암시하는 내용의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4.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피의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5. 피의자의 사생활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6. 칼이나 송곳 등 신체를 해치는 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피의자 근처에 놓아두지 않는다.
7. 피의자가 기억을 환기하기 위해 수기로 메모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현출(現出)된 타인의 진술 등 공범의 도피, 증거인멸, 수사기밀 누설 등의 우려가 있거나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제외한다.
8.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같은 성별의 수사관이 1명 이상 조사 또는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의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2조(구금시설에 수용중인 피의자의 조사) 수사관은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피의자를 불필요하게 소환하여 변호인이나 가족 등의 접견·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피의자와 대질조사를 하여야 할 사람이 있거나 자료를 보면서 조사하여야 할 경우에는 조사받을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나 필요한 자료가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피의자를 소환한다.
3. 소환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43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수사관은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때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서의 열람만을 위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수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 시간 및 조서의 열람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조사시간을 초과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요청하고(변호인이 총조사시간을 초과한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체포기간 내에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④ 수사관은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조사를 마친 후 최소한 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4조(심야조사 제한) ① 수사관은 피의자의 수면권과 휴식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사, 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수사관은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1.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하고(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체포기간 내에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45조(수사관의 단독조사 금지) ① 수사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 시 본인 외 다른 수사관 1명을 조사실 내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조사를 받은 사건관계인에게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6조(휴식시간 부여 등) ① 수사관은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조사 도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주어 피의자가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적어도 2시간 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가 조사 도중에 휴식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때에는 그 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③ 수사관은 조사 중인 피의자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다른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7조(자백의 증명력 판단 시 유의사항) ① 수사관은 피의자의 자백이 경험법칙에 위배되는 등 합리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백하게 된 경위를 살펴 그 신빙성 유무를 검토해야 한다.

② 공범의 진술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그 증명력 판단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제48조(신문조서 외 수사기록 보관)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우 외에, 면담, 접견 등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서면에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수사기관에 머물다 떠난 시각, 그 사이 수사기관에서 있었던 상황 등을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한다.

제49조(모니터링 실시) ①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조사가 종료된 피의자에 대해 조사과정에서의 수사관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전화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사관은 조사를 마친 피의자에게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관련 등을 확인하기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 제5절 범죄피해자 및 참고인

제50조(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 ① 수사관은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사실관계나 양형(量刑)에 대한 의견 등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피해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에 대하여 예단 없이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1조(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① 수사관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사람이 피해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정보 제공으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제52조(2차 피해 방지) 수사관은 수사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충분히 고려한다.
2. 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고통이 더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피해자가 피의자나 그 가족 등과의 접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대기실에서 기다리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4. 피해자의 고통이 더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를 지양한다.

제53조(피해자·참고인의 조사) ① 수사관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조사의 필요성, 우편·전자우편·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 해당 사건 수사와의 관련성 등 수사 상황과 진행 경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②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출석을 요구한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기록에 첨부한다.

③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을 출석 요구하여 조사한 후 동일인에 대해 재차 출석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려 사항 및 재차 출석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④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또는 출석하지 않으면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강압적인 방법으로 출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⑤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한 진술서, 녹음·녹화 조사, 공조수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⑥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출석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의 시작이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⑦ 녹음·녹화 조사제와 시차제 출석 요구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필요한 출석 요구나 장시간 대기를 방지하며,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사건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⑧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을 조사할 때에는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멸감을 주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고, 사생활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54조(피해자 등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수사관은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여야 한다.

1.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2.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피해자나 그 밖의 참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제55조(피해자 등의 신변 보호) ① 수사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신고자나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피해자 등이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6조(피해자의 권리 고지와 유익한 정보 제공) ① 수사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법정에서의 진술권, 수사결과에 대한 정보 요청권 등 피해자의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압수물 환부·가환부, 배상명령, 형사재판상 화해, 범죄피해자구조, 교통사고피해자보상 등 당해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한다.

③ 민생사법경찰단은 피해자지원센터나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 한다)의 위치와 연락처 등 피해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내 자료를 비치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제6절 소년·장애인·외국인

제57조(소년에 대한 조사) ① 수사관은 소년(「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피의자에 대하여 심신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을 조사하고 피의자의 비행 원인을 진단한 후 그에 따라 적절히 처분하여 피의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나이, 지적 능력, 심신상태 등을 이해하고 조사에 임하여야 하며, 친밀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하여야 한다.

③ 수사관이 소년인 피의자, 범죄피해자,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 요구 전에 반드시 소년의 가족 등 신뢰관계 있는 사람에게 출석요구의 목적 등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소년에 대한 특칙) ① 수사관은 소년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경우에는 제4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서의 열람만을 위하여 소년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과 법정대리인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수사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 시간 및 조서의 열람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조사시간을 초과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소년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과 법정대리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요청하고(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도 이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체포기간 내에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④ 수사관은 소년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조사를 마친 후 최소한 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9조(구속의 억제 등) ① 소년에 대한 구속수사는 당사자의 심신이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특히 신중해야 한다.
② 소년인 피의자가 체포·구속된 경우에는 다른 사건보다 우선하여 그 사건을 조사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0조(장애인) ①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화·문자 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장애인인 피의자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준다.

제61조(외국인에 대한 통역)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주어야 한다.

제62조(외국 영사관원과의 접견·통신) ①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재 본국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통신할 수 있고, 체포·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체포·구속된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구속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절 사건의 송치

제63조(사건의 송치) 수사관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실체적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였는지, 사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 또는 사건의 발단이나 경위 등을 살펴 억울한 사정이 없는지 등을 검토한다.
2. 수사 결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 제4장 공보에 따른 인권보호

제64조(수사사건의 공개금지 원칙) 수사사건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65조(공소제기 전 공개금지) 공소제기 전의 수사사건에 대하여는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을 비롯하여 그 내용 일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66조(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 ① 제6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수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사건관계인 또는 수사관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오보가 실제로 존재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신속하게 그 진상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경우
2.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 또는 동종 범죄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경우
3.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그 대응조치에 관하여 국민들이 즉시 알 필요가 있는 경우

4.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정보 제공 등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사사건의 공보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한정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불필요하게 사건관계인의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67조(예외적 공개 시 유의사항) ① 수사사건을 공개할 때에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를 공보자료에 명시해야 한다.

② 수사사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체포·구속영장 및 그 신청서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으로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68조(실명 공개 금지) ① 사건관계인을 공개하는 때에는 영문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하여 "A○○", "B○○"와 같이 성명을 표기하되,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사건관계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나이 및 직업을 공개할 수 있고,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

1. A○○(35세, 회사원)
2. B○○(40세, C제약회사 경리부장)

③ 수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도 익명을 사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 기업 또는 기관의 주목적을 병기하는 방법으로 "D건설 주식회사"와 같이 표기하되, 기업 또는 기관의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69조(예외적 실명 공개) 제68조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등 오해의 방지 또는 수사 및 보도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를 공개할 수 있다.

제70조(공개금지정보) 수사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1. 사건관계인의 인격 및 사생활
2. 당해사건과 관계없는 사건관계인의 범죄전력
3. 사건관계인의 주장 및 진술·증언 내용, 진술·증언 거부 사실 및 신빙성에 관련된 사항
4. 검증·감정, 심리생리검사 등의 시행 및 거부 사실과 그 결과
5. 증거의 내용 및 증거가치 등 증거관계
6. 범행 충동 및 모방 우려가 있는 특수한 범행수단·방법
7.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

부 칙

이 준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의 충실한 구현을 위해 수사 관련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수사사건의 공개 기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인권을 중시하는 특별사법경찰상을 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사관은 사건관계인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 등에 영향을 받거나, 수사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수사를 해서는 안 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수사관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 없는 새로운 범죄혐의를 찾기 위한 목적만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지연해서는 안 됨(안 제11조).

다. 수사관은 압수·수색·검증 영장 신청서에 압수·수색할 물건·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 하도록 하고, 영장 집행시 소속과 성명을 알려줄 것과 압수·수색 대상자, 변호인 등의 참여를 보장하며, 불필요하게 장시간 진행되지 않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라. 원칙적으로 사건관계인 조사시 휴식시간, 열람시간 등을 포함한 총조사시간은 12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 초과를 금지하며, 특히 소년의 경우 총조사시간은 8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6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43조 및 제58조).

마.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피의자 조사를 제한함(안 제44조).

바. 원칙적으로 공소제기 전 수사사건에 대한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되, 범죄피해 확산 방지 및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5조 및 제66조).

사. 그 밖에 조문의 체계, 자구,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 서울특별시예규 제727호

##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정협 인
2020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메시지민원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현장민원 처리기준(제5조제1항제1호와 관련)

| 연번 | 분야 | 민원목록 | 세부항목 | 처리시간 | | |
|---|---|---|---|---|---|---|
| | | | | 즉시 | 24시간 이내 | 확인후 안내 |
| 1 | 교통 | 불법주정차 | 불법주정차 단속, | ● | | |
| 2 | | 거주자우선주차위반 |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차량 견인 | ● | | |
| 3 | | 장애인주차구역위반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 | | ● | |
| 4 | | 방치차량 | 방치차량 견인, 이륜차 단속 | | | ● |
| 5 | | 교통불편신고 | 교통표지판, 보행자 안내표지판, 교통시설물, 교통표지판 신설, 버스 정류장 신설 요청 | | | ● |
| 6 | 도로 | 도로시설물 | 교량, 터널, 육교, 축대, 옹벽, 지하도 등 | | | ● |
| 7 | | 도로시설물 안전 | 도로침하 · 함몰 · 씽크홀 · 동공 등 도로파손, 도로시설 파손에 따른 사고 위험 | | ● | |
| 8 | | 지하시설물 | 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난방 관로 등 지하시설물의 안전사고 위험 | | ● | |
| 9 | | 보안등고장 | 고장수리 (조도개선, 부점등 등) | | ● | |
| 10 | | 가로등고장 | 고장수리 (조도개선, 부점등 등) | | ● | |
| 11 | | 제설요청 | (계절적 업무) | | ● | |
| 12 | | 도로불편사항(구도로) | 도로파손, 보도블럭 정비 등 | | | ● |
| 13 | | 자전거전용도로 불편사항 | 자전거 도로이용 불편신고(도로파손 등 신고, 건의·제안 | | | ● |
| 14 | | 자전거보관소 불편사항 | 자전거 무인대여 시스템, 무단방치 자전거 관리, 보관대 유지 보수 | | | ● |
| 15 | 청소 | 쓰레기무단투기 | 불법 무단투기신고 | | | ● |
| 16 | | 규격봉투 미수거 | 음식물, 생활쓰레기 등 미수거(비정상 배출시□확인 후 안내) | | | ● |
| 17 | | 대형폐기물 미수거 | 신고 폐기물 미수거(비정상 배출시 확인 후 안내) | | | ● |
| 18 | | 가로청소요청 | 가로변 청소요청 | | | ● |
| 19 | | 재활용 수집 운반 | 재활용 미수거 등 | | | ● |
| 20 | | 정화조 관리 | 정화조 설치 및 준공 | | | ● |
| 21 | | 생활쓰레기 처리 | 생활쓰레기 처리(1회용품, 폐건전지, 형광등 등) | | | ● |
| 22 | 주택건축 | 공사장 안전 · 불편신고 | 건설기계 오작동, 건설자재 낙하 등 각종 공사장 위험, 보행불편 등 | | ● | |
| 23 | | 무허가 신고 | 무허가 건축물 신고 | | ● | |
| 24 | | 공동주택물 이용관련 불편(구) | 공동주택물 이용시 불편사항 등 | | | ● |
| 25 | | 건축물, 공작물 위험 | 건축물이나 옹벽의 균열, 기울어짐 등 붕괴나 전도 우려 | | ● | |
| 26 | | 주택가 감전위험 | 누전, 합선 등에 따른 감전사고 위험 | | ● | |
| 27 | 치수방재 | 하수시설 | 하수도파손, 빗물받이, 준설 등 | | ● | |
| 28 | | 하수도 맨홀 | 맨홀뚜껑불량, 손실 등 | | ● | |
| 29 | | 수방시설물 | 수방관련 시설물 | | | ● |
| 30 | | 풍수해(침수)신고 | 풍수해, 침수신고, 하천범람 신고 등 | | ● | |
| 31 | | 하천시설물(구) | 하천시설물(체육시설 등) 신고 | | | ● |
| 32 | 가로정비 | 불법광고물 | 불법 광고물 처리요청 | | ● | |
| 33 | | 노상적치물정비 | 노상적치물 무단점용 | | | ● |
| 34 | | 노점상단속 | 노점상 무단점용 | | | ● |
| 35 | 보건 | 방역요청 | 방역처리요청 | | ● | |
| 36 | | 유기동물신고 | 유기견, 고양이 등 신고 | ● | | |
| 37 | | 부정불량식품 신고 | 식품위생관련(부정불량식품 등) 신고 | | | ● |
| 38 | | 위생불량 신고 | 위생불량업소 신고 | | | ● |
| 39 | | 원산지 위반 신고 |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신고 | | | ● |
| 40 | | 집단 식중독 신고 | 집단 식중독 신고 | | | ● |

| | | | | | | |
|---|---|---|---|---|---|---|
| 41 | | 집단 급식소 관리 | 집단 급식소 관리 | | | ● |
| 42 | 공원녹지 | 가로수 녹지대 파손 | 가로수 녹지대 시설 파손, 가로수 전지작업 요청 등 | | ● | |
| 43 | | 공원이용 불편사항(구) | 공원시설물파손, 보수요청, 공원청소상태불량, 등산로 불편사항 등 이용시민 불편사항 | | | ● |
| 44 | | 공원(약수터 등) 수질관리 | 공원 내 지하수 실태조사, 수질관리 등 | | | ● |
| 45 | | 산사태 | 산사태 발생 징후 | | ● | |
| 46 | 환경 | 소음 | 공사장, 에어컨, 노래방소음 등 | | ● | |
| 47 | | 악취 | 사업장 (폐유 등) 악취신고 | | ● | |
| 48 | | 진동 | 공사장 진동 등 | | ● | |
| 49 | | 매연 | 사업장 (대기배출신고사업소 등) 매연신고 | | ● | |
| 50 |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 공사장 먼지관련 민원 등 | | ● | |
| 51 | | 불법소각 | 불법소각 신고 | | | ● |
| 52 | | 환경오염 | 유독물질 유출, 오폐수 방류,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리 | | | ● |
| 53 | 경제산업 | 불법통신 판매업 유해신고 | 불법통신 판매업 유해신고 | | | ● |
| 54 | | 부동산중개 불편사항 | 부동산중개업 위법행위 신고 | | | ● |
| 55 | | 대부업 관련 불편사항 | 대부업 피해 신고 | | | ● |
| 56 | 기타 | 다중이용시설물 이용불편(구) | 구청사,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센터, 구민회관, 구립체육관(구립체육시설) / 구립도서관,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물 불편신고 | | | ● |
| 57 | | 여성불편(구) | 화장실, 수유시설, 기저귀 교환장소, 휴식공간 등 | | | ● |
| 58 | | 관광·복지(구) | 문화재, 공연장, 전시장, 각종 복지시설 관련 불편사항 | | | ● |
| 59 | | 방범시설 | CCTV(방범용,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용 등) 설치·보수 등 불편사항 | | | ● |
| 60 | | 행사(구) | 행사(단기·장기)장 이용 불편 | | | ● |
| 61 | | 행사장 안전 | 각종 행사장 안전 신고 | | ● | |
| 62 | | 공중화장실불편신고 | 변기파손, 고장신고 등 | | | ● |
| 63 | 건의 | 건의·제안사항(구) | 그 밖의 건의·제안사항 등 | | | ● |

※ 비고
1) 교통분야: 불법주정차 단속의 경우 동일인이 기관별 일일 신고자 평균 신고량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등 즉시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한을 즉시가 아닌 확인 후 안내로 변경할 수 있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현장민원은 즉시(3시간)처리 원칙이나, 불법주정차와 관련된 현장민원 중 즉시(3시간)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의 경우 그 처리시간을 '확인 후 안내'로 예외사유 규정 필요

2. 주요내용

동일지역·특정업소를 대상으로 한 보복성 신고로 즉시(3시간)처리 할 수 없는 불법주정차로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확인 후 안내' 할 수 있도록 현장민원 처리기준에 예외사유 규정(안 별표 1 비고란 신설).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531호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울시립대학교의 여성교원의 목표 비율과 양성평등조치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1년부터 2030년 이후까지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의 연도별 여성 목표 비율을 정함(안 제9조 및 별표)

※ 연도별 여성목표 비율

| 해당연도 | ’21년도 | ’22년도 | ’23년도 | ’24년도 | ’25년도 | ’26년도 | ’27년도 | ’28년도 | ’29년도 | ’30년도 이후 |
|---|---|---|---|---|---|---|---|---|---|---|
| 여성비율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나. 시립대학교 교원의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하여 성평등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양성평등조치계획 및 그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9조 및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02-2133-6748, FAX:02-2133-0822, E-mail:iriswh@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50호

##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255호(2005.03.03.)로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15호(2006.06.29.)로 지구변경(확장) 지정고시 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5호(2008.12.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0호(2010.03.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6호(2014.01.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8호(2014.07.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84호(2016.03.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3호(2016.1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75호(2017.07.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8호(2019.01.10.)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86호(2020.05.0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강북구 미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5항 및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합니다.
2.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명 칭 | | 유 형 | 위 치 | 면 적(㎡) | | | 비 고 |
|---|---|---|---|---|---|---|---|
| | |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미아재정비촉진지구 | 계 | 주거지형 | 강북구 미아동 438번지 일대 | 937,890.7 | - | 937,890.7 | |
| | 기존지구 | | | 578,607.7 | - | 578,607.7 | |
| | 확장지구 | | | 359,283.0 | - | 359,283.0 | |

2.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관리구역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구 분 | 면 적(㎡) | | | 비 고 |
|---|---|---|---|---|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소 계 | 359,283 | - | 359,283 | - |
|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 179,566 | - | 179,566 | - |
|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 57,558 | - | 57,558 | - |
|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 28,517 | - | 28,517 | - |
| 미아5재정비촉진구역 | 18,475 | - | 18,475 | - |
| 존치관리구역 | 75,167 | - | 75,167 | - |

3.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미아2구역)

| 구 분 | 명 칭 | 위 치 | 면 적(㎡) | | | 비 고 |
|---|---|---|---|---|---|---|
| |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기정 |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 |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403번지 일대 | 179,566 | - | 179,566 | - |

나. 재정비촉진계획(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미아2구역)

| 구 분 | 명 칭 | 면 적(㎡) | | | 비율(%) | 비 고 |
|---|---|---|---|---|---|---|
|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 합 계 | | 179,566 | - | 179,566 | 100.0 | - |
| 정비기반시설 등 | 소 계 | 56,824 | 감) 3,657 | 53,167 | 29.6 | - |
| | 도 로 | 14,806 | 증) 4,420 | 19,226 | 10.7 | 준공용도로 → (기부채납) 도시계획도로 |
| | 공 원 | 10,137 | 증) 493 | 10,630 | 5.9 | |
| | 공공공지 | 2,144 | 감) 2,144 | - | - | 폐지 |
| | 초등학교 | 8,984 | 증) 3,426 | 12,410 | 6.9 | 송천초등학교 |
| | 중 학 교 | 12,027 | 감) 12,027 | - | - | 신설계획 폐지 |
| | 유 치 원 | 1,269 | 증) 4,071 | 5,340 | 3.0 | 단설유치원 |
| | 공공청사① | 2,031 | 증) 469 | 2,500 | 1.4 | 송천동 주민센터 |
| | 공공청사② | 3,926 | 감) 2,365 | 1,561 | 0.9 | 문화시설 → 공공청사②(공공급식센터) |
| | 노인복지시설 및 공공청사③ | 1,500 | - | 1,500 | 0.8 | 도서관 → 노인복지시설 및 공공청사③ |
| 택 지 (획 지) | 소 계 | 122,742 | 증) 3,657 | 126,399 | 70.4 | |
| | 2-1 | 118,580 | 감) 63,592 | 54,988 | 30.6 | 공동주택 |
| | 2-2 | 3,828 | 증) 65,349 | 69,177 | 38.5 | 공동주택 |
| | 2-3 | - | 증) 1,900 | 1,900 | 1.1 | 근린생활시설 |
| | 2-4 | 334 | - | 334 | 0.2 | 종교시설 |

주) 기정의 명칭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0호의 사항에 대해 수정함

2) 인구·주택수용계획(변경, 미아2구역)

| 구 분 | | 주택수(호) | | | 인구수(인) | | | 비고 |
|---|---|---|---|---|---|---|---|---|
|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미아2 재정비 촉진구역 | 소계 | 2,870 | 증) 649 | 3,519 | 7,577 | 증) 1,714 | 9,291 | (기정) 임대 504세대 (변경) 임대 604세대 |
| | 60㎡이하 | 1,528 | 증) 884 | 2,412 | | | | |
| | 60㎡초과~85㎡이하 | 1,082 | 감) 140 | 942 | | | | |
| | 85㎡초과 | 260 | 감) 95 | 165 | | | | |

3)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구 분 | | 면 적(㎡) | | | 구성비(%) | 비고 |
|---|---|---|---|---|---|---|
|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 합 계 | | 179,566 | - | 179,566 | 100.0 | - |
| 주거지역 | 1종일반주거지역 | 10,988 | 증) 4,106 | 15,094 | 8.4 | - |
| | 2종일반주거지역(7층) | 28,433 | 감) 9,802 | 18,631 | 10.4 | - |
| | 2종일반주거지역 | 140,145 | 증) 5,696 | 145,841 | 81.2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 면적(㎡) | 용적률 (%) | 변경사유 |
|---|---|---|---|---|---|---|
| | | 기정 | 변경 | | | |
| ① | 강북구 미아동 436-6 일대 | 2종일반주거(7) | 2종일반주거 | 3,270 | - | • 학교부지 감소분중 일부를 택지로 변경함에 따라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 완료 후 용도지역의 일체적 관리를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 ② | 강북구 미아동 447-40 일대 | 1종일반주거 | 2종일반주거 | 2,426 | - | • 청소년교육문화공원 면적 감소분을 택지로 변경함에 따라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 완료 후 용도지역의 일체적 관리를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 ③ | 강북구 미아동 637-238 일대 | 2종일반주거(7) | 1종일반주거 | 6,532 | - | • 어린이공원 면적증가 및 위치변경에 따라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4)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변경)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 (m) | 위치 |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기점 | 종점 | | | | |
| 기정 | 중로 | 1 | (1-9-1) | 20~23 | 보조간선 | 2,050 (493) | 중로1-48 | 중로1-47 | 일반도로 | | 건설부고시 제533호 (68.09.02.) | |
| 기정 | 중로 | 1 | (47) | 20~30 (26) | 보조간선 | 5,055 (203) | 미아동 | 수유동 | 일반도로 | | 건설부고시 제738호 (63.12.24.) | |
| 기정 | 중로 | 2 | (483) | 18 | 집산도로 | 143 | 미아동 637-359 중로1-458 | 미아동 437-11 | 일반도로 | | 서고 제90호 (10.03.18.) | |
| 변경 | 중로 | 2 | (483) | 18 | 집산도로 | 384 | 미아동 637-359 중로1-458 | 미아동 860-140 | 일반도로 | | | 연장 241m 증가 |
| 기정 | 중로 | 3 | (482) | 12~16 | 국지도로 | 223 | 미아동 480-7 중로1-503 | 미아동 862-1 중로1-458 | 일반도로 | | 서고 제354호 (90.10.24.)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 '20.07.01.)에 따른 변경 연장50m 증가 |
| 변경 | 중로 | 3 | (482) | 12~16 | 국지도로 | 273 (50) | 미아동 480-7 중로1-503 | 미아동 862-1 중로1-458 | 일반도로 | | | |
| 신설 | 중로 | 1 | (458) | 22 | 보조간선 | 596 | 미아동 637-359 중로1-47 | 미아동 862-1 소로1-814 | 일반도로 | | | |
| 신설 | 소로 | 2 | (114) | 8~10 | 국지도로 | 99 | 미아동 673-1 중로3-481 | 미아동 681 | 일반도로 | | | |
| 신설 | 소로 | 1 | (1) | 10 | 국지도로 | 190 | 미아동 883 중로1-47 | 미아동 673-1 소로2-114 | 일반도로 | | | |
| 신설 | 소로 | 2 | (-) | 8 | 국지도로 | 230 | 미아동 455-25 | 미아동 415-1 | 일반도로 | | | |

주) 폭원 및 연장내( )는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내 해당함

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20.07.01.)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중로 2-(483) | 중로 2-(483) | • 연장증가 (증 241m)<br>- L : 143m→384m, B : 18m | • 택지내 사유지인 준공용도로(폭 18m, 연장 241m)의 도로차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기부채납 |
| 중로 3-(482) | 중로 3-(482) | • 연장증가 (증 50m)<br>- L : 223m→273m,<br>B : 12~16m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20.07.01.)에 따른 변경 |
| - | 중로 1-(458) | • 신설<br>- L : 596m, B : 22m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20.07.01.)에 따른 신설 |
| - | 소로 2-(114) | • 신설<br>- L : 99m, B : 8~10m | |
| - | 소로 1-(1) | • 신설<br>- L : 190m, B : 10m | |
| - | 소로 2-(-) | • 신설<br>- L : 230m, B : 8m | |

나) 공원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 변경 | ② | 공원 | 문화 공원 | 미아동 439-181 일대 | 7,870 | 감) 2,426 | 5,444 | 서고 제90호 (10.03.18.) | |
| 변경 | ③ | 공원 | 어린이 공원 | 미아동 637-238 일대 | 2,267 | 증) 2,919 | 5,186 | 서고 제90호 (10.03.18.)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② | 문화공원 | • 면적 변경 : 감) 2,426㎡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17.02.04.)되어 인접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이 초등학교 일조기준에 저촉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부 공원위치 변경 |
| ③ | 어린이공원 | • 면적 변경 : 증) 2,919㎡<br>• 위치 이동 :<br>455-1 일대 → 637-238 일대 | |

다)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 폐지 | ② | 공공공지 | 미아동 679 일대 | 109 | 감) 109 | - | 서고 제90호 (10.03.18.) | |
| 폐지 | ③ | 공공공지 | 미아동 438 일대 | 433 | 감) 433 | - | 서고 제90호 (10.03.18.) | |
| 폐지 | ④ | 공공공지 | 미아동 462-27 일대 | 1,602 | 감) 1,602 | - | 서고 제90호 (10.03.18.) |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② | 공공공지 | • 택지2-1(공동주택) 편입<br>- 면적 : 감) 109㎡ | • 준공용도로(대지) 4,420㎡를 도시계획도로로 기부채납하여 감소된 대지면적 4,420㎡에 대한 일부(2,144㎡) 보전 |
| ③ | 공공공지 | • 택지2-1(공동주택) 편입<br>- 면적 : 감) 433㎡ | |
| ④ | 공공공지 | • 택지2-3(근린생활시설) 편입<br>- 면적 : 감) 1,602㎡ | |

라) 학교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 변경 | ㊱ | 학교 | 초등학교 | 미아동 438 일대 | 8,984 | 증) 3,426 | 12,410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고시 제5호(87.02.21.) | 송천 초교 |
| 변경 | ① | 학교 | 중학교 | 미아동 438 일대 | 12,027 | 감) 12,027 | - | 서고 제90호 (10.03.18.) | |
| 변경 | ② | 학교 | 유치원 | 미아동 438 일대 | 1,269 | 증) 4,071 | 5,340 | 서고 제90호 (10.03.18.) | |

○건축범위 결정 조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층) |
|---|---|---|---|---|
| ㊱ | 초등학교 | 60% 이하 | 200% 이하 | 7층 이하 |
| ② | 유치원 | 60% 이하 | 200% 이하 | 7층 이하 |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㊱ | 학교 | 초등학교 | • 면적변경 : 증) 3,426㎡ |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업무협의 결과 반영<br>-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중학교 신설수요 없음<br>- 부족한 국공립 단설유치원 부지 확대 요청 |
| ① | 학교 | 중학교 | • 신설 계획 폐지 | |
| ② | 학교 | 유치원 | • 면적변경 : 증) 4,071㎡ | |

주) 학교계획면적 (17,750㎡ = 12,410㎡ + 5,340㎡) 중 기존 송천초등학교 면적(15,648㎡)은 대체처리하고 나머지 면적(2,102㎡)은 서울시교육청(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정산처리함

주) 초등학교의 건립비용은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에서 부담 / 유치원의 건립비용은 서울시교육청(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 부담

마)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 변경 | ① | 공공청사 | - | 미아동 469-22 일대 | 2,031 | 증) 469 | 2,500 | 서고 제90호 (10.03.18.) | 송천동 주민센터 (용적률 200%) 문화시설 복합설치 |
| 신설 | ② | 공공청사 | - | 미아동 469-47 일대 | - | 증) 1,561 | 1,561 | - | 공공급식센터 (용적률 200%) 서울시 귀속 |

주) 공공청사②(토지 및 시설)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운영 및 관리함

주) 향후 토지가격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연면적 및 토지 면적은 조정될 수 있으며, 시설의 세부용도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함

○ 건축범위 결정 조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층) |
|---|---|---|---|---|
| ① | 공공청사 | 60% 이하 | 200% 이하 | 관련법규에 따름 |
| ② | 공공청사 | 60% 이하 | 200% 이하 | 관련법규에 따름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① | 공공청사 | - | • 면적 변경 : 증) 469㎡<br>• 위치 이동 :<br>469-6 일대 → 469-22 일대 | • 서울시(주거재생과)에서 관련 실 · 국 · 본부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 (서울시 친환경급식과에서 공공급식센터 요청)<br>• 문화시설 폐지 후 공공청사①(동주민센터) 및 공공청사②(공공급식센터)를 건립하여 관련기관에 기부채납 |
| ② | 공공청사 | - | • 공공청사② 신설<br>- 면적 : 증) 1,561㎡ | |

바) 도서관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 기정 | - | 도서관 | 미아동 446-22 일대 | 1,500 | 감) 1,500 | - | 서고 제90호 (10.03.18.) | 청소년 정보도서관 (용적률 200%) |
| 변경 | ③ | 노인복지시설 및 공공청사③ | 미아동 469-6 일대 | - | 증) 1,500 | 1,500 | - | 노인복지시설 및 공공청사③ (용적률 200%) |

주) 공공청사③ : 문화복합시설

○ 건축범위 결정 조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층) |
|---|---|---|---|---|
| ③ | 노인복지시설 및 공공청사③ | 60% 이하 | 200% 이하 | 관련법규에 따름 |

○ 도서관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③ | 도서관 | • 노인복지시설 및 공공청사③으로 변경 | • 2019년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반영<br>- 2030 서울생활권계획 검토결과 삼각산지역생활권은 노인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서관을 노인복지시설로 변경<br>• 2020년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결과 반영<br>- 노인복지시설에 문화복합시설 설치를 고려하여 노인복지시설 및 공공청사③으로 중복 결정 |

사)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 폐지 | - | 문화시설 | 미아동 637-238 일대 | 3,926 | 감) 3,926 | - | 서고 제90호 (10.03.18.) | 송천동 주민센터에 문화시설 복합설치 |

○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 | 문화시설 | • 택지2-1(공동주택) 편입 - 면적 : 감) 3,926㎡ | • 서울시 주거재생과 의견(2018.05.08.) 반영<br>• 서울시(주거재생과)에서 관련 실·국·본부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 반영 (서울시 친환경급식과에서 공공급식센터 요청) |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 시설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 비 고 |
|---|---|---|---|---|---|---|
| |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합 계 | | 미아2 재정비 촉진구역내 | 7,464.10 | 증) 4,705.90 | 12,170.00 | - |
| 공동 이용 시설 | 관리사무소 | | 226.50 | 증) 403.50 | 630.00 | - |
| | 주민공동시설 | | 743.13 | 증) 756.87 | 1,500.00 | - |
| | 문 고 | | 60.00 | 증) 390.00 | 450.00 | - |
| | 보육시설 | | 200.00 | 증) 550.00 | 750.00 | - |
| | 어린이놀이터 | | 3,377.00 | 증) 2,473.00 | 5,850.00 | - |
| | 경로당 | | 337.70 | 증) 212.30 | 550.00 | - |
| | 주민운동시설 | | 2,493.00 | 감) 143.00 | 2,350.00 | - |
| | 경비실 | | 26.77 | 증) 63.23 | 90.00 | - |

주) 사업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며,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6)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변경)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변경 없음)

|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 | | | 비 고 |
|---|---|---|---|---|---|---|---|---|---|
| | 명 칭 | 면 적(㎡) |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신축 | 철거 이주 | |
| 기정 | 미아2 재정비 촉진구역 | 179,566 |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403번지 일대 | 1,074 | - | - | 1,074 | - | - |

나) 건축시설계획(변경)

|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 위 치 | 연면적 (㎡)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율 (%) | 평균층수/ 최고층수 (높이) |
|---|---|---|---|---|---|---|---|---|---|---|
| | 명 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 | | | |
| 기정 | 미아2 재정비 촉진 구역 | 179,566 | 2-1 | 118,580 | 미아동 403번지 일대 |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60 이하 | 234.7 이하 | 15.8층 /35층이하 (105m이하) |
| | | | 2-2 | 3,828 | 미아동 469번지 일대 | - | | | | |
| | | | 2-4 | 334 | 미아동 679번지 일대 | - | 종교시설 | 관계 법규에 의함 | | |
| 변경 | 미아2 재정비 촉진 구역 | 179,566 | 2-1 | 54,988 | 미아동 403번지 일대 |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5 이하 | 260.9 이하 | 19.9층 /35층이하 (105m이하) |
| | | | 2-2 | 69,177 | 미아동 416번지 일대 | - | | | | |

| | | | | | | | | |
|---|---|---|---|---|---|---|---|---|
| | | | 2-3 | 1,900 | 미아동 462-27번지 일대 | - | 근린생활시설 | 관계 법규에 의함 |
| | | | 2-4 | 334 | 미아동 679번지 일대 | - | 종교시설 | 관계 법규에 의함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기정) 2,870세대(임대504세대 포함) → (변경) 3,519세대(임대604세대 포함)

| 구 분 | | 기 정 | | | 변 경 | | |
|---|---|---|---|---|---|---|---|
| | | 합계 | 분양 | 임대 | 합계 | 분양 | 임대 |
| 총 세대수 | | 2,870 | 2,366 | 504 | 3,519 | 2,915 | 604 |
| 60㎡ 이하 | 40㎡이하 | 204 | - | 204 | 238 | - | 238 |
| | 40㎡초과~50㎡이하 | 204 | - | 204 | 178 | - | 178 |
| | 50㎡초과~60㎡이하 | 1,120 | 1,024 | 96 | 1,996 | 1,808 | 188 |
| | 소 계 | 1,528 | 1,024 | 504 | 2,412 | 1,808 | 604 |
| 60㎡초과~85㎡이하 | | 1,082 | 1,082 | - | 942 | 942 | - |
| 85㎡초과 | | 260 | 260 | - | 165 | 165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및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 미아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주) 연면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444호, 2009.02.06) 개정에 따라 삭제함

다) 용적률 계획(순부담 등)

| 구 분 | 산 정 내 용 | | | | |
|---|---|---|---|---|---|
| 토지이용계획 | 계 (구역면적) | 택지 (공동주택 등) | 신설(계획) 정비기반시설 | 무상양도 국공유지 면적(대체처리) | |
| | | |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택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
| | 179,566㎡ | 124,165㎡ | 35,417㎡ | 6,924㎡ | 8,494㎡ |
| 도 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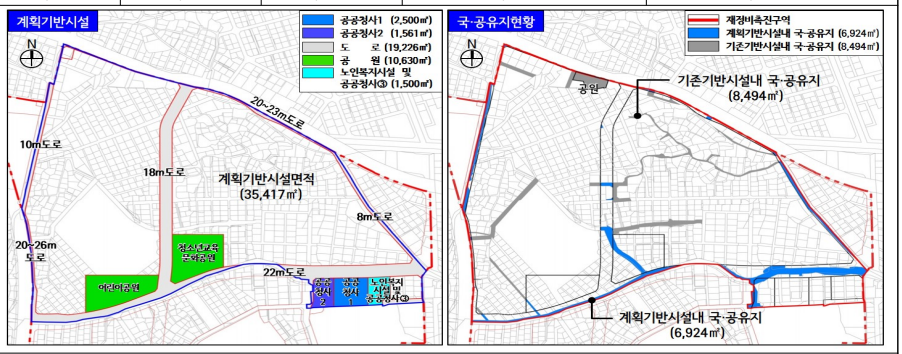  | | | |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면적) | • 순부담 면적 = 순부담 산정용 신설(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주) - 신설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 - 택지내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국공유지 면적<br>• 25,873㎡ = 41,291㎡주) - 6,924㎡ - 8,494㎡<br>주) 순부담 산정용 신설(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41,291㎡) = 신설(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35,417㎡) + 공공시설 신축비용 토지환산면적 (5,874㎡)<br>• 순부담률 14.41% : 기준 10% 이상 | | | | |
| 공공시설 신축비용 토지환산면적 | ○ 공공시설 신축비용 토지환산면적(5,874㎡)= 공공청사1 신축비용 토지환산면적 (3,507㎡) + 공공청사2 신축비용 토지환산면적 (2,367㎡) | | | | |
| | ○ 공공청사1 (송천동 주민센터) 신축비용 토지환산면적 = 공사비 15,655,500천원 (연면적 6,300㎡) ÷ 부지가액 4,464천원/㎡ = 토지환산면적 3,507㎡<br>※ 공사비는 2017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서울시) 적용 : 복합청사 기준 (2,485천원)<br>※ 부지가액은 2017년 1월 평균공시지가 2배 적용 : 2,232천원 × 2배 = 4,464천원 | | | | |

| | | |
|---|---|---|
| | ○ 공공청사2 (공공급식센터) 신축비용 토지환산면적 =<br>공사비 10,569,790천원 (연면적 3,922㎡) ÷ 부지가액 4,464천원/㎡ = 토지환산면적 2,367㎡<br>※ 공사비는 2017년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등 가이드라인(서울시) 적용 : 복지지원센터 기준 (2,695천원)<br>※ 부지가액은 2017년 1월 평균공시지가 2배 적용 : 2,232천원 × 2배 = 4,464천원 | |
| 기준용적률 | • 기준용적률 = 210% (당초 190%) | |
| 상한용적률 | • 공공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완화<br>• 상한용적률은 도시계획과의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2019.1)」 적용 | |
| | • 상한용적률<br>= 기준용적률×(1+1.3×가중치×α(토지)+0.7×α(건축물))<br>► 대상지<br>- 기준용적률 210%<br>- α(토지) = 19,999㎡ / 124,165㎡ = 0.161067<br>- α(건축물) = 5,874㎡ / 124,165㎡ = 0.047308<br>► 상한용적률 (완화가능용적률)<br>= 210% ×(1+1.3×1×0.161067+0.7×0.047308)<br>= 260.92% (적용 260.9%이하)<br>= 260.9% ≥ 건축계획(안) 260.89% | α(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면적(토지)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후 대지면적<br><br>α(건축물)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면적(건축물)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후 대지면적 |

※ 정확한 토지환산면적은 사업시행(변경)인가 시 부지가액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거쳐 확정함

7) 무상귀속(기부채납) 계획

- 기부채납시설은 사용승인시 관리청에 귀속시키며, 사업시행계획인가시 세부용도, 면적 등을 확정

| 구 분 | 시설명 | 시설규모 | 관리청 |
|---|---|---|---|
| 도로 | 중로 1 - (458) | • 중로 1-(458) 호선 개설<br>- 폭 22m, 연장 596m | 서울시 |
| | 중로 1 - (1-9-1) | • 중로 1-(1-9-1) 호선 일부확장<br>- 폭 20~23m, 연장 630m | 서울시 |
| | 중로 1 - (47) | • 중로 1-(47) 호선 일부확장<br>- 폭 20~30m, 연장 466m | 서울시 |
| | 중로 2 - (483) | • 중로 2-(483) 호선 개설<br>- 폭 18m, 연장 384m | 강북구 |
| | 소로 2 - (114) | • 소로 2-(114) 호선 개설<br>- 폭 8~10m, 연장 99m | 강북구 |
| | 소로 1 - (1) | • 소로 1-(1) 호선 개설<br>- 폭 10m, 연장 190m | 강북구 |
| | 소로 2 - (-) | • 소로 2-(-)호선 개설<br>- 폭 8m, 연장 230m | 강북구 |
| 공원 | 청소년교육 문화공원 | • 청소년교육문화공원 조성<br>- 면적 : 5,444㎡ | 강북구 |
| | 어린이공원 | • 어린이공원 조성<br>- 면적 : 5,186㎡ | 강북구 |
| 공공시설 | 공공청사 ① | • 공공청사①(송천동 주민센터)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br>- 위치 : 미아동 469-22 일대<br>- 토지면적 : 2,500㎡ / 연면적 : 6,300㎡ (지하 1,300㎡, 지상 5,000㎡)<br>- 세부용도 : 동주민센터, 문화시설, 노인복지, 육아보육 등 | 강북구 |
| | 공공청사 ② | • 공공청사②(공공급식센터)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br>- 위치 : 미아동 469-47 일대<br>- 토지면적 : 1,561㎡ / 연면적 : 3,922㎡ (지하 800㎡, 지상 3,122㎡)<br>- 세부용도 : 공공급식센터 등 | 서울시 |
| | 노인복지시설 및 공공청사 ③ | • 노인복지시설 및 공공청사③ 토지 기부채납<br>- 위치 : 미아동 469-6 일대<br>- 토지면적 : 1,500㎡<br>- 세부용도 : 평생교육센터, 노인교육센터, 문화복합시설 등<br>※ 건축물은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에서 건립하여 기부채납 | 강북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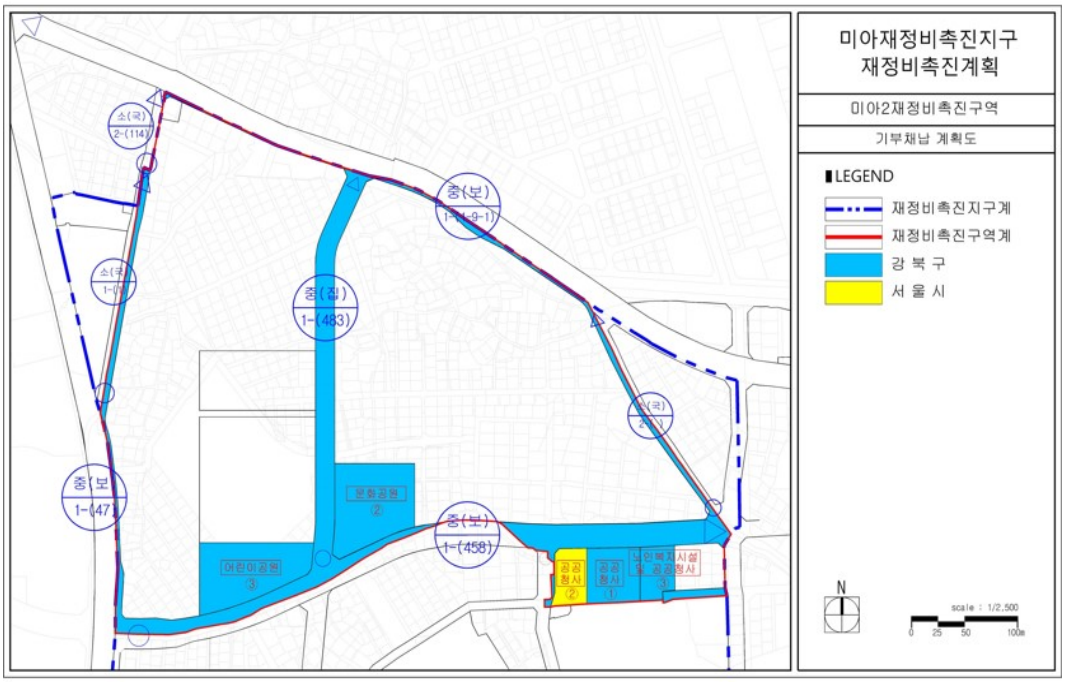


8)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2조(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서울시에 매각(처분)

| | |
|---|---|
| 계획기준 | • 임대주택건설 : 주택 전체 건립세대수의 17% 이상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사항)<br>•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 전용 40㎡이하<br>※ 40㎡이하 : 40㎡초과~50㎡이하 : 50㎡초과~60㎡이하 = 40~50% : 40~50% : 10~20%<br>※ 2020년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결과(2020.03.27.) 반영 : 임대주택 전용 32㎡, 43㎡는 가급적 분양주택 규모(59㎡)로 확대하여 소셜믹스 검토 |
| 산출근거 | • 전체 건립 세대수 : 3,519세대<br>•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계획 : 604세대<br>- 3,519세대 × 17% = 598.23 세대 이상 ∴ 604세대 > 598.23세대 |

| 세대규모 (전용) | 세대수 | | | 비고 (변경 임대주택 규모) |
|---|---|---|---|---|
| | 기정 | 증감 | 변경 | |
| 40㎡이하 | 204 | 증) 34 | 238 | (32㎡ : 238세대) |
| 40㎡초과~50㎡이하 | 204 | 감) 26 | 178 | (43㎡ : 178세대) |
| 50㎡초과~60㎡이하 | 96 | 증) 92 | 188 | (51㎡ : 162세대)<br>(59㎡ : 26세대) |
| 전체 | 504 | 증) 100 | 604 | - |

◆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임대주택 위치도

■ 예시

※ 임대주택 사회혼합(소셜믹스) 계획 : 임대주택의 동별·층별 위치 등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취지에 따라 인·허가 등 진행 시 후속 조치 (각 동·호수는 추첨에 의함)

9)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도시경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나) 환경 검토결과

| 구 분 | 목표기준 | 현황 및 검토결과 검토 항목 | 계획에 반영 사항 |
|---|---|---|---|
| 1. 생태면적율 | 30% | • 건축유형에 따른 생태면적율 기준 : 공동주택(개발면적660㎡이상) 30%이상 적용 | • 생태면적율 37.86%로 만족 |
| 2. 녹지네트워크 | 녹지평가 지표1 | • 녹지면적Ⅲ, 녹지모양Ⅲ, 내부 연결성Ⅰ, 외부연결성Ⅲ | • 녹지평가지표 기준1 달성 |
| 3. 지형변동 | 절성토비율 20%미만 | • 사업구역은 평탄지임<br>• 부지조성시 지하굴착에 따른 사토량발생 예상 | • 발생토량은 되메우기로 최대한 활용하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재활용 |
| |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 부지조성시 지하굴착에 따른 경미한 지형변화 예상 | • 평탄지형에 순응한 건축계획 수립 |
| 4. 비오톱 | 3등급 |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으로 조사됨 | • 공개공지, 조경녹지 등 녹지 공간 확보에 따른 긍정적 영향 예상 |
| 5. 일조 | 연속 2시간 확보 | • 일조피해 대상시설인 주거시설이 존재함 |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근거한 정밀한 일조영향 예측을 실시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임 |

| | | | |
|---|---|---|---|
| 6. 바람 및 미기후 | 바람길 확보 | • 서측과 동측에 북한산국립공원, 불암산 등의 영향으로 서풍계열과 북풍의 간섭이 많음 | • 서울시 주풍향 및 주변지역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
| 7. 에너지 |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 난방, 취사연료 사용량 증가 | • 청정연료 LNG 사용계획 수립 |
| | 신재생에너지 사용 | • 건물신축에 의한 에너지 사용량 증가 | • 태양광발전,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도입 |
| 8. 경관 | Skyline 보전 | • 공동주택 배치계획 및 층수 등이 변화함에 따라 스카이라인 변화 발생 | • 과도한 층수 증가 제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될 수 있는 건축계획 수립 |
| | 조망권 확보 | • 건축물 입지에 따른 경관 변화 예상 | • 합리적 조경계획수립 및 녹지 공간 확보, 건물의 경관적 균형 유지 계획수립 |
| | 가로녹시율 35% | • 사업구역 가로변을 따라 가로수 및 녹지 조성 | • 가로녹시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가로변 녹지조성 및 조경수목 식재 |
| 9. 휴식 및 여가공간 | 휴식 · 여가 공간 최대확보 | • 단지내 주민들의 휴식공간 부족 | • 문화공원 및 어린이공원 조성<br>• 녹지공간 최대확보 |
| 10.보행 친화공간 |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 주변 가로망을 따라 보행로 조성 | • 진입보행공간 충분히 확보 |
| | 자전거보관소 | • 사업구역내 자전거 보관시설 없음 | • 사업시행시 사업구역내 자전거보관소 설치 |
| 11. 폐기물 | 폐기물 처리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발생 예상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
| 12. 소음 · 진동 | 소음진동영향 | • 공사시 소음, 진동영향<br>• 운영시 도로에 의한 소음영향 | • 공사시 저감대책수립<br>• 이중창 등의 방음창 설치 |

10)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변경 없음)

- 본 사업지는 주거밀집지역으로서 자연성이 매우 낮고 식물상이 매우 빈약하나, 양호한 수목은 사업시 이식후 재식토록 함

11)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 | 비고 |
|---|---|---|---|---|---|---|
| | | | 현황 | 계획 | 증감 | |
| 재개발사업 | 2010년<br>(1단계) | 주택재개발조합 | 2,484호 | 기정) 2,870호<br>변경) 3,519호 | 증) 386호<br>증) 1,035호 | - |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 없음)

1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 정비구역 현황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 | 비고 |
|---|---|---|---|---|
| | 조합 설립 ~ 착공 전 | 착공 ~ 공사 완료 | 범죄예방설계 적용 | |
| 노후주택 밀집지역 | • 펜스 설치 및 유지 · 관리<br>• 1일 오전 · 오후 1회 우범지역 순찰<br>• 방범용 CCTV 설치 운영 | •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규정 준수 안전 시공<br>•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비 계상 | • 방범용 CCTV는 사각지대 1개소 이상 설치<br>• 무인택배함 동당 1개소 설치<br>• 내부가 보이는 구조의 엘리베이터 설치<br>• 식재로 인해 밀폐된 공간이 발생되지 않는 식재 계획 수립(자연감시 고려) | |

14) 건축계획

| 구 분 | 제2종일반주거 | 비 고 |
|---|---|---|
| 구역면적(㎡) | 179,566 | |
| 대지면적(㎡) | 124,165 | |
|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 323,939.12 | - |
| 건축면적(㎡) | 30,842.59 | - |
| 용적률(%) | 260.89 | 260.9% 이하 |
| 건폐율(%) | 24.84 | 25% 이하 |
| 주차대수 | 4,320대<br>(법정 3,304대) | - |

4.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 조서

| 구 분 | 정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 | 비 고 |
|---|---|---|---|---|---|---|
| |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기정 | 미아2재정비촉진구역<br>지구단위계획구역 | 서울시 강북구<br>미아동 403번지 일대 | 179,566 | - | 179,566 | - |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구 분 | | 면 적(㎡) | | | 구성비(%) |
|---|---|---|---|---|---|
|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계 | | 179,566 | - | 179,566 | 100.0 |
| 주거지역 | 1종일반주거지역 | 10,988 | 증) 4,106 | 15,094 | 8.4 |
| | 2종일반주거지역(7층) | 28,433 | 감) 9,802 | 18,631 | 10.4 |
| | 2종일반주거지역 | 140,145 | 증) 5,696 | 145,841 | 81.2 |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규 모 | | | | 기 능 | 연장(m) | 위 치 | | 사용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기 점 | 종 점 | | | | |
| 기정 | 중로 | 1 | (1-9-1) | 20~23 | 보조간선 | 2,050<br>(493) | 중로1-48 | 중로1-47 | 일반도로 | | 건설부고시 제533호<br>(68.09.02.) | |
| 기정 | 중로 | 1 | (47) | 20~30<br>(26) | 보조간선 | 5,055<br>(203) | 미아동 | 수유동 | 일반도로 | | 건설부고시 제738호<br>(63.12.24.) | |
| 기정 | 중로 | 2 | (483) | 18 | 집산도로 | 143 | 미아동 637-359<br>중로1-458 | 미아동 437-11 | 일반도로 | | 서고 제90호<br>(10.03.18.) | |
| 변경 | 중로 | 2 | (483) | 18 | 집산도로 | 384 | 미아동 637-359<br>중로1-458 | 미아동 860-140 | 일반도로 | | | 연장 241m 증가 |

| | | | | | | | | | | | | |
|---|---|---|---|---|---|---|---|---|---|---|---|---|
| 기정 | 중로 | 3 | (482) | 12~16 | 국지도로 | 223 | 미아동 480-7 중로1-503 | 미아동 862-1 중로1-458 | 일반도로 | | 서고 제354호 (90.10.24.)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 '20.07.01.)에 따른 변경 연장50m 증가 |
| 변경 | 중로 | 3 | (482) | 12~16 | 국지도로 | 273 (50) | 미아동 480-7 중로1-503 | 미아동 862-1 중로1-458 | 일반도로 | | | |
| 신설 | 중로 | 1 | (458) | 22 | 보조간선 | 596 | 미아동 637-359 중로1-47 | 미아동 862-1 소로1-814 | 일반도로 | | | |
| 신설 | 소로 | 2 | (114) | 8~10 | 국지도로 | 99 | 미아동 673-1 중로3-481 | 미아동 681 | 일반도로 | | | |
| 신설 | 소로 | 1 | (1) | 10 | 국지도로 | 190 | 미아동 883 중로1-47 | 미아동 673-1 소로2-114 | 일반도로 | | | |
| 신설 | 소로 | 2 | (-) | 8 | 국지도로 | 230 | 미아동 455-25 | 미아동 415-1 | 일반도로 | | | |

주) 폭원 및 연장내( )는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내 해당함

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20.07.01.)

2) 공원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기정 | 면적 (㎡) 증감 | 면적 (㎡) 변경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변경 | ② | 공원 | 문화공원 | 미아동 439-181 일대 | 7,870 | 감) 2,426 | 5,444 | 서고 제90호 (10.03.18.) | |
| 변경 | ③ | 공원 | 어린이공원 | 미아동 637-238 일대 | 2,267 | 증) 2,919 | 5,186 | 서고 제90호 (10.03.18.) | |

3)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기정 | 면적 (㎡) 증감 | 면적 (㎡) 변경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폐지 | ② | 공공공지 | 미아동 679 일대 | 109 | 감) 109 | - | 서고 제90호 (10.03.18.) | |
| 폐지 | ③ | 공공공지 | 미아동 438 일대 | 433 | 감) 433 | - | 서고 제90호 (10.03.18.) | |
| 폐지 | ④ | 공공공지 | 미아동 462-27 일대 | 1,602 | 감) 1,602 | - | 서고 제90호 (10.03.18.) | |

4) 학교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기정 | 면적 (㎡) 증감 | 면적 (㎡) 변경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변경 | ㊱ | 학교 | 초등학교 | 미아동 438 일대 | 8,984 | 증) 3,426 | 12,410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고시 제5호(87.02.21.) | 송천초교 |
| 변경 | ① | 학교 | 중학교 | 미아동 438 일대 | 12,027 | 감) 12,027 | - | 서고 제90호 (10.03.18.) | |
| 변경 | ② | 학교 | 유치원 | 미아동 438 일대 | 1,269 | 증) 4,071 | 5,340 | 서고 제90호 (10.03.18.) | |

○건축범위 결정 조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층) |
|---|---|---|---|---|
| ㊱ | 초등학교 | 60% 이하 | 200% 이하 | 7층 이하 |
| ② | 유치원 | 60% 이하 | 200% 이하 | 7층 이하 |

5)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 변경 | ① | 공공청사 | - | 미아동 469-22 일대 | 2,031 | 증) 469 | 2,500 | 서고 제90호 (10.03.18.) | 송천동 주민센터 (용적률 200%) 문화시설 복합설치 |
| 신설 | ② | 공공청사 | - | 미아동 469-47 일대 | - | 증) 1,561 | 1,561 | - | 공공급식센터 (용적률 200%) 서울시 귀속 |

주) 공공청사②(토지 및 시설)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운영 및 관리함
주) 향후 토지가격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연면적 및 토지 면적은 조정될 수 있으며, 시설의 세부용도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함

○ 건축범위 결정 조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층) |
|---|---|---|---|---|
| ① | 공공청사 | 60% 이하 | 200% 이하 | 관련법규에 따름 |
| ② | 공공청사 | 60% 이하 | 200% 이하 | 관련법규에 따름 |

6) 도서관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 기정 | - | 도서관 | 미아동 446-22 일대 | 1,500 | 감) 1,500 | - | 서고 제90호 (10.03.18.) | 청소년 정보도서관 (용적률 200%) |
| 변경 | ③ | 노인복지시설 및 공공청사③ | 미아동 469-6 일대 | - | 증) 1,500 | 1,500 | - | 노인복지시설 및 공공청사③ (용적률 200%) |

주) 공공청사③ : 문화복합시설

○ 건축범위 결정 조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층) |
|---|---|---|---|---|
| ③ | 노인복지시설 및 공공청사③ | 60% 이하 | 200% 이하 | 관련법규에 따름 |

7)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 폐지 | - | 문화시설 | 미아동 637-238 일대 | 3,926 | 감) 3,926 | - | 서고 제90호 (10.03.18.) | 송천동 주민센터에 문화시설 복합설치 |

라.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구 분 | 가 구 | 면 적(㎡) | | | 비율(%) | 비 고 |
|---|---|---|---|---|---|---|
|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 획 지 | 소계 | 122,742 | 증) 3,657 | 126,399 | 100.0 | - |
| | 2-1 | 118,580 | 감) 63,592 | 54,988 | 43.5 | 공동주택 |
| | 2-2 | 3,828 | 증) 65,349 | 69,177 | 54.7 | 공동주택 |
| | 2-3 | - | 증) 1,900 | 1,900 | 1.5 | 근린생활시설 |
| | 2-4 | 334 | - | 334 | 0.3 | 종교시설 |

2)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구 분 | | 가 구 | 용 도 | 비 고 |
|---|---|---|---|---|
| 기정 | 허용용도 | 2-1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허용용도 외 용도는 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가능 |
| 기정 | 허용용도 | 2-2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 신설 | 허용용도 | 2-3 |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br>•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br>•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br>•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br>•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
| 기정 | 허용용도 | 2-4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 |

◯ 건폐율 계획

| 구 분 | | 지역 | 건 폐 율 | 비 고 |
|---|---|---|---|---|
| 기정 | 2-1, 2-2(공동주택)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 이하 | |
| 신설 | 2-3(근린생활시설)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 따름 | |
| 기정 | 2-4(종교시설)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 따름 | |

◯ 용적률 계획

| 구 분 | | 용 적 률(%) | | | | 비 고 |
|---|---|---|---|---|---|---|
| |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 | |
| | | | | 상한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
| 기정 | 2-1, 2-2(공동주택) | 190 | - | 234.7 이하 | - | |
| 변경 | 2-1, 2-2(공동주택) | 210 | - | 260.9 이하 | - | |
| 신설 | 2-3(근린생활시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 따름 | | | | |
| 기정 | 2-4(종교시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 따름 | | | | |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 구 분 | | 용 적 률 | | 비 고 |
|---|---|---|---|---|
| | | 공공시설 기부채납 | 소형주택 건설 | |
| 기정 | 2-1, 2-2(공동주택) | 44.7 | - | - |
| 변경 | 2-1, 2-2(공동주택) | 50.9 | - | - |

○ 높이 계획

| 구 분 | | 지 역 | 높 이 기 준 | 비 고 |
|---|---|---|---|---|
| 기정 | 2-1, 2-2(공동주택) | 제2종일반주거지역 | 평균 15.8층 / 최고 35층이하 (105m이하) | |
| 변경 | 2-1, 2-2(공동주택) | 제2종일반주거지역 | 평균 19.9층 / 최고 35층이하 (105m이하) | |
| 신설 | 2-3(근린생활시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 따름 | | |
| 기정 | 2-4(종교시설)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등에 따름 | | |

3)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 구 분 | | 적용위치 | 계획내용 |
|---|---|---|---|
| 기정 | 건축한계선 | 삼양로, 솔샘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면도로, 그외 지구내도로 | 건축한계선 : 5m |
| | | 8m 및 10m도로변 공동주택, 지구내 18m도로변(공동주택) | 건축한계선 : 3m |
| 변경 | 건축한계선 | 삼양로, 솔샘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면도로, 그외 지구내도로 | 건축한계선 : 5m |
| | | 8m 및 10m도로변 공동주택, 지구내 18m도로변(공동주택,학교,공원) | 건축한계선 : 3m |

| 기 정 | 변 경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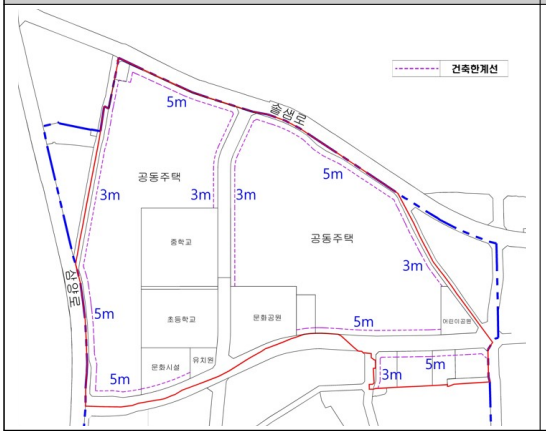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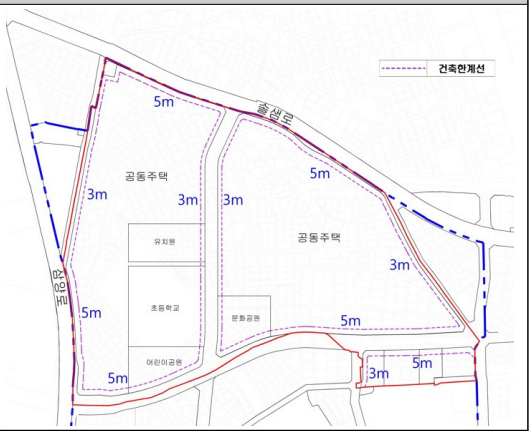 |



마. 경관계획

1) 건축물 배치에 관한 계획

| 구 분 | 적용위치 | 계 획 내 용 |
|---|---|---|
| 건축물의 방향성 | 공동주택 | • 기존 경사지를 활용하여 지형변동을 최소화<br>• 주변지형을 고려한 자연순응형 친환경계획 |
| 건물 진출입구 | 생활가로변 근린생활시설 | • 생활가로에 면한 근린생활시설의 벽면 및 주출입구 방향은 가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권장<br>• 생활가로에 면한 근린생활시설의 출입구는 가로에서 개별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 |

2)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 구 분 | 적용위치 | 계 획 내 용 |
|---|---|---|
| 건축물 외부형태 | 공동주택 | •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입면을 지양하고 변화감 있는 입면으로 계획<br>•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지나친 색채 사용 금지<br>• 주변 자연과 조화를 유지<br>•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br>• 대항부에서 조망되는 옥탑부에 우수한 입면 계획 권장<br>• 물탱크, 냉난방시설 등의 부속시설의 외부노출 지양 |

| | | |
|---|---|---|
| 저층부 외관 | 생활가로변 근린생활시설 | •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질서있는 입면 계획 권장<br>• 생활가로에 면한 1층 벽면은 투시형으로 계획<br>• 장대한 입면 및 돌출경관 지양<br>• 쇼윈도 설치 및 야간조명 설치 |
| 재료/색채 | 공동주택 | • 반사성 재료 사용 금지<br>• 넓은 면에 원색계열 재료 및 도료 사용 금지 |
| 진입구 처리 | 공동주택 | •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보도와 단차를 가급적 지양<br>• 접근로는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 및 형태로 계획 |

3) 경관에 관한 계획

| 구 분 | 적용위치 | 계 획 내 용 |
|---|---|---|
| 개방감 | 공동주택 | • 보행통로 및 공공보행통로를 따라 통경축 확보 |
| 조명계획 | 공동주택 | •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객관적 수치를 검토하여 야간조명 설치 계획<br>•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반영한 야간조명 계획 |
| 스카이라인 | 공동주택 | • 주변지역에 순응하는 스카이라인 계획<br>•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형성 유도 |

바.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 구 분 | | 적용위치 | 계 획 내 용 |
|---|---|---|---|
| 신설 | 전면공지 | 삼양로변, 솔샘로변 | • 미아2구역 내 폭원20m 이상 도로변의 보행을 위한 전면공지 폭은 건축한계선을 활용하여 5m로 하고, 그 중 폭 2m이상은 무장애로 계획함 |
| 신설 | 공공보행통로 | 공동주택 | • 서측 삼양사거리에서 동측 솔샘로 방향으로 보행접근성 개선<br>– 폭원 6m<br>• 서측 삼양로에서 동측 미아사거리역 및 도봉로 방향으로 보행접근성 개선<br>•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학교접근성 향상을 위한 학교용지사이 보행로 확보<br>– 폭원 6m |

2)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 구 분 | 적용위치 | 계 획 내 용 |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중로1-(1-9-1)<br>중로1-(47) | •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에서는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공공시설 제외) |

3)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의 건설에 관한 결정 조서

| 건립규모 | 전체 세대수 | 전체비율 (%) | 공공임대주택 세대수 | | | 공공임대주택 비율(%) | | |
|---|---|---|---|---|---|---|---|---|
| | | | 계 | 임대주택 | 소형주택 | 전체세대수 대비 | 전체비율 | 공공임대 중 소형주택 |
| 합 계 | 3,519 | 100.0 | 604 | 604 | – | 17.2 | 100.0 | – |
| 40㎡이하 | 238 | 6.8 | 238 | 238 | – | 6.8 | 39.4 | – |
| 40㎡초과~50㎡이하 | 178 | 5.1 | 178 | 178 | – | 5.1 | 29.5 | – |
| 50㎡초과~60㎡이하 | 1,996 | 56.7 | 188 | 188 | – | 5.3 | 31.1 | – |
| 60㎡초과~85㎡이하 | 942 | 26.7 | – | – | – | – | – | – |
| 85㎡초과 | 165 | 4.7 | – | – | – | – | – | – |

4) 환경관리계획

| 구 분 | 목표기준 | 현황 및 검토결과 검토 항목 | 계획에 반영 사항 |
|---|---|---|---|
| 1. 생태면적율 | 30% | • 건축유형에 따른 생태면적율 기준 : 공동주택(개발면적660㎡이상) 30%이상 적용 | • 생태면적율 37.86%로 만족 |
| 2. 녹지네트워크 | 녹지평가 지표1 | • 녹지면적Ⅲ, 녹지모양Ⅲ, 내부 연결성Ⅰ, 외부연결성Ⅲ | • 녹지평가지표 기준1 달성 |
| 3. 지형변동 | 절성토비율 20%미만 | • 사업구역은 평탄지임<br>• 부지조성시 지하굴착에 따른 사토량 발생 예상 | • 발생토량은 되메우기로 최대한 활용하고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재활용 |
| | 지형변동비율 30%미만 | • 부지조성시 지하굴착에 따른 경미한 지형변화 예상 | • 평탄지형에 순응한 건축계획 수립 |
| 4. 비오톱 | 3등급 | • 비오톱유형평가 5등급으로 조사됨 | • 공개공지, 조경녹지 등 녹지 공간 확보에 따른 긍정적 영향 예상 |
| 5. 일조 | 연속 2시간 확보 | • 일조피해 대상시설인 주거 시설이 존재함 |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근거한 정밀한 일조영향 예측을 실시하고 대책을 강구할 것임 |
| 6. 바람 및 미기후 | 바람길 확보 | • 서측과 동측에 북한산국립공원, 불암산 등의 영향으로 서풍계열과 북풍의 간섭이 많음 | • 서울시 주풍향 및 주변지역 바람길을 고려한 건축배치계획 수립 |
| 7. 에너지 |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 난방, 취사연료 사용량 증가 | • 청정연료 LNG 사용계획 수립 |
| | 신재생에너지 사용 | • 건물신축에 의한 에너지 사용량 증가 | • 태양광발전,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도입 |
| 8. 경관 | Skyline 보전 | • 공동주택 배치계획 및 층수 등이 변화함에 따라 스카이라인 변화 발생 | • 과도한 층수 증가 제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될 수 있는 건축계획 수립 |
| | 조망권 확보 | • 건축물 입지에 따른 경관 변화 예상 | • 합리적 조경계획수립 및 녹지 공간 확보, 건물의 경관적 균형 유지 계획 수립 |
| | 가로녹시율 35% | • 사업구역 가로변을 따라 가로수 및 녹지 조성 | • 가로녹시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가로변 녹지조성 및 조경수목 식재 |
| 9. 휴식 및 여가공간 | 휴식·여가 공간 최대확보 | • 단지내 주민들의 휴식공간 부족 | • 문화공원 및 어린이공원 조성<br>• 녹지공간 최대확보 |
| 10.보행 친화공간 | 보행자전용도로 계획수립 | • 주변 가로망을 따라 보행로 조성 | • 진입보행공간 충분히 확보 |
| | 자전거보관소 | • 사업구역내 자전거 보관시설 없음 | • 사업시행시 사업구역내 자전거보관소 설치 |
| 11. 폐기물 | 폐기물 처리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발생 예상 |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
| 12. 소음·진동 | 소음진동영향 | • 공사시 소음·진동영향<br>• 운영시 도로에 의한 소음영향 | • 공사시 저감대책수립<br>• 이중창등의 방음창 설치 |

사.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 구분 및 범례 | 세부지침 | 계획 지표 및 예시 이미지 |
|---|---|---|
| 탑상형 배치구간 | • 쾌적한 주거환경과 녹색주거단지 계획을 위해 상징성이 높은 랜드마크적 기능의 탑상형주동 계획을 수립한다.<br>• 저층부는 필로티의 기단을, 중층부는 변화와 리듬감을, 고층부는 상징성 있는 이미지의 입면계획 수립한다. | – |
| 판상형 배치구간 | • 촉진지구 내 가로변에 위치하여 중·저층 위주의 계획으로 시각적 개방감 및 낮은 높이에서 오는 보행안정감 확보한다.<br>• 단지내부로 저~중~고의 스카이라인을 형성한다. | – |
| 연도형상가 배치구간 | • 연도형상가로 표시되어 있는 구역에 적용한다.<br>• 연도형상가는 2개층 이하로 1, 2층을 연계하여 조성하며, 2층 면적은 상가 전체면적의 20%이상으로 한다.<br>• 상가와 상부 주거 공간과의 전면 보도에서 관계는 주거부분이 상가보다 2m이상 후퇴되도록 한다. | |
| 통경 확보구간 | • ‘통경 확보구간’ 에는 삼각산 방향으로 조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상건축물의 배치를 가급적 제한한다.<br>• ‘통경 확보구간’ 은 캐노피, 발코니, 브릿지 등 건축요소에 의해 차폐되지 않도록 한다.<br>• ‘통경 확보구간’ 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
| 공공보행통로 | • ‘공공보행통로’ 란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되어 보행자 통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대지 내에 조성한 통로로, 지상부 설치 또는 지하통로형, 필로티형 등으로 설치·이용 할 수 있으며,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진입부 및 보행로가 명확히 인지되도록 조성한다.<br>• ‘공공보행통로’ 주변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다.<br>• ‘공공보행통로’ 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
| 건축한계선 |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지상부분은 건축한계선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으며, 담장, 계단, 화단 등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일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br>• 건축한계선에 의하여 확보되는 공지는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제시하는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며, 개발주체가 조성하여야 한다.<br>• 교통영향평가 등 기타의 사유로 도로경계선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도로경계선을 기준으로 본 결정도에서 지정된 폭원만큼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로 인해 조성된 전면공지는 재정비촉진계획에 충실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 20m도로 이상 5m<br>20m도로 미만 3m |
| 단지내 광장 | • ‘단지내 광장’ 에서 커뮤니티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 연접하여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권장한다.<br>• 각 ‘단지내 광장’ 은 ‘단지내 보행동선’ 을 통해 서로 연결되도록 계획한다.<br>• ‘단지내 광장’ 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 |
| 단지내 보행동선 | • ‘단지내 보행동선’ 이란 각 주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단지 안팎을 오고가는 이동동선을 말한다.<br>• ‘단지내 보행동선’ 흐름의 연속성을 위하여, 보행동선이 건축물이나 차로로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br>• ‘단지내 보행동선’ 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 |
| 차량출입불허구간 | • ‘차량출입 불허구간’ 은 도로에서 대지 안으로 차량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구간을 말한다.<br>• ‘차량출입 불허구간’ 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를 따른다. | – |
| 차량출입구 | • 차량출입구가 지정된 대지내로의 차량출입은 차량출입구가 표시된 대지의 도로변 내에서 이루어져야한다.<br>• 차량출입구가 지정된 곳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6m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며, 담장, 계단, 화단 등 기타 차량출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 – |

## ◆ 건축배치도 및 단면도

■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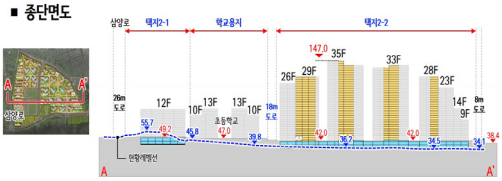


■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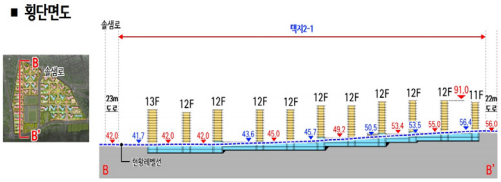


※ 주변 지형 및 연접구역에 순응한 단지 배치계획 수립을 위해 정비기반시설, 통경축, 공공보행통로 유지
※ 향후 건축심의 시 본 건축계획을 컨셉으로 심의를 받아야 하며,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불가피하게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할 수 있다.

## ◆ 임대세대 소셜믹스(사회혼합) 계획

| 구분 | | | 계 |
|---|---|---|---|
| 임대 | 32㎡ | | 238세대 |
| | 43㎡ | | 178세대 |
| | 51㎡ | | 162세대 |
| | 59㎡ | | 26세대 |
| | 소 계 | | 604세대 |
| 분양 | 51㎡ | | 69세대 |
| | 59㎡ | | 1,739세대 |
| | 84㎡ | | 942세대 |
| | 108㎡ | | 165세대 |
| | 소 계 | | 2,915세대 |
| 합 계 | | | 3,519세대 |

※ 임대주택 사회혼합(소셜믹스) 계획 : 임대주택의 동별 · 층별 위치 등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취지에 따라 인 · 허가 등 진행 시 후속 조치 (각 동 · 호수는 추첨에 의함)

5. 건축기본계획

□ 건축기본계획

| 구 분 | | 내 용 |
|---|---|---|
|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계획 | 2-1(공동주택)<br>2-2(공동주택) | 평균 19.9층 / 최고 35층이하 (105m이하) |
| | 2-3(근린생활시설)<br>2-4(종교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에 따름 |
| 스카이라인 계획 | • 단지 높이계획에 부합되도록 계획수립 | |
| 건축한계선 | 중로1-(1-9-1)<br>중로1-(47)<br>중로1-(458) | •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m |
| | 중로1-(483)<br>소로1-(1)<br>소로2-(114)<br>소로2-(-) | •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m |
| 통경축 | •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통로 및 공공보행통로를 따라 계획 : 폭원 6m | |
| 공공보행통로 | 공동주택 | • 서측 삼양사거리에서 동측 솔샘로 방향으로 보행접근성 개선<br>: 폭원 6m |
| | | • 서측 삼양로에서 동측 미아사거리역 및 도봉로 방향으로 보행접근성 개선<br>: 폭원 6m |
| | | •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학교접근성 향상을 위한 학교용지사이 보행로 확보 : 폭원 6m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중로1-(1-9-1)<br>중로1-(47) | •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차량출입불허구간에서는 대지로의 직접 차량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 건축물 외부형태 | •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입면을 지양하고 변화감 있는 입면으로 계획<br>•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br>•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br>• 솔샘로변 구간은 기존 배치형태(연도형 상가계획 포함)를 준수하여 가로활성화 공간 조성 | |
| 단지조성계획 | • 임대주택 소셜Mix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사회혼합(소셜믹스)이 되도록 동·호수를 분산배치 | |

※ 다만, 조화롭고 창의적인 설계를 위하여 서울시 건축위원회에서 불가피하게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 본 재정비촉진계획을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할 수 있다.

□ 경미한 변경 가능한 주동변경 예시

| 구분 | 기정 건축배치도 | 경미한 변경 가능 | 경미한 변경 불가능 |
|---|---|---|---|
| 주동 형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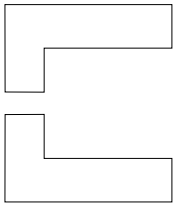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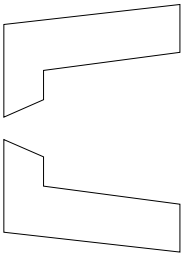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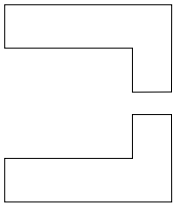 |

6. 2020년 제1차('20.03.27.)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결과 : 수정가결

| 심의의견 | 조치계획 | 비고 |
|---|---|---|
| ○ 노인복지시설은 타용도 전환 방지 및 문화복합시설 설치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노인복지시설 및 공공청사)로 결정하되 공공청사①과 현상공모 등을 통해 지하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권고함 | ○ 노인복지시설에 문화복합시설 설치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노인복지시설 및 공공청사③)로 중복 결정하겠음<br><br>○ 공공청사①과 도시계획시설(노인복지시설 및 공공청사③)에 대해 현상공모를 통해 지하를 함께 활용하도록 하겠음 | 반영 |
| ○ 기부채납 도로(당초 준공용도로) 북측 주변 건축물(122번동)은 개방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오픈 스페이스로 조성하고, 남측 어린이공원과 보행이 연결될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 등을 통한 연계방안을 검토할 것 | ○ 개방감 확보를 위해 122번동(15층, 2호조합) 위치를 오픈스페이스로 조성하고, (38개동→37개동) 113번동(29층, 5호조합)을 6호조합으로 조정함<br><br>○ 남측 어린이공원과 보행이 연결될 수 있도록 건축한계선(3m)등을 이용하여 4m 보도를 확보함 | 반영 |
| ○ 임대주택(전용 32㎡, 43㎡)은 가급적 분양주택 규모(59㎡)로 확대하여 소셜믹스를 검토하되, 당초 계획된 공동주택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이상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① 임대주택 32㎡(감 9세대) 및 43㎡(감 65세대)를 51㎡(증 74세대)로 추가 확대함<br>② 소셜믹스 동수를 기존 3개동에서 8개동으로 확대함<br><br>○ 공동주택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 비율<br>▸ 당초 계획 : 30,835㎡ / 282,635㎡ = 10.90%<br>▸ 조치 계획 : 35,029㎡ / 321,041㎡ = 10.91% | 반영 |
| ○ 공공보행통로는 횡단보도 등과 연계하여 보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택지는 인접 도로와 단차로 인한 옹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성할 것 | ○ 보행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횡단보도 2개소 추가 설치<br><br>○ 인접 도로와의 단차를 최소화하여 옹벽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일부 단차는 조경석으로 계획함 | 반영 |
| ○ 다음사항은 건축위원회 심의시 논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br>▸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은 통합로비를 거쳐서 각 세대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필로티 구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br><br>▸ 도로변에 배치한 임대주택은 소음 등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단지 내부 쪽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 임대주택 11개동 중 분양주택 규모(51㎡,59㎡)와 동일하여 소셜믹스가 가능한 8개동은 모두 소셜믹스하였고, 소셜믹스가 가능한 8개동 중 분양주택 규모보다 작은 규모(43㎡)가 포함되어 동선 분리가 우려되는 2개동은 동선이 분리되지 않도록 통합로비를 설치함<br><br>▸ 임대주택 2개동(119동,123동)을 단지 내부로 배치함<br>※ 건축위원회 심의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음 | 반영 |
| ▸ 설계완화 등 특례사항 적용이 필요할 경우 특별건축구역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권고함 | ▸ 향후 설계완화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

7.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붙임[미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총괄)] 및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 결정(변경) 도서 게재 생략

8. 지형도면은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와 강북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9.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02-2133-7228) 및 강북구 도시계획과(☎ 02-901-6864)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구역결정도(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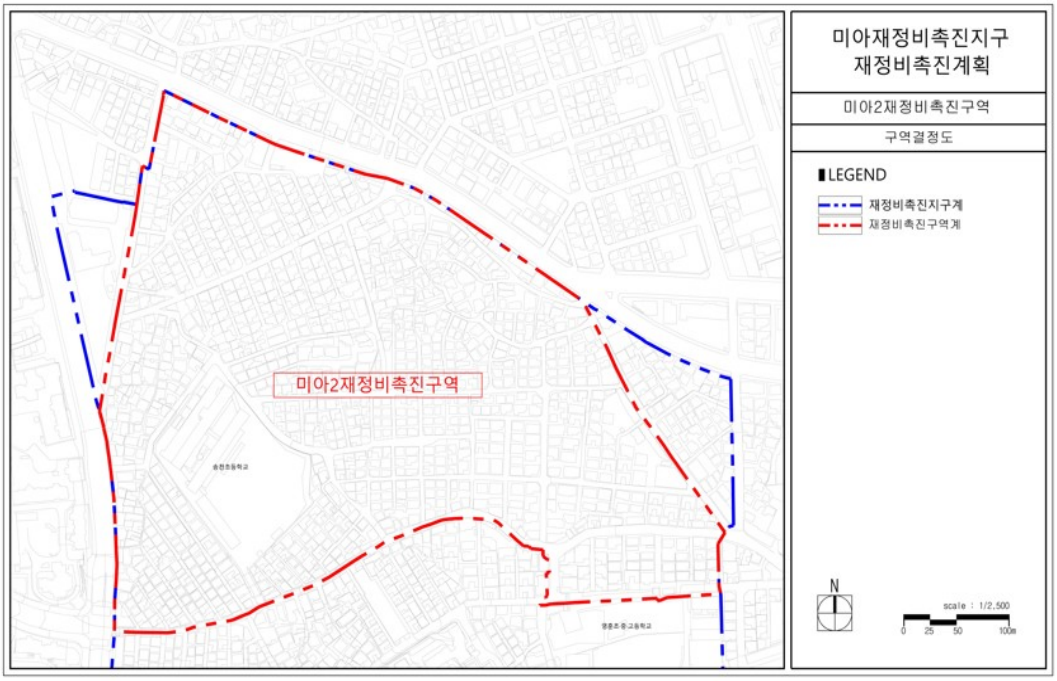


이하여백

■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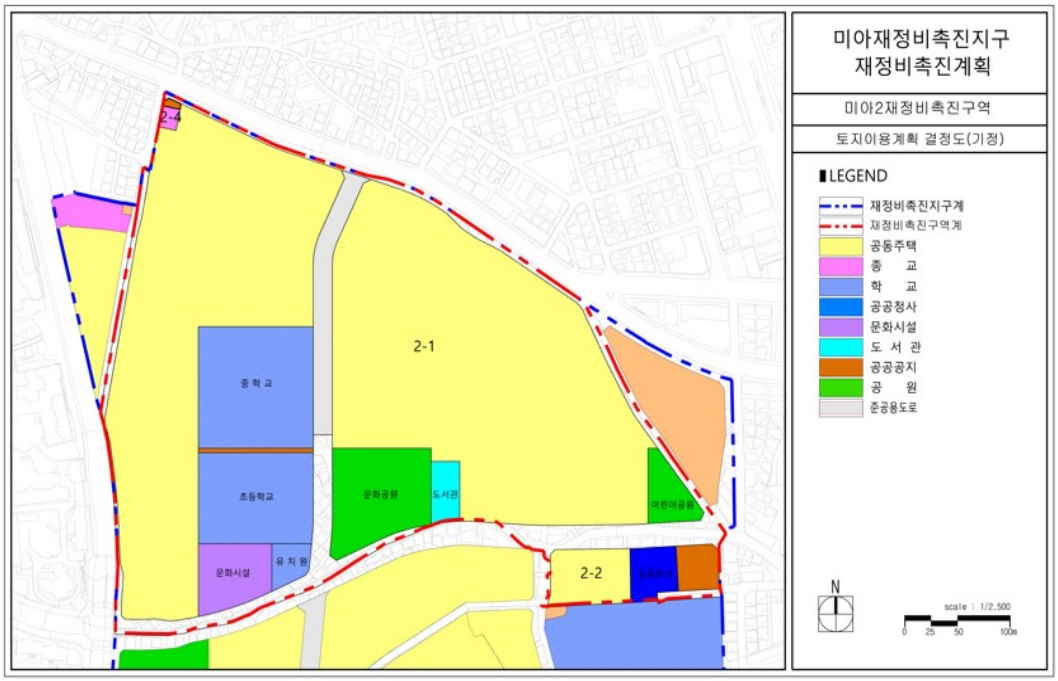


■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토지이용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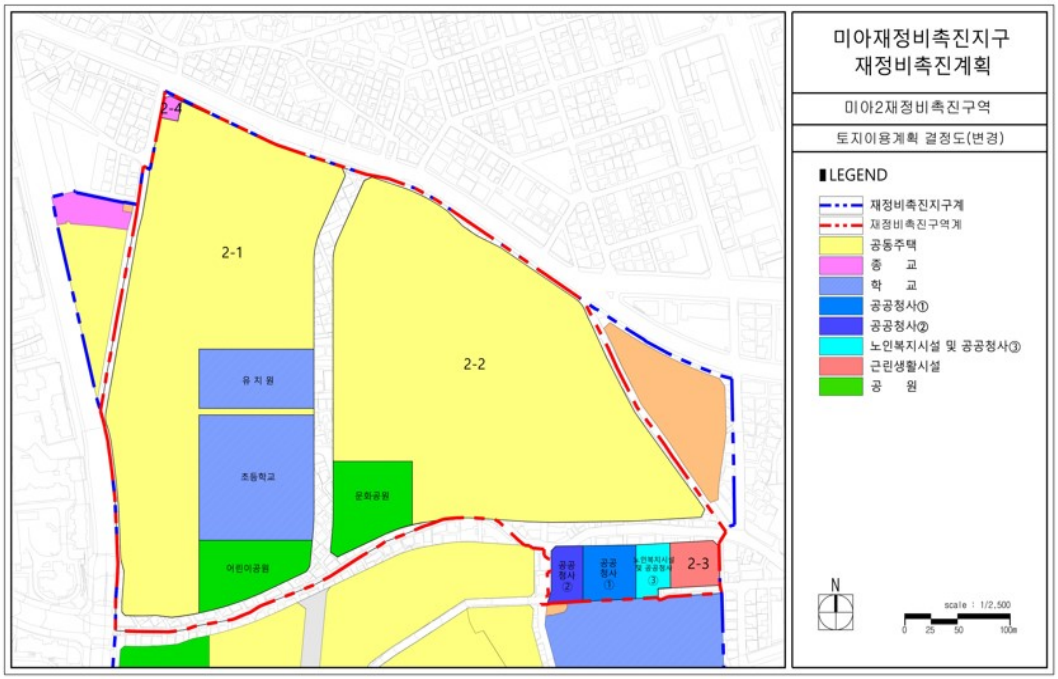

■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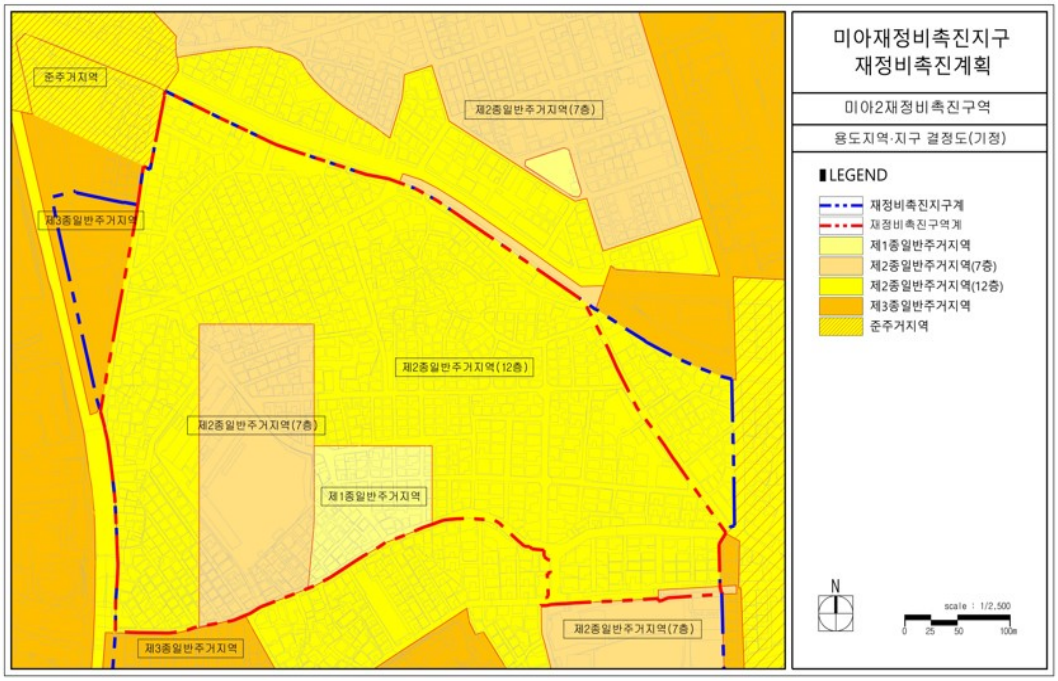


■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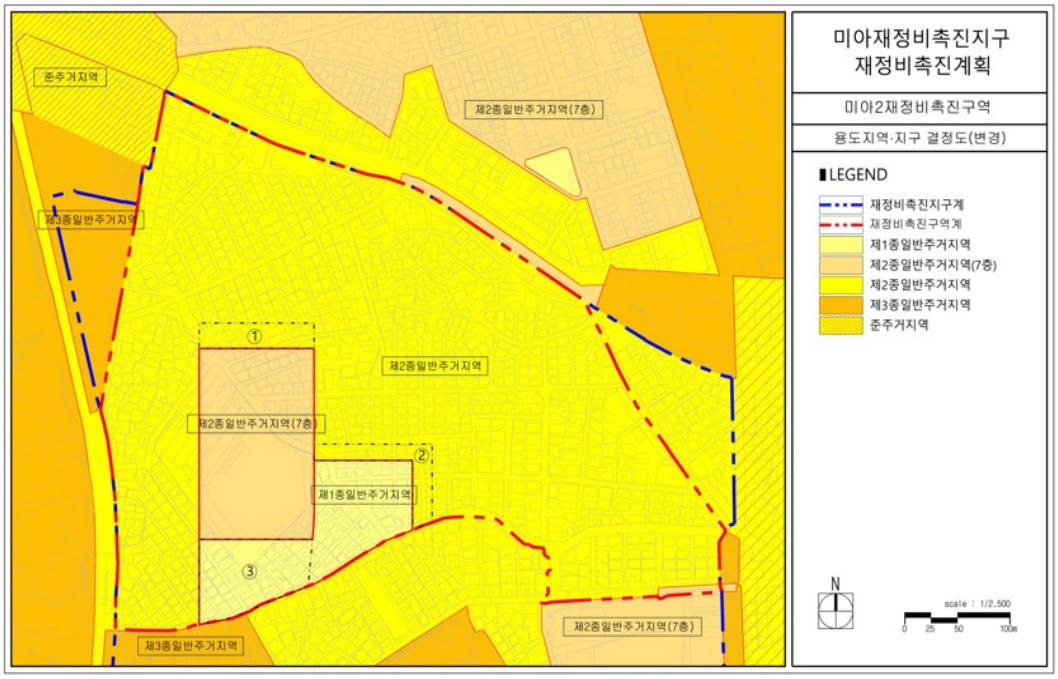

■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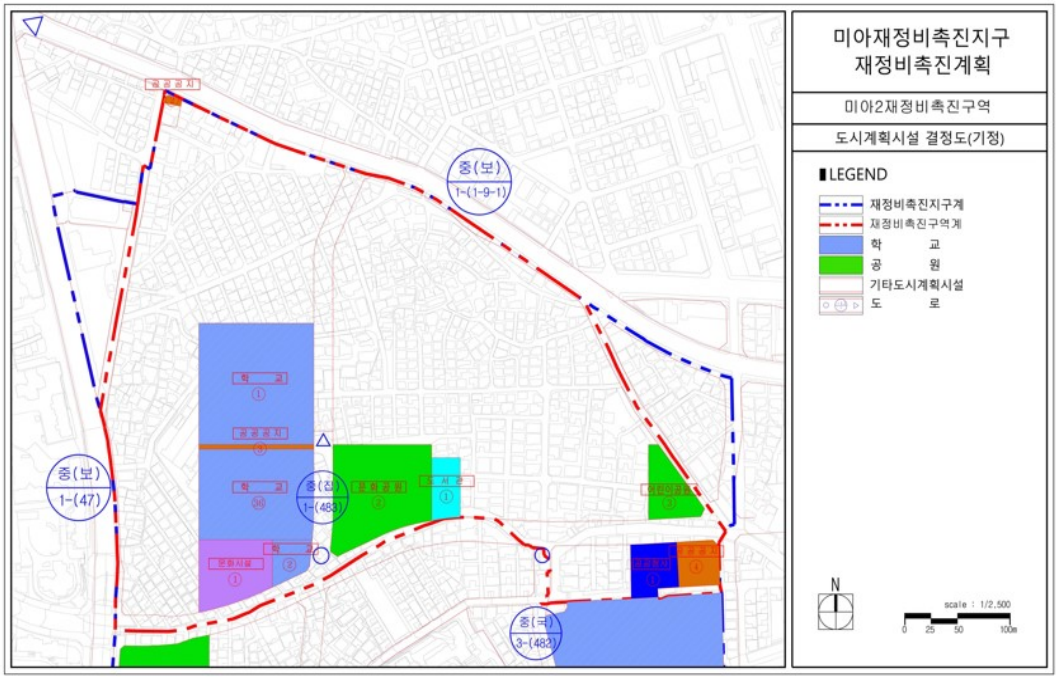


■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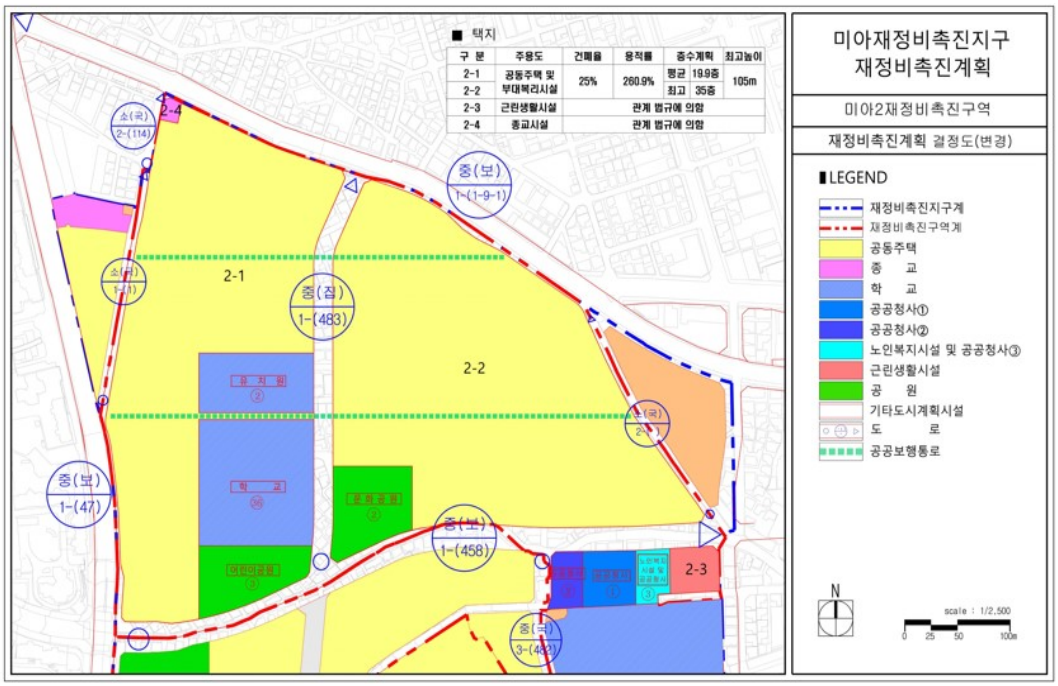


■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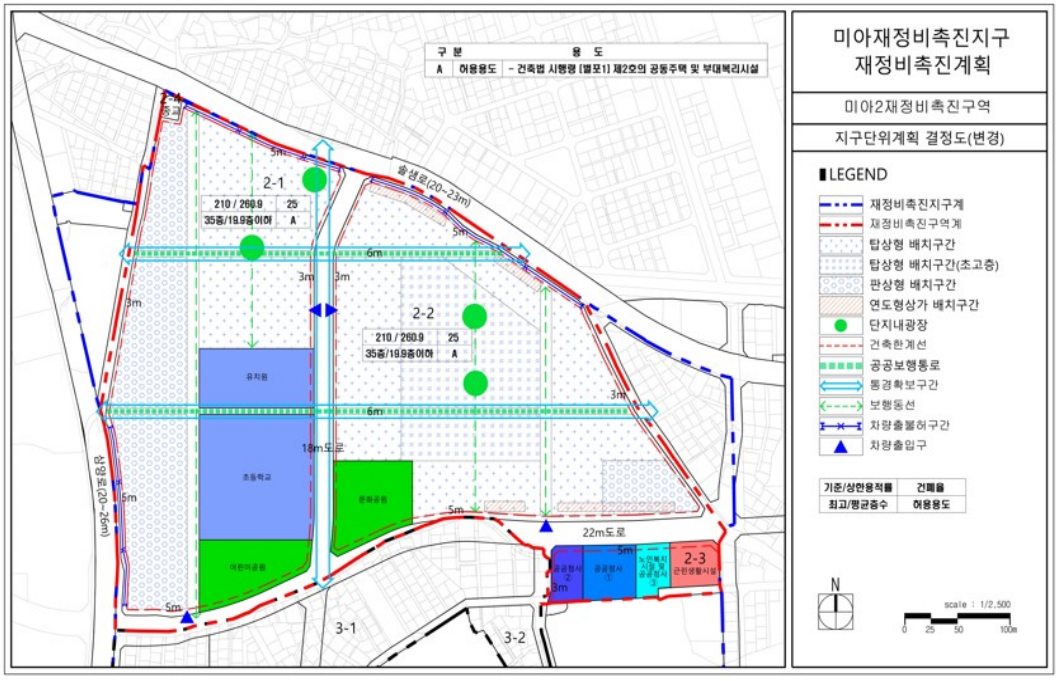

**붙임 :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총괄)**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없음)

| 명 칭 | | 유 형 | 위 치 | 면 적(㎡) | | | 비 고 |
|---|---|---|---|---|---|---|---|
| | |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미아 재정비 촉진지구 | 계 | 주거 지형 | 강북구 미아동 438번지 일대 | 937,890.7 | - | 937,890.7 | 노후·불량 주거밀집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녹지축 확보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 형성을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 | 기존지구 | | | 578,607.7 | - | 578,607.7 | |
| | 확장지구 | | | 359,283.0 | - | 359,283.0 | |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변경)

◯ 기준년도 : 2004년

◯ 목표년도 : 기정 2024년 → 변경 2027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 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

| 구 분 | | 면 적(㎡) | | | 구성비(%) | 비 고 |
|---|---|---|---|---|---|---|
|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 합 계 | | 359,283 | - | 359,283 | 100.00 | |
| 주택 건설 용지 | 소 계 | 235,275 | 증) 1,757 | 237,032 | 65.97 | |
| | 주거용지 | 235,275 | 증) 1,757 | 237,032 | 65.97 | |
| | 주거복합 | - | - | - | - | |
| 기반 시설 용지 | 소 계 | 118,800 | 감) 3,657 | 115,143 | 32.05 | |
| | 공공시설 | 1,409 | - | 1,409 | 0.39 | 도시재생지원센터<br>육아종합지원센터 |
| | 공공청사① | 2,031 | 증) 469 | 2,500 | 0.69 | 송천동 주민센터 |
| | 공공청사② | - | 증) 1,561 | 1,561 | 0.43 | 문화시설 →<br>공공청사②(공공급식센터) |
| | 문화시설 | 3,926 | 감) 3,926 | - | - | 여성문화체육센터 폐지 →<br>송천동 주민센터에 복합설치 |
| | 학 교 | 46,608 | 감) 8,601 | 38,007 | 10.58 | 초등학교 증) 3,426<br>중학교 감) 12,027 |
| | 유 치 원 | 1,269 | 증) 4,071 | 5,340 | 1.49 | 단설 유치원 |
| | 도 서 관 | 1,500 | 감) 1,500 | - | - | 도서관 →<br>노인복지시설 및 공공청사③<br>※ 공공청사③ : 문화복합시설 |
| | 노인복지시설 및 공공청사③ | - | 증) 1,500 | 1,500 | 0.42 | |
| | 공 원 | 14,133 | 증) 493 | 14,626 | 4.07 | |
| | 녹 지 | 1,223 | - | 1,223 | 0.34 | |
| | 공공공지 | 2,144 | 감) 2,144 | - | - | |
| | 광 장 | 491 | - | 491 | 0.14 | |
| | 도 로 | 44,066 | 증) 4,420 | 48,486 | 13.50 | |
| 근린생활시설 | | - | 증) 1,900 | 1,900 | 0.53 | 부지 신설 |
| 종교용지 | | 5,208 | - | 5,208 | 1.45 | |

2) 인구·주택수용계획: (기정) 15,337인 / 5,810호 → (변경) 17,051인 / 6,459호

| 구 분 | | 주택수(호) | | | 인구수(인) | | | 비고 |
|---|---|---|---|---|---|---|---|---|
|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존치지역 | | 1,026 | - | 1,026 | 2,708 | - | 2,708 | 2.64인 / 가구 |
| 재정비 촉진구역 | 소계 | 4,784 | 증) 649 | 5,433 | 12,629 | 증) 1,714 | 14,343 | |
| | 40㎡이하 | 346 | 증) 34 | 380 | 913 | 증) 90 | 1,003 | |
| | 40㎡초과~60㎡이하 | 2,206 | 증) 850 | 3,056 | 5,824 | 증) 2,244 | 8,068 | |
| | 60㎡초과~85㎡이하 | 1,923 | 감) 140 | 1,783 | 5,076 | 감) 369 | 4,707 | |
| | 85㎡초과 | 309 | 감) 95 | 214 | 816 | 감) 251 | 565 | |
| 계 | | 5,810 | 증) 649 | 6,459 | 15,337 | 증) 1,714 | 17,051 | |

3)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변경)

| 구 분 | | 개소 | | 면 적(㎡) | | | 비 고 |
|---|---|---|---|---|---|---|---|
|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합 계 | | 8 | 7 | 56,743 | 감) 6,426 | 50,317 | - |
| 교육·문화시설 | 교육시설 | 4 | 3 | 47,877 | 감) 4,530 | 43,347 | 신설 유치원, 송천초교, 신설 중학교, 영훈학교 → 신설 유치원, 송천초교, 영훈학교 |
| | 도서관 | 1 | - | 1,500 | 감) 1,500 | - | 도서관 → 노인복지시설 및 공공청사③ ※ 공공청사③ : 문화복합시설 |
| | 노인복지시설 및 공공청사③ | - | 1 | - | 증) 1,500 | 1,500 | |
| | 공공청사① | 1 | 1 | 2,031 | 증) 469 | 2,500 | 송천동 주민센터 |
| | 공공청사② | - | 1 | - | 증) 1,561 | 1,561 | 공공청사②(공공급식센터) |
| | 공공청사 | 1 | 1 | 1,409 | - | 1,409 | 도시재생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
| | 문화시설 | 1 | - | 3,926 | 감) 3,926 | - | 여성문화체육센터 폐지 → 송천동 주민센터에 복합설치 |

주) 공공청사②(공공급식센터), 노인복지시설 및 공공청사③(문화복합시설) 신설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변경)

| 구 분 | | 개소 | | 면 적(㎡) | | | 비 고 |
|---|---|---|---|---|---|---|---|
| | | 기 정 | 변 경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합 계 | | 5 | 5 | 15,356 | 증) 493 | 15,849 | |
| 공원 | 문화공원 | 2 | 2 | 11,010 | 감) 2,426 | 8,584 | 청소년교육문화공원 송천문화공원 |
| | 어린이공원 | 1 | 1 | 2,267 | 증) 2,919 | 5,186 | |
| | 소공원 | 1 | 1 | 856 | - | 856 | |
| 녹지 | 경관녹지 | 1 | 1 | 1,223 | - | 1,223 | |

5) 교통계획: 차량 출입구 변경 (별첨)

6) 경관계획: 스카이라인 계획 변경 (별첨)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건축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부문

◯ 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없음

◯ 주택재개발사업부문(변경)

| 구 분 | 구역 번호 | 생활권 유 형 | 동 명 | 지 번 | 면적 (ha) | 기준 용적률 | 층 수 | 건폐율 | 추진 단계 | 사업시행 방 식 | 정비유형 | 비고 |
|---|---|---|---|---|---|---|---|---|---|---|---|---|
| 기정 | 미아 2 | C | 미아동 | 403-44 | 18.0 | 190% | 35층 이하 | 60% | 1 | 주택재개발 | 전면개발 | 기준 용적률 증) 20% |
| 변경 | 미아 2 | C | 미아동 | 403-44 | 18.0 | 210% | 35층 이하 | 25% | 1 | 주택재개발 | 전면개발 | |
| 기정 | 미아 3 | C | 미아동 | 636-32 | 5.8 | 190% | 29층 이하 | 60% | 2 | 주택재개발 | 전면개발 | |
| 기정 | 미아 5 | C | 미아동 | 476 | 1.8 | 190% | 15층 이하 | 60% | 1 | 주택재개발 | 전면개발 | |

주) 추진단계는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단계적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름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변경 없음)

| 구 분 | | 위치 | 면적(㎡) | | | 사업의종류 |
|---|---|---|---|---|---|---|
| |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재정비촉진지구 | | | 359,283 | - | 359,283 | |
| 촉진구역 | 소 계 | | 284,116 | - | 284,116 | |
| |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 미아동 403-44 | 179,566 | - | 179,566 | 주택재개발 |
| |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 미아동 636-32 | 57,558 | - | 57,558 | 주택재개발 |
| |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 미아동 1261-376 | 28,517 | - | 28,517 | 주택재건축 |
| | 미아5재정비촉진구역 | 미아동 476 | 18,475 | - | 18,475 | 사업완료 |
| 존치관리구역 | | | 75,167 | - | 75,167 | |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가.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

| 구 분 | | 면 적(㎡) | | | 구성비(%) | 비고 |
|---|---|---|---|---|---|---|
|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 합 계 | | 179,566 | - | 179,566 | 100.0 | - |
| 주거지역 | 1종일반주거지역 | 10,988 | 증) 4,106 | 15,094 | 8.4 | - |
| | 2종일반주거지역(7층) | 28,433 | 감) 9,802 | 18,631 | 10.4 | - |
| | 2종일반주거지역 | 140,145 | 증) 5,696 | 145,841 | 81.2 | - |

나.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 없음)

다. 미아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사업)(변경 없음)

라. 미아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 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변경)

| 구 역 명 | | 주용도 | 용적률 | | 건폐율 | 높이계획 | |
|---|---|---|---|---|---|---|---|
| | | | 기준 | 상한 | | 평균층수/최고층수 | 최고높이 |
|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 기정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90% | 235.0% | 60%이하 | 15.8층 / 35층 | 105m이하 |
| | 변경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10% | 260.9% | 25%이하 | 19.9층 / 35층 | 105m이하 |
|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90% | 244.4% | 60%이하 | 17.5층 / 29층 | 90m이하 |
|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10% | 265.55% | 50%이하 | 23.5층 / 28층 | 90m이하 |
| 미아5재정비촉진구역 |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190% | 230.0% | 60%이하 | 14층 / 15층 | 48m이하 |

주) 최고높이는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의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임

주) 미아4구역 상한용적률(265.55%)은 법적상한용적률임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변경)

| 구 역 명 | | 면적(㎡) | 기반시설면적(㎡) | | | | |
|---|---|---|---|---|---|---|---|
| | | | 계획기반시설 ① |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② |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③ | 유상매입 시설 ④ | 순부담면적 ①-②-③-④ |
|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 기정 | 179,566 | 56,824 | 21,179 | 13,397 | - | 22,248 |
| | 변경 | 179,566 | 주1)41,291 (감 15,533) | 6,924 (감 14,255) | 8,494 (감 4,903) | - | 25,873 (증 3,625) |
|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 | 57,558 | 주2)15,912 | 5,027 | 3,502 | - | 7,383 |
|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 | 28,517 | 주3)9,348.7 | 2,924 | 3,057 | - | 3,367.7 |
| 미아5재정비촉진구역 | | 18,475 | 2,294 | 383 | 309 | - | 1,602 |

※ 주1) 공공청사① 및 공공청사②의 건립비용에 대한 환산부지면적 5,874㎡ 포함

※ 주2) 노인복지시설 및 공공청사③의 건립비용에 대한 환산부지면적 1,497㎡ 포함
※ 주3) 공공시설 [도시재생지원센터(연면적 1,280㎡), 육아종합지원센터(연면적 750㎡)] 건립비용에 대한 환산부지면적 1,386㎡ 및 보행연결교 [폭6m x 길이50m 중 210㎡] 설치비용에 대한 환산부지면적 418.7㎡ 포함
※ 미아5재정비촉진구역 사업완료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변경)

| 구 분 | | 전 체 세대수 | 임 대 주 택 | | | | 비고 |
|---|---|---|---|---|---|---|---|
| | | | 합계 | 30㎡초과~40㎡이하 | 40㎡초과~50㎡이하 | 50㎡초과~60㎡이하 | |
| 미아2재정비 촉진구역 | 기정 | 2,870 | 504 | 204 | 204 | 96 | - |
| | 변경 | 3,519 (증 649) | 604 (증 100) | 238 (증 34) | 178 (감 26) | 188 (증 92) | - |
|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 | 1,045 | 179 | 72 | 86 | 21 | - |
|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 | 493 | 10 | - | - | 10 | |
| 미아5재정비촉진구역 | | 376 | 70 | 70 | - | - | |
| 합 계 | 기정 | 4,784 | 763 | 346 | 290 | 127 | - |
| | 변경 | 5,433 (증 649) | 863 (증 100) | 380 (증 34) | 264 (감 26) | 219 (증 92) | |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변경)

| 구 분 | 단 계 | 사업기간 | | | 해당구역 | 비고 |
|---|---|---|---|---|---|---|
| | | 추진시기 | 이주시기 | 입주시기 | | |
| 기정 | 사업완료 | 2006 | 이주 완료 | 2010.9 | 미아5재정비촉진구역 | 사업완료 |
| 기정 | 1단계 | 2010 | 2012.3 이후 | 2021.6 |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 조합설립 |
| 변경 | 1단계 | 2010 | 2023.3 이후 | 2027.12 | | |
| 기정 | 2단계 | 2011 | 2013.9 이후 | 2021.6 |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 조합설립 |
| 기정 | 2단계 | 2011 | 2020.9 이후 | 2024.6 |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 조합설립 |

※ 사업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변경

14) 기타 계획(변경 없음)
15) 광고물 관리계획(변경 없음)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17)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가.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 : 생략(본문 내용과 같음)
나.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 없음)
다. 미아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사업)(변경 없음)
라. 미아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변경 없음)
마.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촉진구역별 건축계획)(변경 없음)

18)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조서(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 조서 (변경 없음)

| 구분 | 지 구 명 | 위 치 | 면 적 (㎡) | | | 비 고 |
|---|---|---|---|---|---|---|
| |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기정 | 미아재정비 촉진(확장)지구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438번지 일대 | 359,283 | - | 359,283 | - |

나.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 구 분 | | | 면 적(㎡) | | | 구성비 (%) | 비고 |
|---|---|---|---|---|---|---|---|
| |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 주거지역 | 계 | | 359,283 | - | 359,283 | 100.0 | - |
| | 일반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988 | 증) 4,106 | 15,094 | 4.2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 59,772 | 감) 9,802 | 49,970 | 13.9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98,981 | 증) 5,696 | 204,677 | 57.0 |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89,542 | - | 89,542 | 24.9 | - |
| | 준주거지역 | | - | - | - | - |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위치 | 용도지역 | | 면적(㎡) | 용적률(%) | 변경사유 |
|---|---|---|---|---|---|---|
| | | 기정 | 변경 | | | |
| ① | 강북구 미아동 436-6 일대 | 2종일반주거(7) | 2종일반주거 | 3,270 | - | • 학교부지 감소분중 일부를 택지로 변경함에 따라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 완료 후 용도지역의 일체적 관리를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 ② | 강북구 미아동 447-40 일대 | 1종일반주거 | 2종일반주거 | 2,426 | - | • 청소년교육문화공원 면적 감소분을 택지로 변경함에 따라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 완료 후 용도지역의 일체적 관리를 위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 ③ | 강북구 미아동 637-238 일대 | 2종일반주거(7) | 1종일반주거 | 6,532 | - | • 어린이공원 면적증가 및 위치변경에 따라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

다.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 없음)

(1) 미관지구(변경 없음)

|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폐지 | 1 | 미관지구 | 일반미관지구 | 삼양로변 | 12,223㎡ (9,995㎡) | 817m (667m) | 15 | 서고제285호 (05.09.29.) | - |

※ 미관지구는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9호(2019.04.18.)로 폐지된 사항이나 폐지되기 전 미관지구 내용을 기제함
※ ( )는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내 면적 및 연장

(2) 방화지구(변경 없음)

(3) 경관지구(변경 없음)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m) | 위치 | | 사용형태 | 주요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기점 | 종점 | | | | |
| 기정 | 중로 | 1 | (1-9-1) | 20~23 | 보조간선 | 2,050 (630) | 중로1-48 | 중로1-47 | 일반도로 | | 건설부고시 제533호 (68.09.02.) | |
| 기정 | 중로 | 1 | (47) | 20~30 | 보조간선 | 5,055 (466) | 미아동 | 수유동 | 일반도로 | | 건설부고시 제738호 (63.12.24.) | |
| 기정 | 중로 | 1 | (503) | 20 | 보조간선 | 724 (580) | 미아동 560-30 | 미아동 126-337 | 일반도로 | | 서고 제387호 (78.08.03.) | |
| 기정 | 중로 | 2 | (483) | 18 | 집산도로 | 143 | 미아동 637-359 중로1-458 | 미아동 437-11 | 일반도로 | | 서고 제90호 (10.03.18.) | |
| 변경 | 중로 | 2 | (483) | 18 | 집산도로 | 384 | 미아동 637-359 중로1-458 | 미아동 860-140 | 일반도로 | | | 연장 241m 증가 |
| 기정 | 중로 | 2 | (484) | 18 | 집산도로 | 174 | 미아동 1261-280 중로1-503 | 미아동 1261-72 | 일반도로 | | 서고 제3호 (69.01.18.) | |
| 기정 | 중로 | 3 | (482) | 12~16 | 국지도로 | 223 | 미아동 480-7 중로1-503 | 미아동 862-1 중로1-458 | 일반도로 | | 서고 제354호 (90.10.24.)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 '20.07.01.) 에따른 변경 연장50m 증가 |
| 변경 | 중로 | 3 | (482) | 12~16 | 국지도로 | 273 | 미아동 480-7 중로1-503 | 미아동 862-1 중로1-458 | 일반도로 | | | |
| 기정 | 소로 | 2 | (2) | 8 | 국지도로 | 248 | 미아동 474-4 중로2-484 | 미아동 471-14 중로3-482 | 일반도로 | | 서고 제445호 (08.12.11.) | |
| 기정 | 소로 | 2 | (3) | 8 | 국지도로 | 59 | 미아동 61-86 | 미아동 468-10 | 일반도로 | | 서고 제445호 (08.12.11.) | |
| 기정 | 소로 | 2 | (4) | 8 | 국지도로 | 210 | 미아동 637-440 중로1-47 | 미아동 1261-634 중로2-484 | 일반도로 | | 서고 제105호 (83.02.24.) | |
| 기정 | 소로 | 3 | (1) | 6 | 국지도로 | 30 | 미아동 1261-423 소로2-4 | 미아동 1261-431 | 일반도로 | | 서고 제18호 (19.01.10.) | |
| 기정 | 소로 | 3 | (2) | 6 | 특수도로 | 50 (35) | 미아동 1261-531 | 미아동 813-6 | 보행자전용도로 (고가) | | 서고 제18호 (19.01.10.) | 공공청사② (28.6㎡), 삼양로 (199.3㎡), 폭포소공원 (72.1㎡)과 중복결정 |
| 신설 | 중로 | 1 | (458) | 22 | 보조간선 | 596 | 미아동 637-359 중로1-47 | 미아동 862-1 소로1-814 | 일반도로 | | | |
| 신설 | 소로 | 2 | (114) | 8~10 | 국지도로 | 99 | 미아동 673-1 중로3-481 | 미아동 681 | 일반도로 | | | |
| 신설 | 소로 | 1 | (1) | 10 | 국지도로 | 190 | 미아동 883 중로1-47 | 미아동 673-1 소로2-114 | 일반도로 | | | |
| 신설 | 소로 | 2 | (-) | 8 | 국지도로 | 230 | 미아동 455-25 | 미아동 415-1 | 일반도로 | | | |

주) 연장내( )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해당함

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20.07.01.)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중로 2-(483) | 중로 2-(483) | • 연장증가 (증 241m)<br>- L : 143m→384m, B : 18m | • 택지내 사유지인 준공용도로(폭 18m, 연장 241m)의 도로차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기부채납 |
| 중로 3-(482) | 중로 3-(482) | • 연장증가 (증 50m)<br>- L : 223m→273m,<br>B : 12~16m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20.07.01.)에 따른 변경 |
| - | 중로 1-(458) | • 신설<br>- L : 596m, B : 22m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 '20.07.01.)에 따른 신설 |
| - | 소로 2-(114) | • 신설<br>- L : 99m, B : 8~10m | |
| - | 소로 1-(1) | • 신설<br>- L : 190m, B : 10m | |
| - | 소로 2-(-) | • 신설<br>- L : 230m, B : 8m | |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

□ 총괄표(변경)

| 구 분 | 시가화구역 | | | |
|---|---|---|---|---|
| | 기정 | | 변경 | |
|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 합 계 | 4 | 14,133 | 4 | 14,626 |
| 문화공원 | 2 | 11,010 | 2 | 8,584 |
| 어린이공원 | 1 | 2,267 | 1 | 5,186 |
| 소공원 | 1 | 856 | 1 | 856 |

□ 공원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 변경 | ② | 공원 | 문화 공원 | 미아동 439-181 일대 | 7,870 | 감) 2,426 | 5,444 | 서고 제90호 (10.03.18.) | |
| 변경 | ③ | 공원 | 어린이 공원 | 미아동 637-238일대 | 2,267 | 증) 2,919 | 5,186 | 서고 제90호 (10.03.18.) | |
| 기정 | ④ | 공원 | 문화 공원 | 미아동 637-56 일대 | 3,140 | - | 3,140 | 서고 제90호 (10.03.18.) | |
| 기정 | ⑥ | 공원 | 소공원 | 미아동 476-252 일대 | 856 | - | 856 | 서고 제90호 (10.03.18.)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② | 문화공원 | • 면적 변경 : 감) 2,426㎡ |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17.02.04.)되어 인접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이 초등학교 일조기준에 저촉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부 공원위치 변경 |
| ③ | 어린이공원 | • 면적 변경 : 증) 2,919㎡<br>• 위치 이동 : 455-1일대 → 637-238 일대 | |

나) 녹지(변경 없음)

다)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 폐지 | ② | 공공공지 | 미아동 679 일대 | 109 | 감) 109 | - | 서고 제90호 (10.03.18.) | |
| 폐지 | ③ | 공공공지 | 미아동 438 일대 | 433 | 감) 433 | - | 서고 제90호 (10.03.18.) | |
| 폐지 | ④ | 공공공지 | 미아동 462-27 일대 | 1,602 | 감) 1,602 | - | 서고 제90호 (10.03.18.) | |
| 폐지 | ⑤ | 공공공지 | 미아동 1261-253 일대 | 113 | 감) 113 | - | 서고 제90호 (10.03.18.) | |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② | 공공공지 | • 택지2-1(공동주택) 편입<br>- 면적 : 감) 109㎡ | • 준공용도로(대지) 4,420㎡를 도시계획도로로 기부채납하여 감소된 대지면적 4,420㎡에 대한 일부(2,144㎡) 보전 |
| ③ | 공공공지 | • 택지2-1(공동주택) 편입<br>- 면적 : 감) 433㎡ | |
| ④ | 공공공지 | • 택지2-3(근린생활시설) 편입<br>- 면적 : 감) 1,602㎡ | |

라) 광 장 (변경 없음)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가) 학교(변경)

□ 학교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 |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 기정 | ㊸ | 학교 | 초·중·고교 | 미아동 471-2 일대 | 26,013 | - | 26,013 | 서고 제115호 (17.07.22.) | 영훈 초·중·고 |
| 변경 | ㊱ | 학교 | 초등학교 | 미아동 438 일대 | 8,984 | 증) 3,426 | 12,410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고시 제5호(87.02.21.) | 송천 초교 |
| 변경 | ① | 학교 | 중학교 | 미아동 438 일대 | 12,027 | 감) 12,027 | - | 서고 제90호 (10.03.18.) | |
| 변경 | ② | 학교 | 유치원 | 미아동 438 일대 | 1,269 | 증) 4,071 | 5,340 | 서고 제90호 (10.03.18.) | |

○ 건축범위 결정 조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층) |
|---|---|---|---|---|
| ㊱ | 초등학교 | 60% 이하 | 200% 이하 | 7층 이하 |
| ② | 유치원 | 60% 이하 | 200% 이하 | 7층 이하 |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㊱ | 학교 | 초등학교 | • 면적변경 : 증) 3,426㎡ | • 성북강북교육지원청 업무협의 결과 반영<br>-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중학교 신설수요 없음<br>- 부족한 국공립 단설유치원 부지 확대 요청 |
| ① | 학교 | 중학교 | • 신설 계획 폐지 | |
| ② | 학교 | 유치원 | • 면적변경 : 증) 4,071㎡ | |

주) 학교계획면적 (17,750㎡ = 12,410㎡ + 5,340㎡) 중 기존 송천초등학교 면적(15,648㎡)은 대체처리하고 나머지 면적(2,102㎡)은 서울시교육청(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정산처리함

주) 초등학교의 건립비용은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에서 부담 / 유치원의 건립비용은 서울시교육청(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서 부담

나) 공공청사(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 | | |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 기정 | 2 | 공공청사 | - | 미아동 1261-548 일대 | 1,409 | - | 1,409 | - | - |
| 변경 | ① | 공공청사 | - | 미아동 469-22 일대 | 2,031 | 증) 469 | 2,500 | 서고 제90호 (10.03.18.) | 송천동 주민센터 (용적률 200%) 문화시설 복합설치 |
| 신설 | ② | 공공청사 | - | 미아동 469-47 일대 | - | 증) 1,561 | 1,561 | - | 공공급식센터 (용적률 200%) 서울시 귀속 |

주) 공공청사②(토지 및 시설)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며, 서울특별시장이 운영 및 관리함

주) 향후 토지가격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연면적 및 토지 면적은 조정될 수 있으며, 시설의 세부용도는 서울시 기부채납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 추후 확정함

○ 건축범위 결정 조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층) |
|---|---|---|---|---|
| 2 | 공공청사 | 50% 이하 | 관련법규에 따름 | 관련법규에 따름 |
| ① | 공공청사 | 60% 이하 | 200% 이하 | 관련법규에 따름 |
| ② | 공공청사 | 60% 이하 | 200% 이하 | 관련법규에 따름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① | 공공청사 | - | • 면적 변경 : 증) 469㎡<br>• 위치 이동 :<br>469-6일대 → 469-22 일대 | • 서울시(주거재생과)에서 관련 실 · 국 · 본부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 (서울시 친환경급식과에서 공공급식센터 요청)<br>• 문화시설 폐지 후 공공청사①(동주민센터) 및 공공청사②(공공급식센터)를 건립하여 관련기관에 기부채납 |
| ② | 공공청사 | - | • 공공청사② 신설<br>- 면적 : 증) 1,561㎡ | |

다) 도서관 (변경)

□ 도서관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 기정 | - | 도서관 | 미아동 446-22 일대 | 1,500 | 감) 1,500 | - | 서고 제90호 (10.03.18.) | 청소년 정보도서관 (용적률 200%) |
| 변경 | ③ | 노인복지시설 및 공공청사③ | 미아동 469-6 일대 | - | 증) 1,500 | 1,500 | - | 노인복지시설 및 공공청사③ (용적률 200%) |

주) 공공청사③ : 문화복합시설

○ 건축범위 결정 조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층) |
|---|---|---|---|---|
| ③ | 노인복지시설 및 공공청사③ | 60% 이하 | 200% 이하 | 관련법규에 따름 |

○ 도서관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③ | 도서관 | • 노인복지시설 및 공공청사③으로 변경 | • 2019년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 반영<br>- 2030 서울생활권계획 검토결과 삼각산지역생활권은 노인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도서관을 노인복지시설로 변경<br>• 2020년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결과 반영<br>- 노인복지시설에 문화복합시설 설치를 고려하여 노인복지시설 및 공공청사③으로 중복 결정 |

라) 문화시설(변경)

□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
| 폐지 | - | 문화시설 | 미아동 637-238 일대 | 3,926 | 감) 3,926 | - | 서고 제90호 (10.03.18.) | 송천동 주민센터에 문화시설 복합설치 |

○ 문화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 | 문화시설 | • 택지2-1(공동주택) 편입<br>- 면적 : 감) 3,926㎡ | • 서울시 주거재생과 의견(2018.05.08.) 반영<br>• 서울시(주거재생과)에서 관련 실·국·본부를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 반영 (서울시 친환경급식과에서 공공급식센터 요청) |

■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결정도(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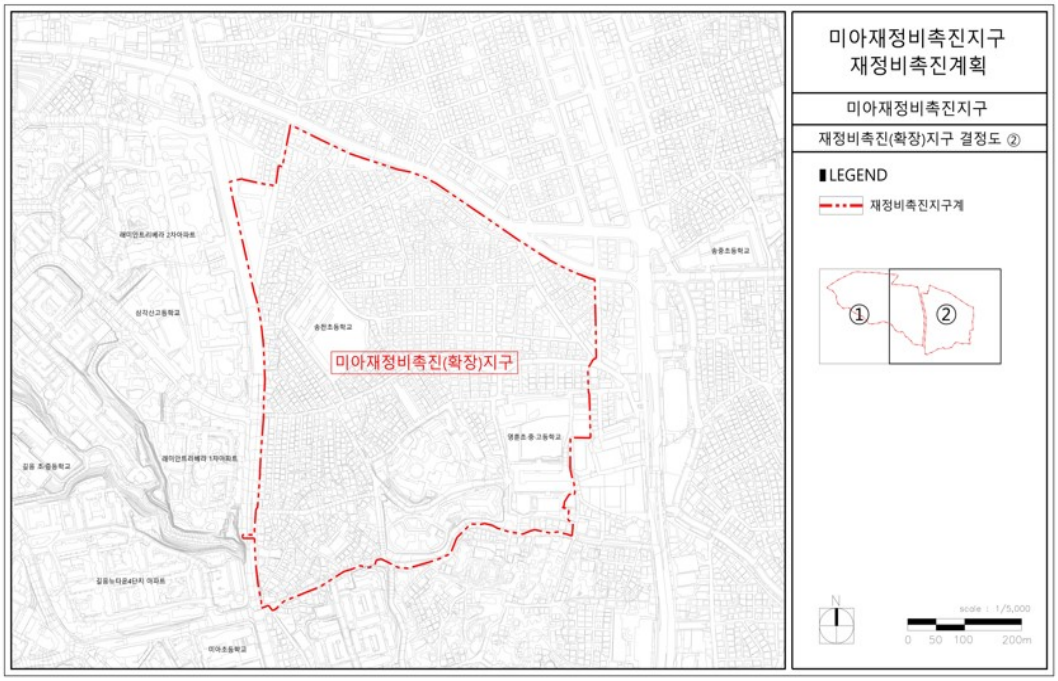


■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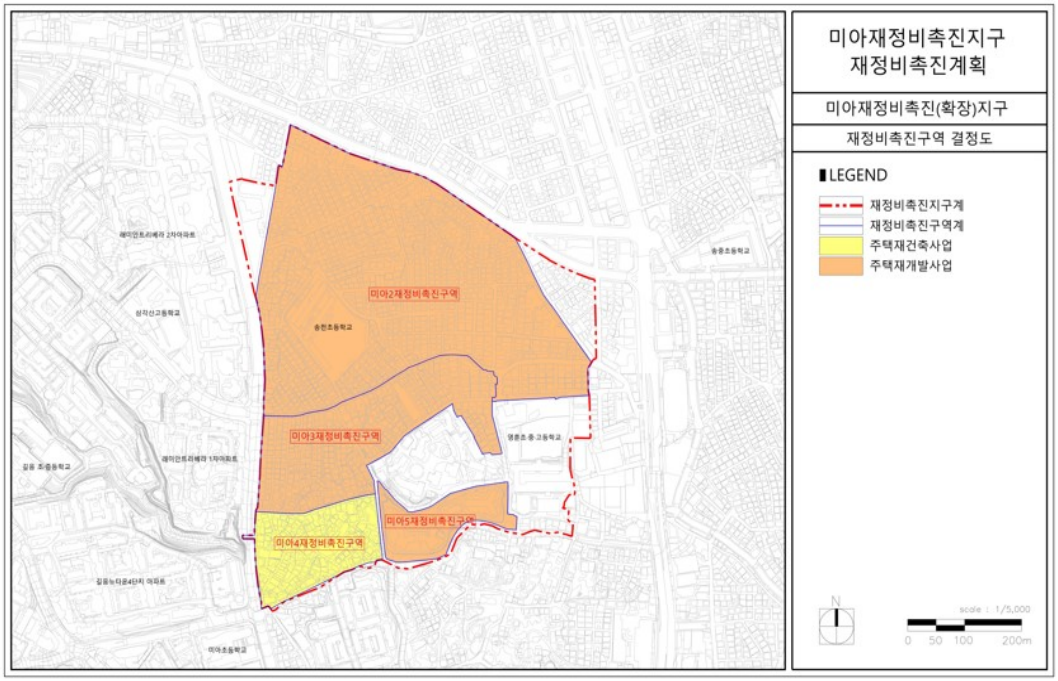

■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용도지역·지구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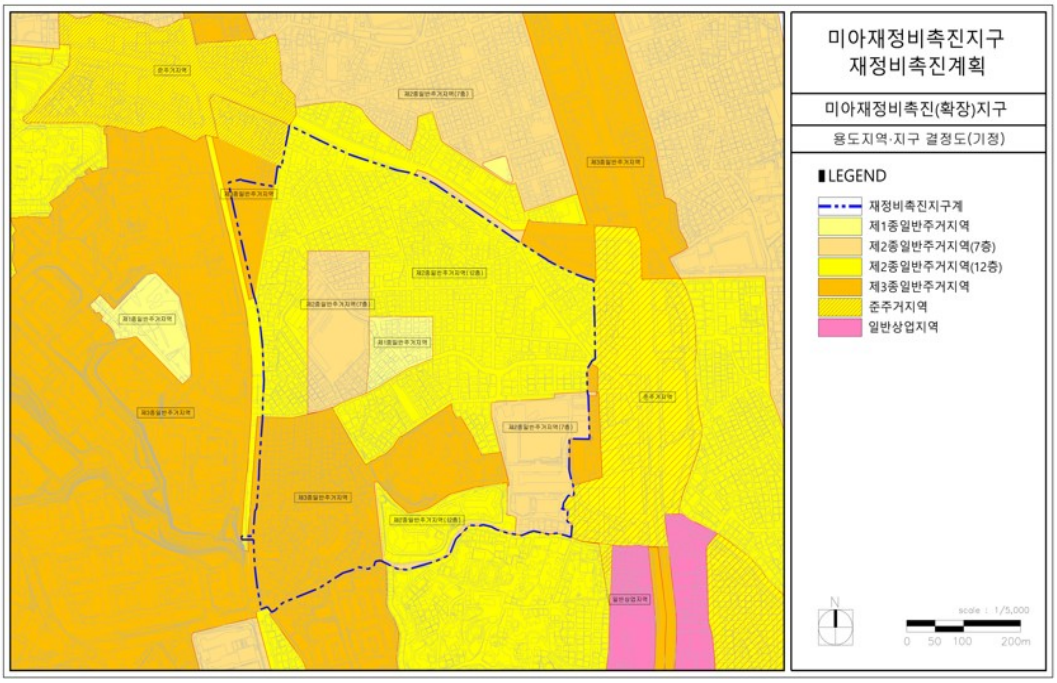


■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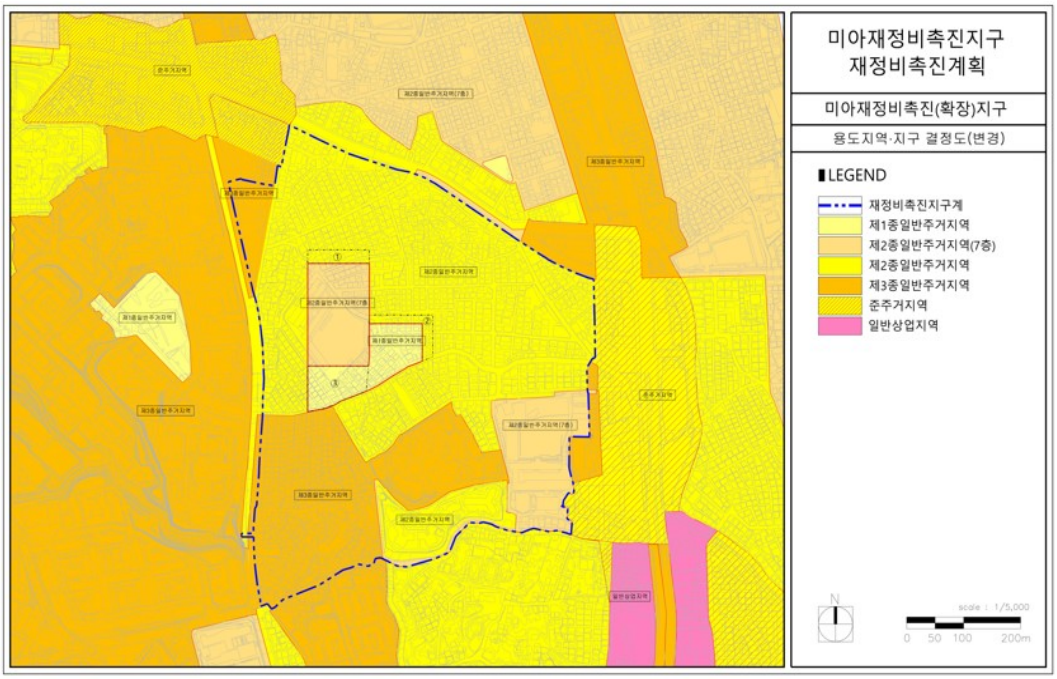

■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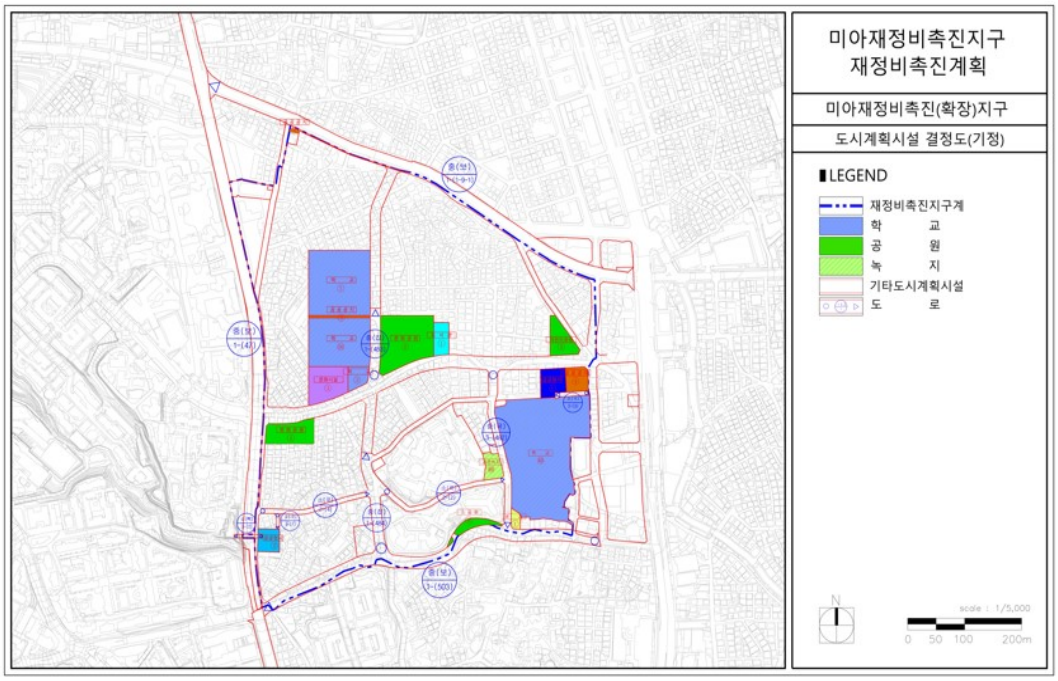


■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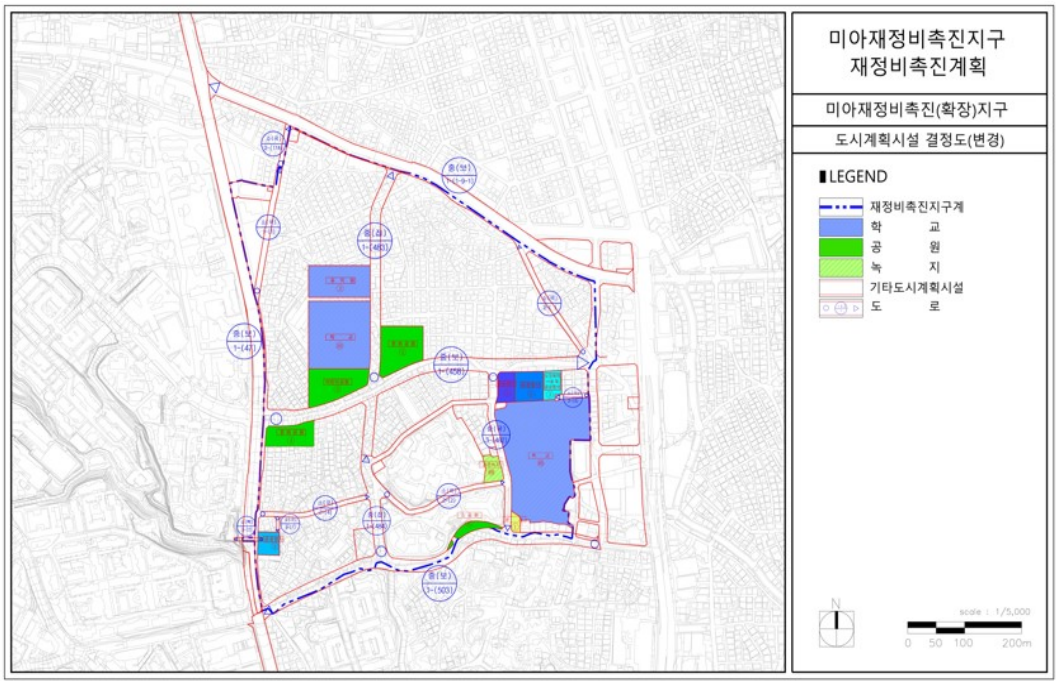

■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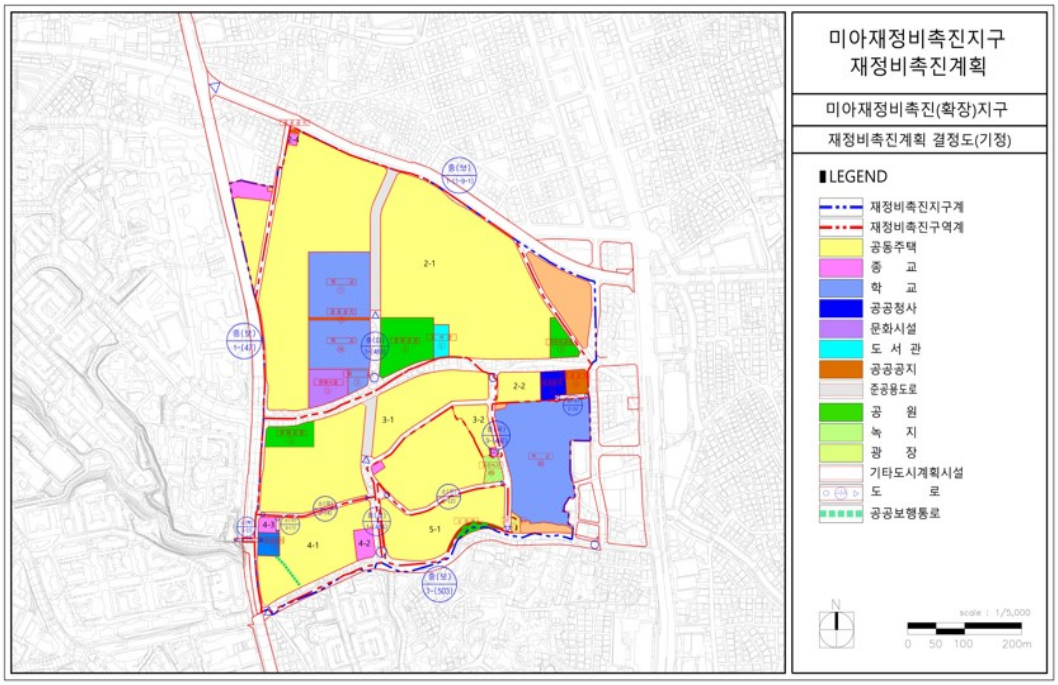


■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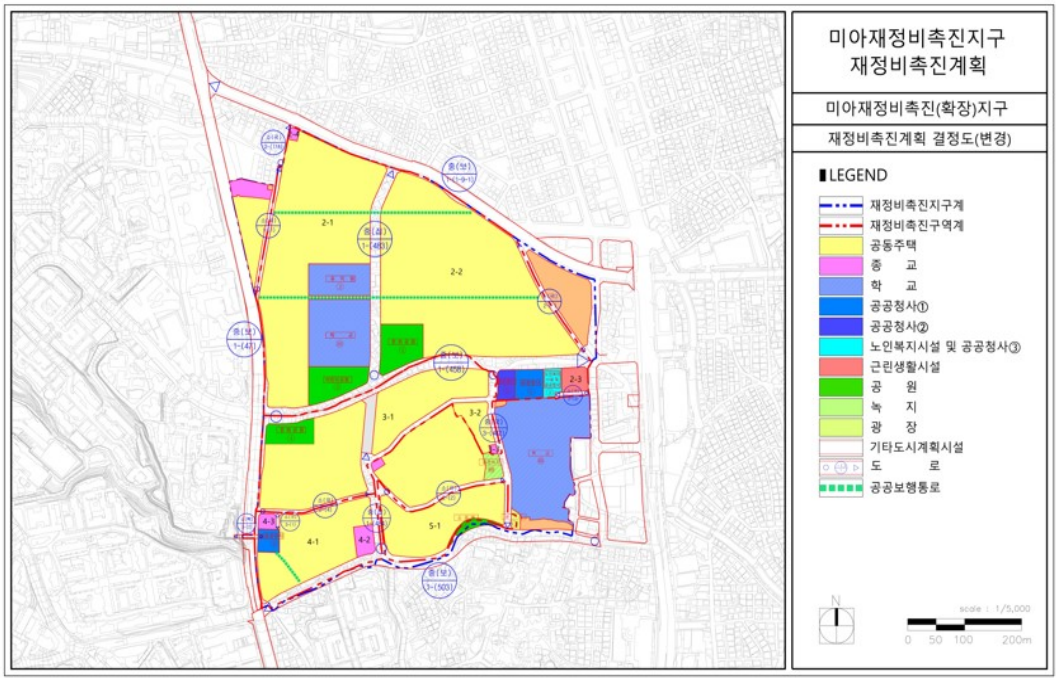

■ (별첨) 교통계획 : 차량 출입구 변경

| | |
|---|---|
| 기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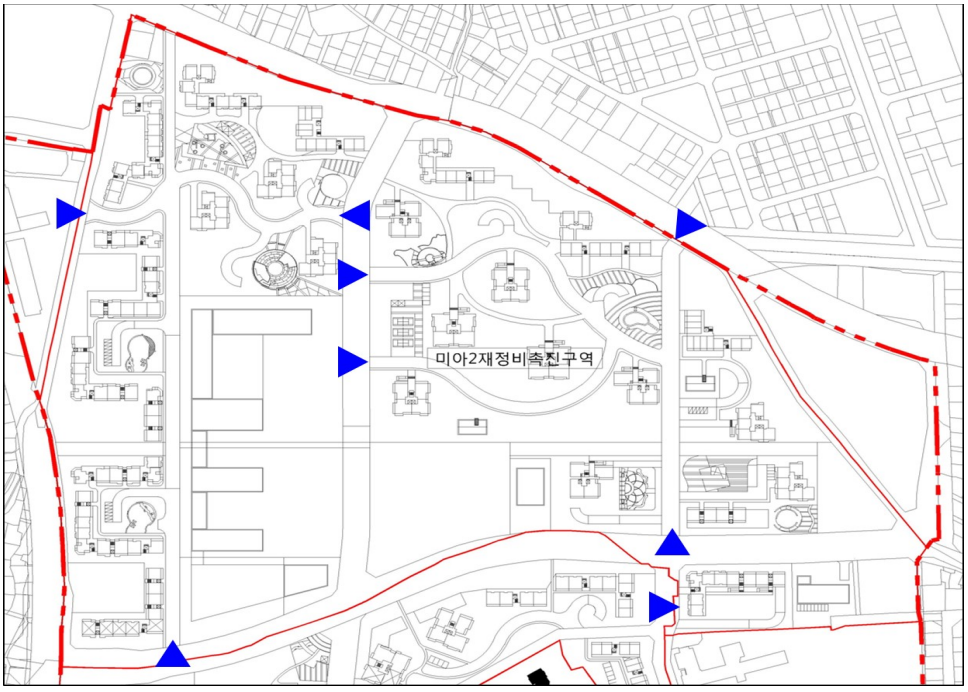 |
|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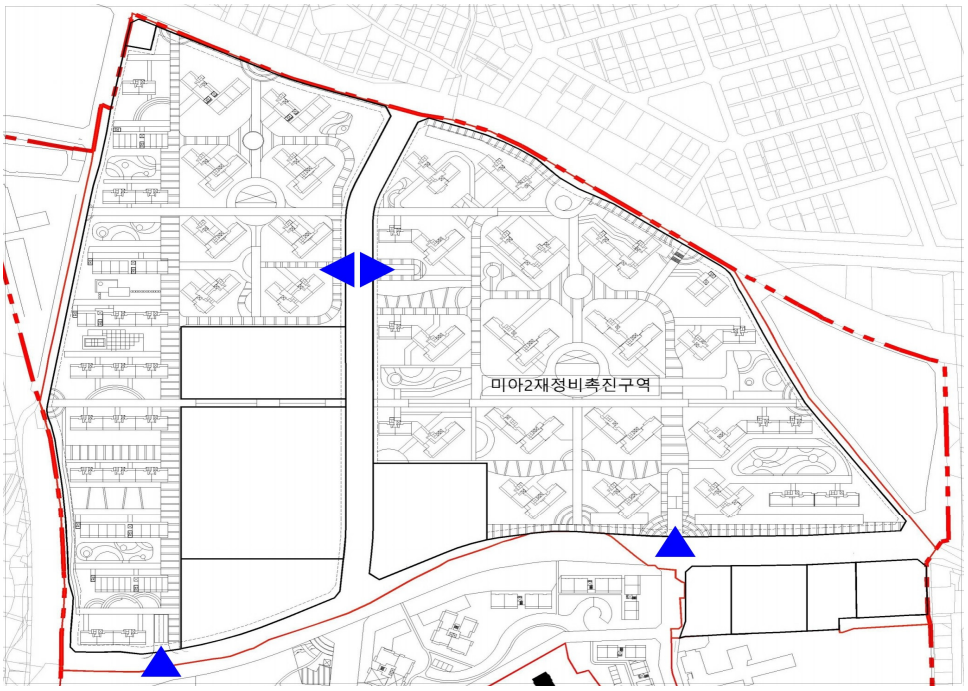 |

■ (별첨) 경관 : 스카이라인 계획 변경

| | |
|---|---|
| 기정 | ■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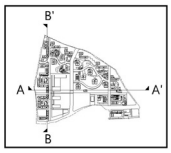 <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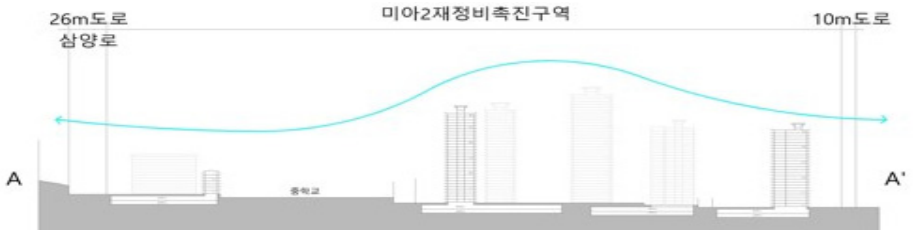 <br>〈A – A' 측 스카이라인〉<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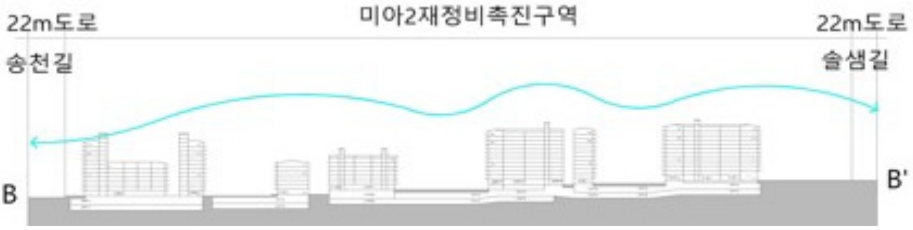 <br>〈B – B' 측 스카이라인〉 |
| 변경 | ■ KEY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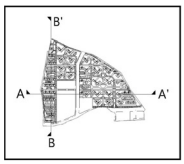 <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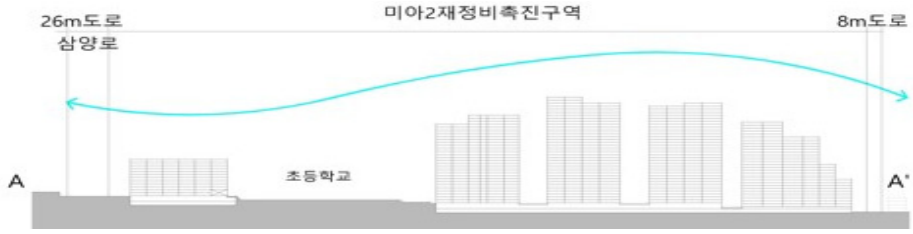 <br>〈A – A' 측 스카이라인〉<b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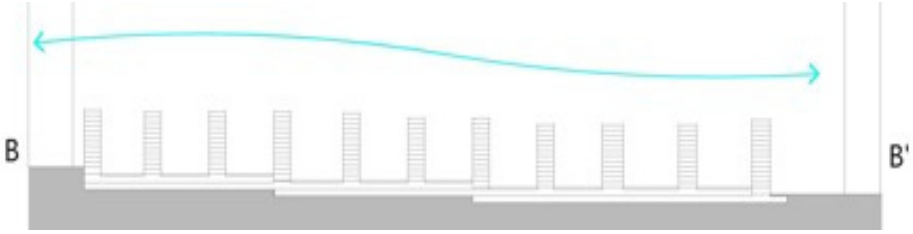 <br>〈B – B' 측 스카이라인〉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51호

## 은평구 대조동 2-9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90호(2019. 8. 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18호(2020. 5. 28.)로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된 은평구 대조동 2-9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및 제28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2. 촉진지구의 지정일 : 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 : 변경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 변경없음

| 시행자의 성명 | 대표자 | 주소 | 법인번호 |
|---|---|---|---|
| 대조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김수민 | 서울특별시 서초중앙로20길 24, 2층(서초동) | 110111-7173612 |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

| 연번 | 소재지 | | | 지목 | 편입면적(㎡) | 소유자 | | | 관계인 | | |
|---|---|---|---|---|---|---|---|---|---|---|---|
| | 행정동 | 지번 | | | | 성명 | 주소 | 지분 | 성명 | 주소 |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
| | | 본번 | 부번 | | | | | | | | |
| 1 | 불광동 | 산84 | 16 | 임 | 5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5 | | | |
| 2 | 불광동 | 산84 | 17 | 임 | 5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5 | | | |
| 3 | 대조동 | 2 | 9 | 대 | 2,373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2,373 | | | |
| 4 | 대조동 | 2 | 10 | 전 | 3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3 | | | |
| 5 | 대조동 | 2 | 14 | 도 | 33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33 | | | |
| 6 | 대조동 | 2 | 15 | 도 | 3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3 | | | |
| 7 | 대조동 | 2 | 18 | 전 | 10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10 | | | |
| 8 | 대조동 | 2 | 19 | 전 | 26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26 | | | |
| 9 | 대조동 | 2 | 27 | 전 | 66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66 | | | |
| 10 | 대조동 | 2 | 28 | 전 | 139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139 | | | |
| 11 | 대조동 | 2 | 29 | 대 | 450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450 | | | |
| 12 | 대조동 | 2 | 30 | 대 | 215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215 | | | |
| 13 | 대조동 | 2 | 31 | 대 | 188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188 | | | |
| 14 | 대조동 | 2 | 32 | 대 | 202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202 | | | |

| | | | | | | | | | | | | |
|---|---|---|---|---|---|---|---|---|---|---|---|---|
| 15 | 대조동 | 2 | 33 | 대 | 172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172 | | | |
| 16 | 대조동 | 2 | 34 | 대 | 188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188 | | | |
| 17 | 대조동 | 2 | 35 | 대 | 169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169 | | | |
| 18 | 대조동 | 2 | 36 | 대 | 136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136 | | | |
| 19 | 대조동 | 2 | 37 | 대 | 205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205 | | | |
| 20 | 대조동 | 2 | 38 | 대 | 172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172 | | | |
| 21 | 대조동 | 2 | 39 | 대 | 172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172 | | | |
| 22 | 대조동 | 2 | 40 | 대 | 195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195 | | | |
| 23 | 대조동 | 2 | 41 | 대 | 198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198 | | | |
| 24 | 대조동 | 2 | 42 | 대 | 136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136 | | | |
| 25 | 대조동 | 2 | 43 | 도 | 138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138 | | | |
| 26 | 대조동 | 2 | 44 | 도 | 297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297 | | | |
| 27 | 대조동 | 2 | 45 | 대 | 245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245 | | | |
| 28 | 대조동 | 2 | 46 | 대 | 198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198 | | | |
| 29 | 대조동 | 2 | 47 | 대 | 208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208 | | | |
| 30 | 대조동 | 2 | 48 | 대 | 10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10 | | | |
| 31 | 대조동 | 2 | 49 | 대 | 264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264 | | | |
| 32 | 대조동 | 2 | 51 | 대 | 116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116 | | | |
| 33 | 대조동 | 2 | 52 | 대 | 883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883 | | | |
| 34 | 대조동 | 2 | 53 | 도 | 43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43 | | | |
| 35 | 대조동 | 2 | 55 | 대 | 7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7 | | | |
| 36 | 대조동 | 2 | 58 | 대 | 27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27 | | | |
| 37 | 대조동 | 2 | 61 | 도 | 338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338 | | | |
| 38 | 기정 | 대조동 | 2 | 64 | 도 | 128 | 서울특별시 | | 128 | | | |
| | 변경 | | | | |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 | | |
| 39 | 기정 | 대조동 | 2 | 65 | 도 | 298 | 서울특별시 관리청 은평구 | | 298 | | | |
| | 변경 | | | | |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 | | |
| 계 | | | | | | 8,661 | - | | | | | |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변경없음

| 시행자의 성명 | 대표자 | 주소 | 법인번호 |
|---|---|---|---|
| 대조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김수민 | 서울특별시 서초중앙로20길 24, 2층(서초동) | 110111-7173612 |

3. 사업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변경없음

4.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5. 인구·주택수용계획

1) 수용인구: 1,870명

2) 주택건설계획: 977세대 (SH공사의 선매입 추가)

[기정] 세대수 및 수용인구

| 구분 | 세대수 및 수용인구 | | | | | 비고 |
|---|---|---|---|---|---|---|
| | 주거형 | 세대수(세대) | 비율(%) | 수용인구(인) | 비율(%) | |
| 공공임대주택 | 17 TYPE | 5 | 0.51 | 5 | 0.27 | |
| | 20 TYPE | 5 | 0.51 | 5 | 0.27 | |
| | 21 TYPE | 76 | 7.78 | 76 | 4.06 | |
| | 24 TYPE | 9 | 0.94 | 9 | 0.48 | |
| | 소계 | 95 | 9.74 | 95 | 5.08 | |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17 TYPE | 16 | 1.64 | 16 | 0.86 | |
| | 20 TYPE | 18 | 1.84 | 18 | 0.96 | |
| | 21 TYPE | 272 | 27.84 | 272 | 14.54 | |
| | 24 TYPE | 36 | 3.68 | 36 | 1.93 | |
| | 36 TYPE | 95 | 9.72 | 252 | 13.48 | |
| | 36A TYPE | 180 | 18.42 | 477 | 25.5 | |
| | 36B TYPE | 121 | 12.38 | 321 | 17.17 | |
| | 38 TYPE | 71 | 7.27 | 189 | 10.11 | |
| | 48 TYPE | 73 | 7.47 | 194 | 10.37 | |
| | 소계 | 882 | 90.26 | 1,775 | 94.92 | |
| 합계 | | 977 | 100.00 | 1,870 | 100.00 | - |

[변경] 세대수 및 수용인구

| 구분 | 세대수 및 수용인구 | | | | | 비고 |
|---|---|---|---|---|---|---|
| | 주거형 | 세대수(세대) | 비율(%) | 수용인구(인) | 비율(%) | |
| 공공임대주택 | 17 TYPE | 5 | 0.51 | 5 | 0.27 | |
| | 20 TYPE | 5 | 0.51 | 5 | 0.27 | |
| | 21 TYPE | 76 | 7.78 | 76 | 4.06 | |
| | 24 TYPE | 9 | 0.94 | 9 | 0.48 | |
| | 소계 | 95 | 9.74 | 95 | 5.08 | |
| 공공임대주택 (SH공사선매입) | 36A TYPE | 131 | 13.42 | 347 | 18.59 | |
| | 36B TYPE | 121 | 12.38 | 321 | 17.16 | |
| | 소계 | 252 | 25.80 | 668 | 35.75 | |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 17 TYPE | 16 | 1.64 | 16 | 0.86 | |
| | 20 TYPE | 18 | 1.84 | 18 | 0.96 | |
| | 21 TYPE | 272 | 27.84 | 272 | 14.54 | |
| | 24 TYPE | 36 | 3.68 | 36 | 1.93 | |
| | 36 TYPE | 95 | 9.72 | 252 | 13.48 | |
| | 36A TYPE | 49 | 5.02 | 130 | 6.95 | |
| | 38 TYPE | 71 | 7.27 | 189 | 10.11 | |
| | 48 TYPE | 73 | 7.47 | 194 | 10.37 | |
| | 소계 | 630 | 64.48 | 1,107 | 59.17 | |
| 합계 | | 977 | 100.00 | 1,870 | 100.00 | - |

※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대상을 고려하여 가구당 인구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 을 적용

6. 교통・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 : 변경없음
7. 환경보전 및 탄소저감 등 환경계획 : 변경없음
8. 그 밖에 지구단위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변경없음
9.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 변경없음

[붙임]

1. 도시·군관리계획 : 변경없음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해당없음
3. 방재계획 : 변경없음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

| 연번 | 소재지 | | | 지목 | 편입면적(㎡) | 소유자 | | | 관계인 | | |
|---|---|---|---|---|---|---|---|---|---|---|---|
| | 행정동 | 지번 | | | | 성명 | 주소 | 지분 | 성명 | 주소 |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
| | | 본번 | 부번 | | | | | | | | |
| 1 | 불광동 | 산84 | 16 | 임 | 5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5 | | | |
| 2 | 불광동 | 산84 | 17 | 임 | 5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5 | | | |
| 3 | 대조동 | 2 | 9 | 대 | 2,373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2,373 | | | |
| 4 | 대조동 | 2 | 10 | 전 | 3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3 | | | |
| 5 | 대조동 | 2 | 14 | 도 | 33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33 | | | |
| 6 | 대조동 | 2 | 15 | 도 | 3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3 | | | |
| 7 | 대조동 | 2 | 18 | 전 | 10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10 | | | |
| 8 | 대조동 | 2 | 19 | 전 | 26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26 | | | |
| 9 | 대조동 | 2 | 27 | 전 | 66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66 | | | |
| 10 | 대조동 | 2 | 28 | 전 | 139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139 | | | |
| 11 | 대조동 | 2 | 29 | 대 | 450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450 | | | |
| 12 | 대조동 | 2 | 30 | 대 | 215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215 | | | |
| 13 | 대조동 | 2 | 31 | 대 | 188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188 | | | |
| 14 | 대조동 | 2 | 32 | 대 | 202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202 | | | |
| 15 | 대조동 | 2 | 33 | 대 | 172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172 | | | |
| 16 | 대조동 | 2 | 34 | 대 | 188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188 | | | |
| 17 | 대조동 | 2 | 35 | 대 | 169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169 | | | |
| 18 | 대조동 | 2 | 36 | 대 | 136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136 | | | |
| 19 | 대조동 | 2 | 37 | 대 | 205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205 | | | |
| 20 | 대조동 | 2 | 38 | 대 | 172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172 | | | |
| 21 | 대조동 | 2 | 39 | 대 | 172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172 | | | |
| 22 | 대조동 | 2 | 40 | 대 | 195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195 | | | |
| 23 | 대조동 | 2 | 41 | 대 | 198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198 | | | |
| 24 | 대조동 | 2 | 42 | 대 | 136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136 | | | |
| 25 | 대조동 | 2 | 43 | 도 | 138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138 | | | |
| 26 | 대조동 | 2 | 44 | 도 | 297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297 | | | |
| 27 | 대조동 | 2 | 45 | 대 | 245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245 | | | |
| 28 | 대조동 | 2 | 46 | 대 | 198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198 | | | |
| 29 | 대조동 | 2 | 47 | 대 | 208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208 | | | |
| 30 | 대조동 | 2 | 48 | 대 | 10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10 | | | |
| 31 | 대조동 | 2 | 49 | 대 | 264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264 | | | |
| 32 | 대조동 | 2 | 51 | 대 | 116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116 | | | |
| 33 | 대조동 | 2 | 52 | 대 | 883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883 | | | |
| 34 | 대조동 | 2 | 53 | 도 | 43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43 | | | |
| 35 | 대조동 | 2 | 55 | 대 | 7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7 | | | |
| 36 | 대조동 | 2 | 58 | 대 | 27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27 | | | |
| 37 | 대조동 | 2 | 61 | 도 | 338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338 | | | |
| 38 | 기정 / 변경 대조동 | 2 | 64 | 도 | 128 | 서울특별시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128 | | | |
| 39 | 기정 / 변경 대조동 | 2 | 65 | 도 | 298 | 서울특별시 관리청 은평구 /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앤지타워) | 298 | | | |
| 계 | | | | | 8,661 | - | | | | | |

5.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6. 공사의 감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7.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52호

##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91호(2019. 8. 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19호(2020. 5. 28.)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은평구 대조동 2-9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의 종류: 주택건설사업
2. 사업의 명칭: 은평구 대조동 2-9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축공사
3. 사업주체의 명칭 및 주소 :

| 시행자의 성명 | 대표자 | 주소 |
|---|---|---|
| 대조피에프브이 주식회사 | 김수민 | 서울특별시 서초중앙로20길 24, 2층(서초동) |
| (주)호반건설 | 송종민 |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오성로 537 |

4. 사업의 시행기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 ~ 2022년
5. 사업개요
   가.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2-9번지 일원
   나. 대지면적: 8,070.00㎡
   다. 건 폐 율: 57.29%(건축면적: 4,623.6787㎡)
   라. 용 적 률: 692.58%(용적률산정용 연면적 55,891.1994㎡)
   마. 용 도:
      당초)공동주택(공공임대 95세대/민간임대 882세대),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변경)공동주택(공공임대 95세대/공공임대주택(SH공사선매입) 252세대 /민간임대 630세대),
         근린생활시설, 공공업무,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바. 규 모: 4개동, 지하6층/지상28층, 연면적 87,070.7230㎡
   사. 의제처리사항: 「건축법」 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등
6. 기타사항
   가.「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사업계획 결정 시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사업계획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군계획시설은 각각 지정·결정 당시로 환원된 것으로 보며, 다만 취소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경우 등 취소 고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56호

## 도시관리계획(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146-92번지 일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에 대하여 2020년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0.6.22.)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강남 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신설 | ① | 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 강남구 도곡동 146-92번지 일대 | - | 증) 58,735.7 | 58,735.7 | -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위 치 | 면 적(㎡) | 변경사유 |
|---|---|---|---|---|
| 신설 | ① | 강남구 도곡동 146-92번지일대 | 58,735.7 | • 노후화된 종합의료시설 확충 및 현대화 등 의료시설 개선과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대응을 위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구 분 | | 면적(㎡) | | | 구성비(%) | 비 고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합 계 | | 58,735.7 | - | 58,735.7 | 100.0 | |
| 주거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4,795.0 | 감)996 | 33,799.0 | 57.5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3,940.7 | 증)996 | 24,936.7 | 42.5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 위치 | 용도지역 | | 면적(㎡) | 변경사유 |
|---|---|---|---|---|
| | 기정 | 변경 | | |
| 산 6-40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996.0 | • 편입부지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종합의료시설 입지기준 충족 및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

2.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

가. 공간시설

(1)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

|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기정 | ① | 도곡 근린공원 | 근린 공원 | 도곡동 29 일대 | 255,648 (33,799㎡) | - | 255,648 (33,799㎡) | 1971.8.6. (건고 제465호) |

※ ( )는 구역 내 포함 면적

나. 보건위생시설

(1) 종합의료시설

□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조서

| 구 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① | 종합 의료시설 | 도곡동 146-92 일대 | 22,121.0 | 증)2,815.7 | 24,936.7 | 1976.06.21. (서울특별시고시 제1976-136호) | 강남 세브란스 병원 |

□ 종합의료시설 결정(변경)사유서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① | 종합 의료 시설 | • 종합의료시설 면적 확대(2 ,815.7㎡)<br>- 145-54일대 : 증)898.7㎡<br>(도곡동 145-54외 3필지)<br>- 산6-40 : 증)1,917.0㎡ | • 종합의료시설의 시설 현대화를 통한 공공의료복리 증진을 위해 동측 유휴토지 및 서측 장기미집행 도로용지를 종합의료시설로 변경결정 |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가.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결정조서

(1) 건폐율계획

□ 건폐율계획 결정조서

| 구 분 | 건폐율 | 비 고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에 따름 |

(2) 용적률계획

□ 용적률계획 결정조서

| 구 분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 비 고 |
|---|---|---|---|---|
| 제1종일반주거지역<br>→제3종일반주거지역 | 150% 이하 | 150% 이하 | 250% 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 이하 | 250% 이하 | 480% 이하 | |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기준

|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기준 | 비고 |
|---|---|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 (1 + 1.3 × 가중치 × α )<br>※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해당 용적률<br>※ α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에 대한 공공시설부지 제공 면적의 비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

※ 공공기여 계획

□ 공공시설(공원) 제공

| 구분 | 공공시설(공원) 제공 | 비고 |
|---|---|---|
| 용적률완화 | 28,749㎡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8,238.㎡<br>제1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 511㎡ |
| 용도지역 상향 | 199㎡ | 제1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 996㎡<br>- 공공기여율 : 20% (3단계 상향) |
| 잔여공원 추가 공공기여 | 4,851㎡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잔여공원 추가 공공기여 |
| 합계 | 33,799㎡ | - |

나. 건축물 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물 높이계획

| 구 분 | 최고높이 | 비 고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80m 이하 |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

다.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건축선계획 결정조서

| 구 분 | 적용 위치 | 계획 내용 | 비고 |
|---|---|---|---|
| 건축 한계선 | 언주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후퇴 |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차도부속형 또는 보도부속형으로 조성 |
| | 언주로57길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상 후퇴 | - |
| | 공공보행통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4m 이상 후퇴 | - |
| | 도곡근린공원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후퇴 | - |

2.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 내 통로 등에 관한 결정

(1)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결정

□ 공공보행통로 결정조서

| 구 분 | 적용 위치 | 계획내용 | 비고 |
|---|---|---|---|
| 공공보행통로 | 산6-40 | • 폭 4m 이상으로 조성하며 일반이 이용 가능하도록 24시간 개방<br>• 비상차량의 도곡중학교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성 | 도면표기 |

(2)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

□ 교통처리계획 결정조서

| 구 분 | 적용 위치 | 계획내용 | 비고 |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언주로57길변 | • 병원으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해당 구간 내 차량출입불허 (비상차량 제외) | 도면표기 |

2. 관련 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4. 관련서류 열람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02-2133-8411) 및 강남구 도시계획과(☎02-3423-6103)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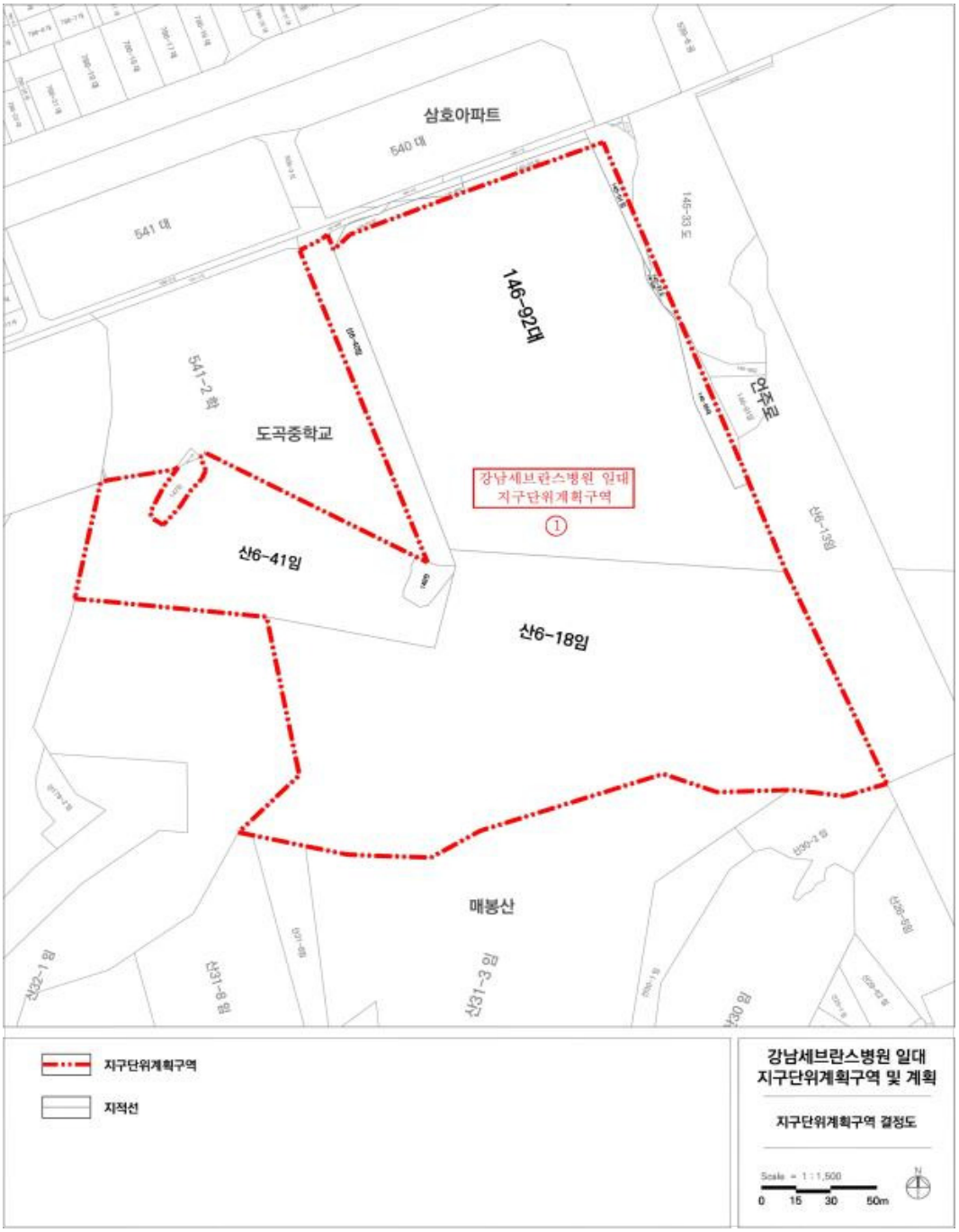

□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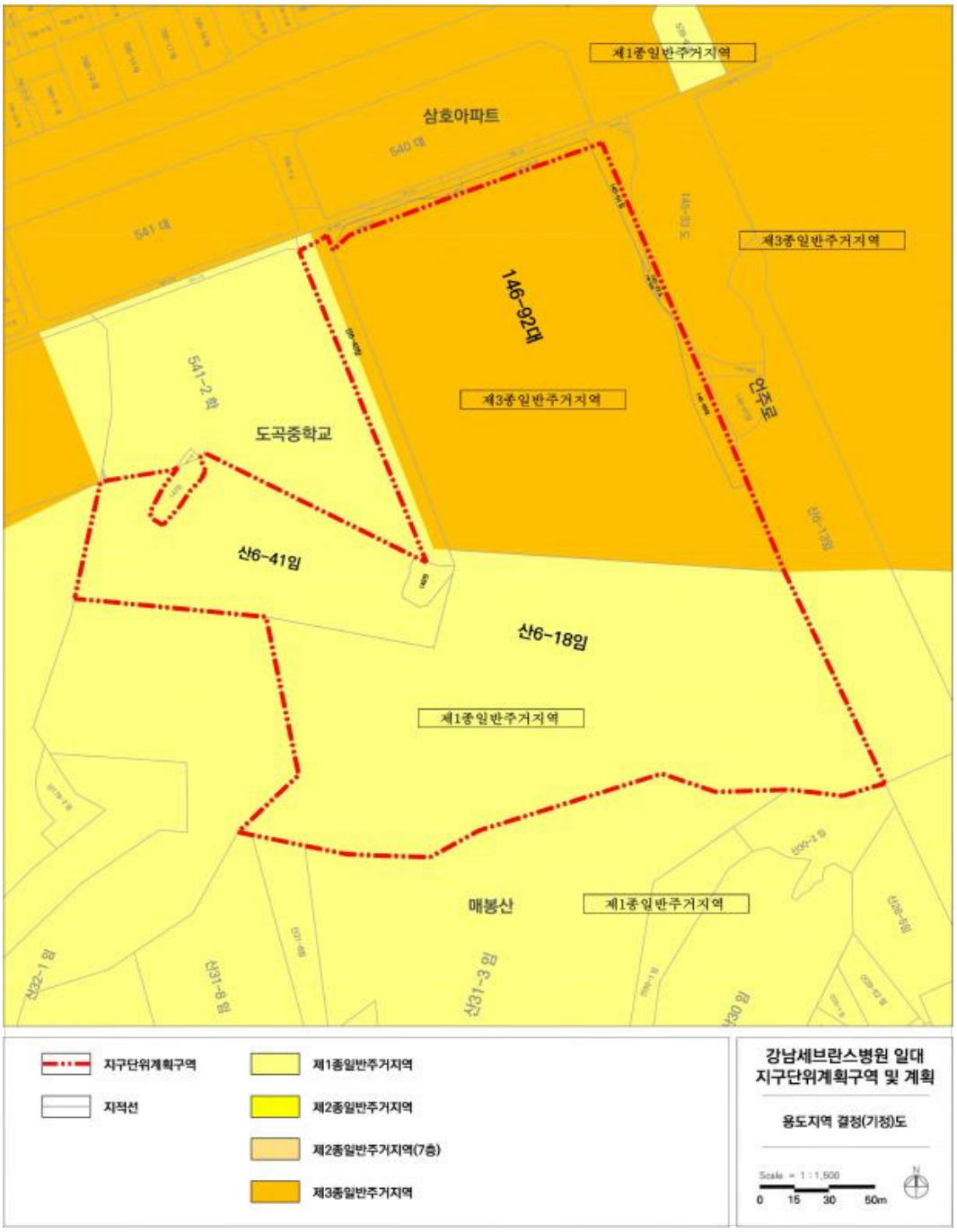
제1종일반주거지역
삼호아파트
540 대
541 대
146-93 도
제3종일반주거지역
146-92대
541-2 학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곡중학교
언주로
산6-41임
산6-18임
제1종일반주거지역
매봉산
제1종일반주거지역
산32-1 임
산31-8 임
산31-3 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적선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3종일반주거지역
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Scale = 1 : 1,500
0 15 30 50m
N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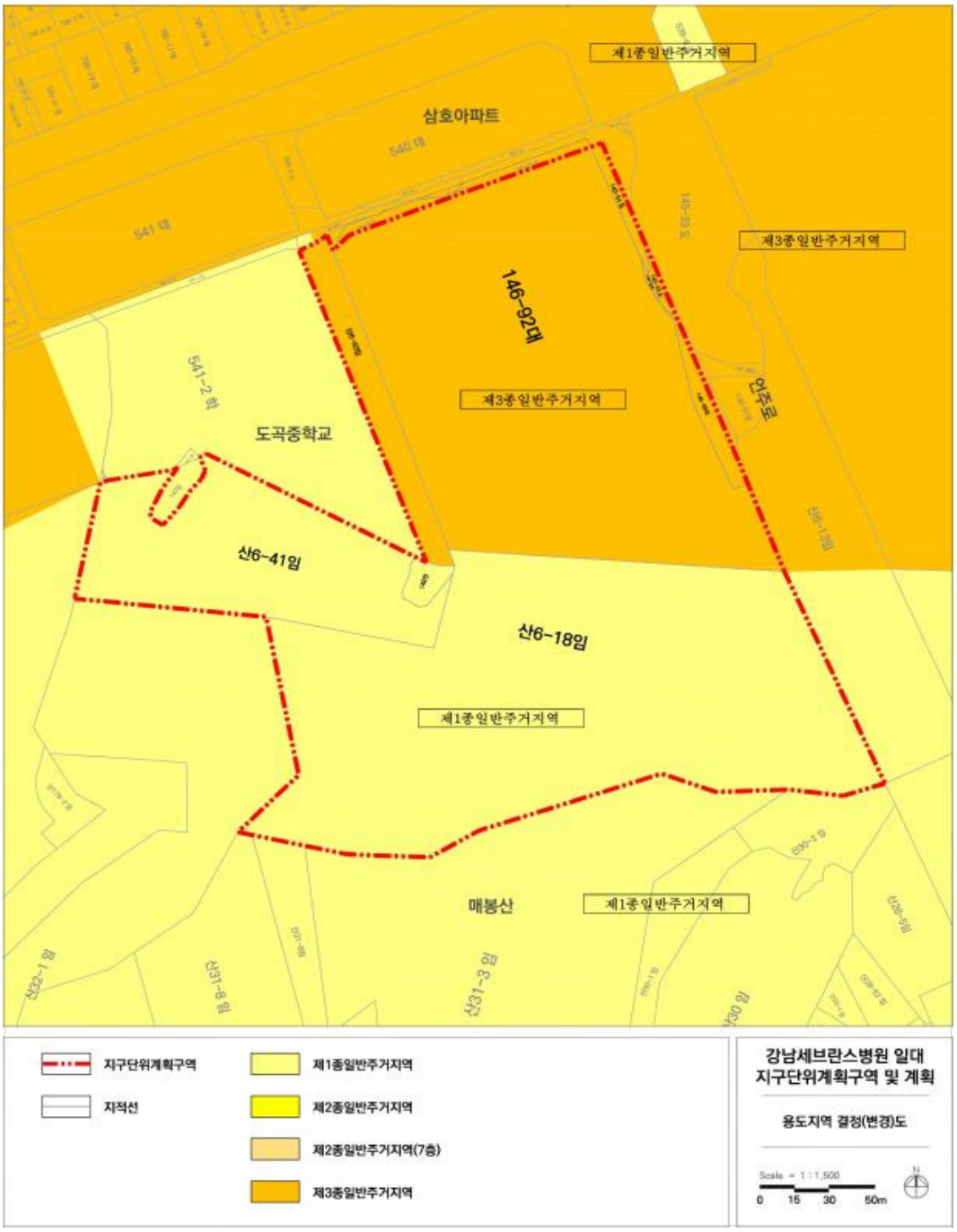
제1종일반주거지역
삼호아파트
540 대
541 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146-92대
541-2 학
제3종일반주거지역
도곡중학교
언주로
산6-41임
산6-18임
제1종일반주거지역
매봉산
제1종일반주거지역
산32-1 임
산31-8 임
산31-3 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적선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3종일반주거지역
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Scale = 1 : 1,500
0 15 30 50m
N

□ 기반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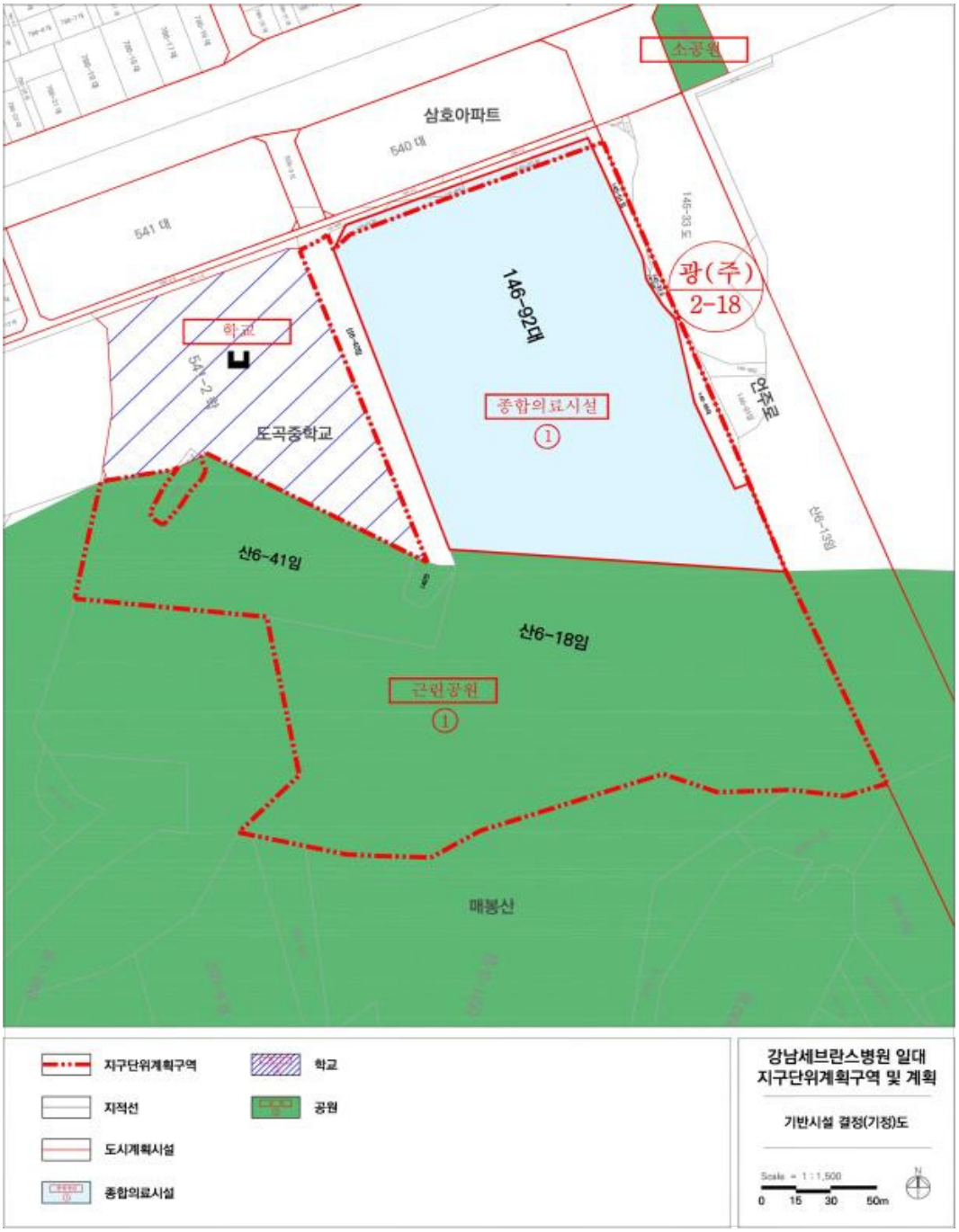
소공원
삼호아파트
640 대
541 대
146-92대
광(주)
2-18
학교
54-2 대
종합의료시설
①
도곡중학교
언주로
산6-41임
산6-18임
근린공원
①
매봉산
자구단위계획구역
지적선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학교
공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기반시설 결정(기정)도
Scale = 1 : 1,500
0 15 30 50m
N

□ 기반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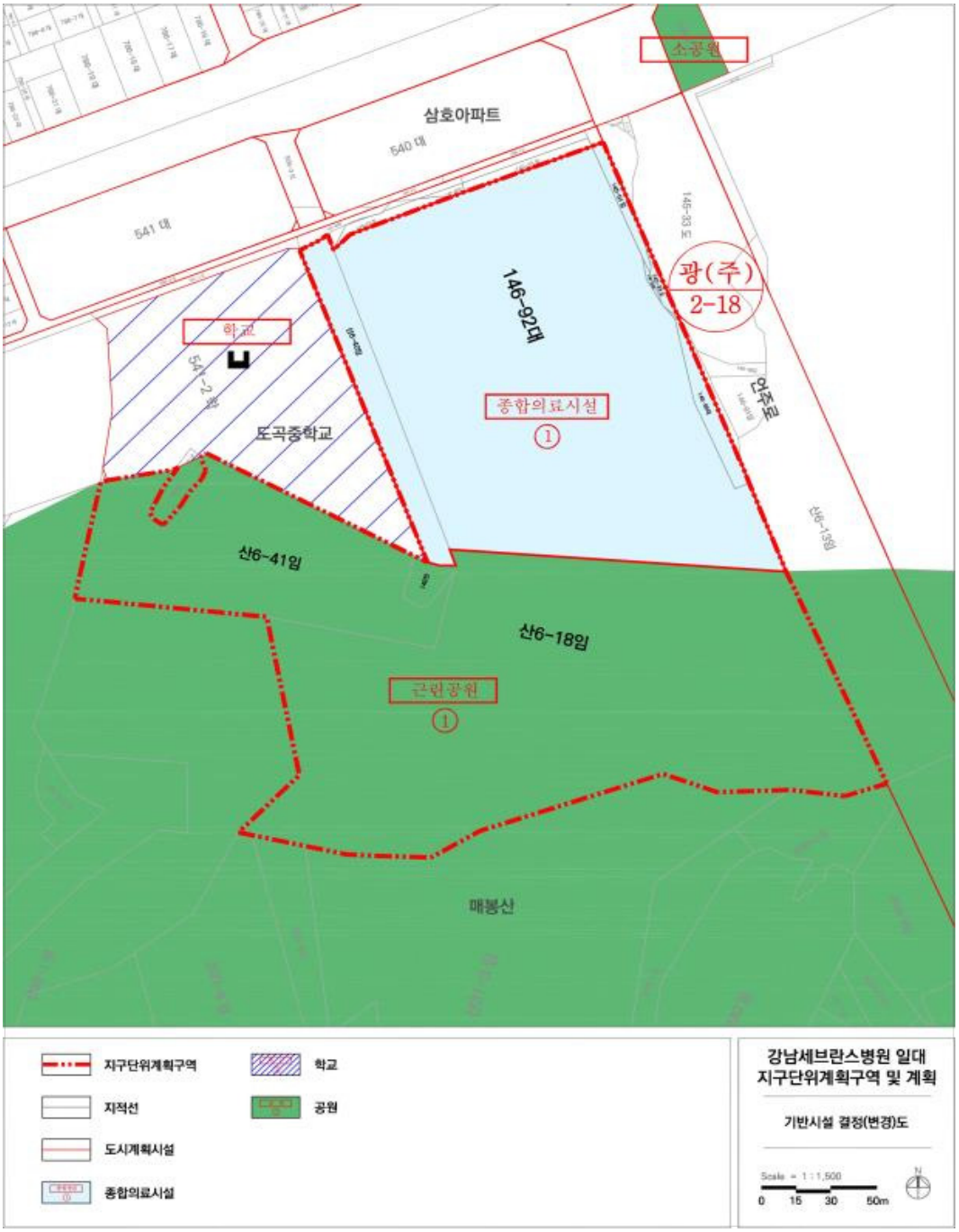
소공원
삼호아파트
640 대
541 대
146-33 도
광(주)
2-18
146-92대
학교
54-2 공
종합의료시설
①
도곡중학교
연주로
산6-13임
산6-41임
산6-18임
근린공원
①
매봉산
자구단위계획구역
지적선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학교
공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기반시설 결정(변경)도
Scale = 1 : 1,500
0 15 30 50m
N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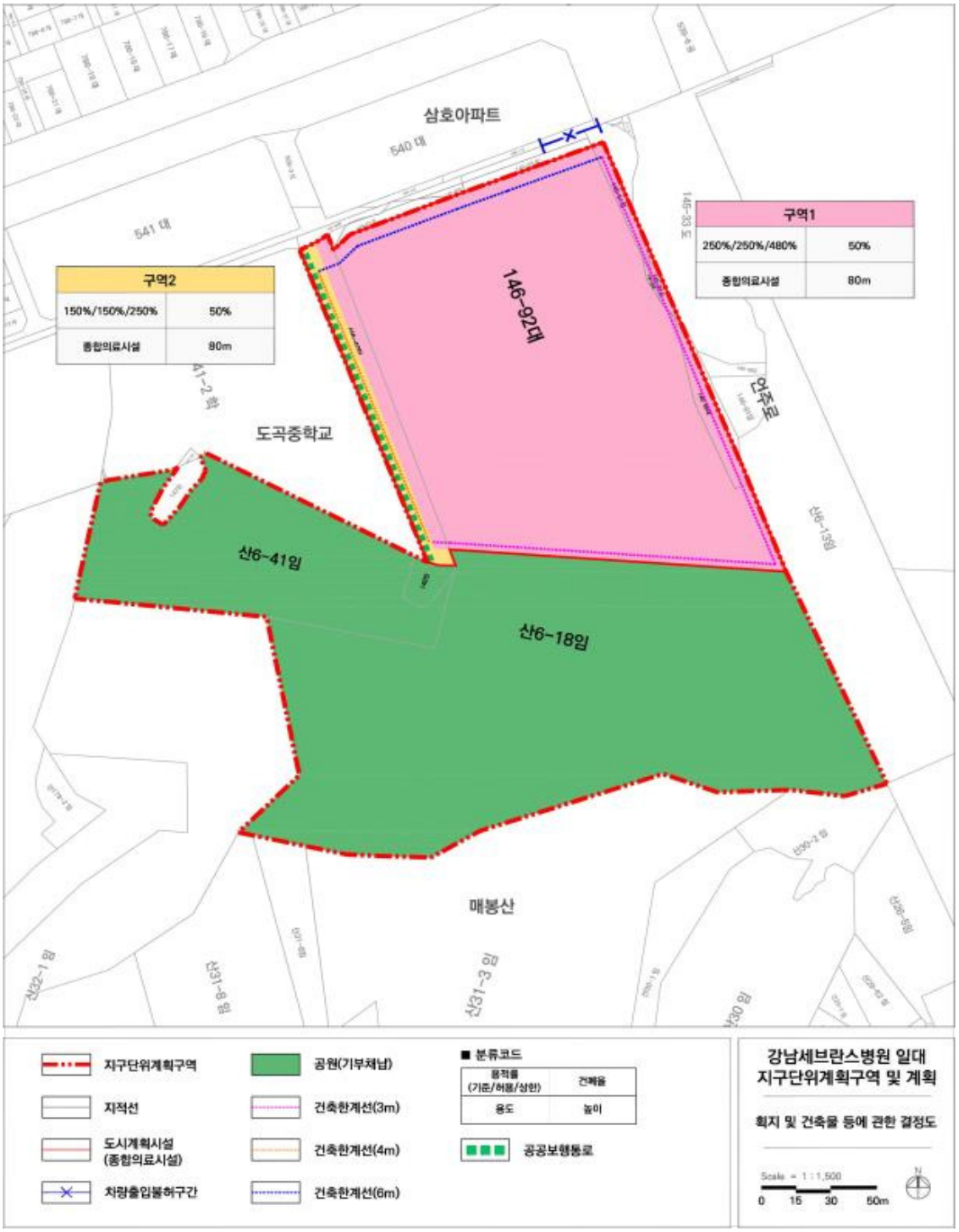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57호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량에 관한 계획으로서 강북 노동자복지관을 이전·설치 하고자, 가압장을 제외한 수도공급설비 일부를 변경(폐지) 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가.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조서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① | 수도공급설비 | 마포구 아현동 711번지 (종전 19-2) | 2,465.5 | 감)1,448.4 | 1,017.1 | 서고274호 (82.07.20) | |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 경 사 유 |
|---|---|---|---|
| ① | 수도공급설비 | ◦ 도시계획시설 일부 폐지 2,465.5㎡→1,017.1㎡ (감 1,448.4㎡) | ◦ 강북 노동자복지관 이전을 위한 수도공급설비 일부 폐지 |

나. 지형도면 : 붙임참조

※ 붙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3.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02)2133-8408), 노동정책담당관(☎02)2133-5428)에 각각 관계 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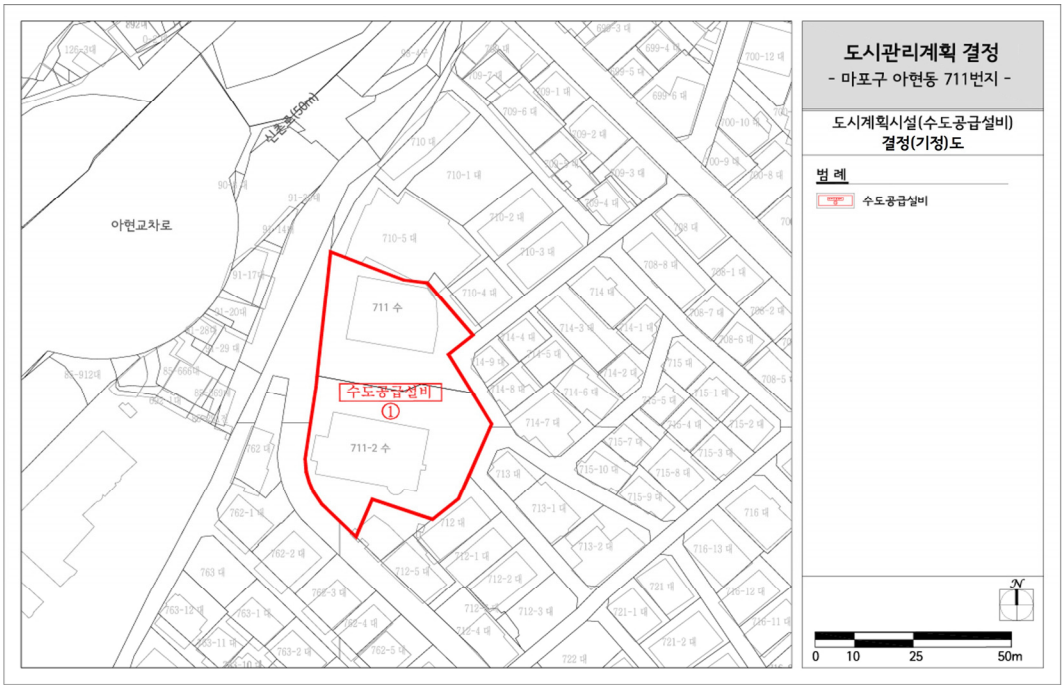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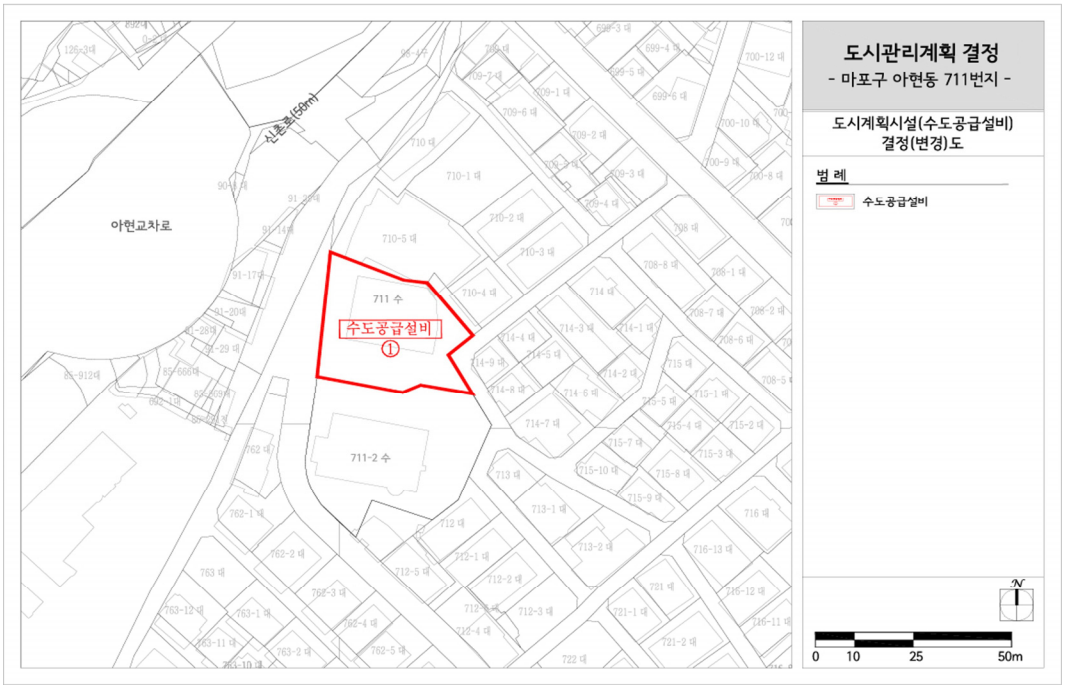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58호

## 도시관리계획(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중구 광희동1가 16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1가 16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0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수권분과위원회(2020. 7. 3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개요 및 결정(변경)취지

- 위 치 : 중구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 면 적 : 510.7㎡
- 결정취지 : 대상지는 지하철 2호선, 4호선 및 5호선 역세권으로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 비고 |
|---|---|---|---|---|---|---|---|
| | | | | 가정 | 변경 | 변경후 | |
| 기정 | ① | 동대문역사문화공원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 중구 을지로6가 18-79 일대 | 669,072 (510.7) | - | 669,072 (510.7) | 서고시 제2015-116호 (2015.4.30) |

※ ( )는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구역 면적임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 구분 | | 면적(㎡) | | | 구성비(%) | 비고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상업 지역 | 일반상업지역 | 669,072 (510.7) | - | 669,072 (510.7) | 100.0 | |

※ ( )는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구역 면적임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최대개발규모 결정조서(변경없음)

| 적용지역 | 최대개발규모 | 최대개발규모 적용예외 | 비고 |
|---|---|---|---|
| 간선가로변 | 3,000㎡ 이하 | · 기존 대지규모가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경우<br>· 특별계획구역 |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한 기존필지 및 기개발지 제외 |
| 이면가로변 | 1,500㎡ 이하 | | |

※ 최대개발규모를 초과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개발할 수 있음

나. 공동개발 결정(변경)조서

| 구분 | | 적용대상 | 계획내용 | 비고 |
|---|---|---|---|---|
| 변경 | 공동개발(지정) | 전지역 | · 맹지, 부정형, 과소필지 중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 결정도 참조 |
| | 공동개발(권장) | | · 맹지, 부정형, 과소필지 중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 결정도 참조 |
| | 자율적 공동개발 | | · 최대개발규모 이내의 범위에서 공동개발 허용 | |

※ 금회 2013년 이후 현황을 반영한 공동개발(지정/권장) 조정, 결정도 참조

■ 가구 및 공동개발

(1) 기정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위치 | | 필지면적(㎡) | 비 고 |
|---|---|---|---|---|---|
| | | 동명 | 지번 | | |
| 2-10 | 7,741.7 | 광희동1가 | 163-2대 | 52.9 | ① 공동개발권장 : 163-1,163-2,163-3 |
| | | | 163-3대 | 66.1 | |
| | | | 163-1대 | 56.2 | |
| | | | 164-4대 | 3.3 | ① 공동개발지정 : 164-4,165-2<br>② 공동개발권장 : 165-2,165-1<br>①,② 공동개발권장 |
| | | | 165-2대 | 59.5 | |
| | | | 165-1대 | 56.2 | |
| | | | 164대 | 383.5 | ① 공동개발지정 : 164-3,179-2<br>② 공동개발권장 : 164,164-3<br>①,② 공동개발권장 |
| | | | 164-3대 | 11.4 | |
| | | | 179-2대 | 51.2 | |
| | | | 166대 | 188.5 | - |
| | | | 168대 | 82.6 | ① 공동개발지정 : 168,170-1<br>② 공동개발권장 : 169,174-2<br>①,② 공동개발권장 |
| | | | 170-1대 | 23.8 | |
| | | | 174-2대 | 13.9 | |
| | | | 169대 | 97.1 | |
| | | | 174대 | 134.5 | - |
| | | | 235-18도 | 10.2 | - |

※ 본 사업대상지에 해당되는 계획만 표기함

(2) 변경

| 가구번호 | 가구면적(㎡) | 위치 | | 필지면적(㎡) | 비 고 |
|---|---|---|---|---|---|
| | | 동명 | 지번 | | |
| 2-10 | 7,741.7 | 광희동1가 | 163-3대 | 66.1 | 공동개발권장 |
| | | | 163-1대 | 56.2 | |
| | | | 164대 | 383.5 | ① 공동개발지정 : 164-3,179-2<br>② 공동개발권장 : 164,164-3<br>①,② 공동개발권장 |
| | | | 164-3대 | 11.4 | |
| | | | 179-2대 | 51.2 | |
| | | | 163-2대 | 52.9 | 공동개발지정<br><br>※ 169에서 169, 169-1, 169-3 으로 분할 ( '20. 2. 24)<br>235-3에서 235-3, 235-30 으로 분할 (' 15. 8. 5) |
| | | | 164-4대 | 3.3 | |
| | | | 165-2대 | 59.5 | |
| | | | 166대 | 188.5 | |
| | | | 168대 | 82.6 | |
| | | | 169대 | 85.8 | |
| | | | 170-1대 | 23.8 | |
| | | | 235-30대 | 14.3 | |
| | | | 174대 | 134.5 | |
| | | | 169-1대 | 1.0 | 공동개발권장 |
| | | | 169-3대 | 10.3 | |
| | | | 174-2대 | 13.9 | |
| | | | 235-18도 | 10.2 | - |

※ 본 사업대상지에 해당되는 계획만 표기함

□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변경내용 | 비고 |
|---|---|---|
| - | ·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 |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광희동1가 166일원에 대하여 공동개발 지정을 계획함<br>· 현재 필지현황(지적 · 지번 · 면적)을 반영하여 공동개발 계획을 변경함 |

2. 건축물에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불허용도 결정(변경)조서

(1) 기정

| 적용지역 | 위치 | 불허용도 | 비고 |
|---|---|---|---|
| A 패션 도·소매 | 전층 |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고시원),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
| B 패션지원 | 전층 |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
| C 도심관광·문화 | 전층 |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
| D 간선변 상업·업무 | 전층 |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
| E 이면부 도심서비스 | 전층 |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

(2) 변경

| 적용지역 | 위치 | 불허용도 | 비고 |
|---|---|---|---|
| A 패션 도·소매 | 전층 |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고시원),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
| B 패션지원 | 전층 |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
| C 도심관광·문화 | 전층 |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
| D 간선변 상업·업무 | 전층 |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
| E 이면부 도심서비스 | 전층 | ·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
| F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 전층 |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및 다중생활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야영장 시설 | ※ 광희동 1가 16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 F(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지역은 기정 상 'E 이면부 도심서비스' 지역임

■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변경내용 | 비고 |
|---|---|---|
| - | · 불허용도 변경 |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불허용도를 변경함<br>· 광희동1가 166 일원에 한함(결정도 참조) |

2) 권장용도 결정조서

| 적용지역 | 위치 | 권장용도 | 비고 |
|---|---|---|---|
| A 패션 도•소매 | 전층 |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체력단련장),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판매시설(제임제공업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
| B 패션지원 | 전층 |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체력단련장, 제조업소),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
| C 도심관광•문화 | 전층 |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체력단련장),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판매시설(제임제공업 제외),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교육연구시설(학원, 직업훈련소),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관광숙박시설 | |
| D 간선변 상업•업무 | 전층 |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체력단련장), 관광숙박시설,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 |
| E 이면부 도심서비스 | 전층 | · 공동주택(전용 60㎡ 미만),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체력단련장, 제조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전시장), 교육연구시설(학원, 직업훈련소),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관광숙박시설 | 중구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해당 |

※ 1) 전체 연면적의 40% 이상 설치시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본다.
2) 면적 산정시 주차장 및 1층 면적은 제외한다.
3) 도시환경정비사업시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적용

3) 1층 권장용도 결정조서

| 적용지역 | 1층 권장용도 | 비고 |
|---|---|---|
| 전지역 | ·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서점), 판매시설(상점),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 |

※ 1)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설치시 권장용도가 준수된 것으로 본다.(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
2) 도시환경정비사업시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적용

4) 전층 지정용도 결정(변경)조서

| 구분 | 적용지역 | 전층 지정용도 |
|---|---|---|
| 기정 | (a) 을지로5가 275-3일대주2)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객실비율 80% 이상) |
| 변경 | (a) 을지로5가 275-3일대주2) |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객실비율 80% 이상) |
| | (b) 광희동1가 166 일원주3) | · 공동주택(주거복합)<br>- 단,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 1) 지정용도의 면적구성은 '전층' 의 경우 당해 용도가 차지하는 바닥면적의 합이 건물전체 바닥면적(주차장 제외)의 70% 이상이어야 함
주2) 을지로5가 275-3일대(을지로5가 84-7, 275-4, 275-3, 275-19, 275-16, 275-10, 160-3, 160-2, 160-1, 141, 139-2, 139-1, 138, 137-2, 136, 136-2, 127-2, 127-1)
주3)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광희동1가 163-2, 164-4, 165-2, 166, 168, 169, 170-1, 235-30)

■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변경내용 | 비고 |
|---|---|---|
| - | · 지정용도 변경<br>- 공동주택(주거복합) |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하여 지정용도를 변경함<br>·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에 한함(결정도 참조) |

나. 건축물의 건폐율 결정조서(변경없음)

1) 건폐율 결정조서

| 구분 | 적용지역 | | 건폐율 | 비고 |
|---|---|---|---|---|
| 기정 | 전지역 | | 60% 이하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반상업지역 기준 적용 |
| | | 학교이적지 | 30% 이하 | |

2) 건폐율의 완화 결정조서

| 적용지역 | | 완화범위 | 완화항목 | 완화내용 | 비 고 |
|---|---|---|---|---|---|
| 청계천변 (평화시장 등) | | 80% 이하 | · 건축물의 높이 30m 이하 적용 | 20% | |
| 구역 전체 | | 80% 이하 | · 역사·문화적자원 보전 시(우수 건축물 등 보전 활용 시) | 20% | |
| | | | · 공공시설부지 등 제공(기부채납)시 | 산식에 따름 | 현황 4m 미만 준용도로에 한하여, 구 심의를 통해 완화여부 결정 |
| | 이면부 간선부 | 80% 이하 70% 이하 | ·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권장용도 도입 시 (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산식에 따라 적용) | 10% | 대지면적 300㎡ 이하에 한하여 5층 이하부분만 완화 |
| | | | ·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지침 권장사항과 옥상녹화 (바닥면적의 50%이상 설치) 모두 준수 시 | 10% | |

| | | | | | |
|---|---|---|---|---|---|
| | | | ·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권장용도 도입 시 (바닥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 제외)(산식에 따라 적용) | 5% | |
| | | | · 건축물 형태 및 외관 지침 권장사항과 옥상녹화 (바닥면적의 50%이상 설치) 모두 준수 시 | 5% | |

※ 1) 권장용도 도입 시 건폐율 완화 산식 = {(권장용도수용 면적비율 - 권장용도 수용기준)x1/2 }x0.6
2) 공공시설 부지 제공(기부채납)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적용(단, 학교 이적지는 제외)
3) 도시환경정비사업시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적용
4) 공공시설부지 등 제공(기부채납)에 따른 산식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적용

## 다. 건축물의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 1)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 구분 | 적용지역 | | 기준용적률 | 허용용적률 | 상한용적률 | 비고 |
|---|---|---|---|---|---|---|
| 기정 | 전지역 | | 500% 이하 | 600% 이하 | 법적 2배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준용 |
| | | 학교이적지 | 400% 이하 | 500% 이하 | 법적 2배이하 | |
| | | 중구 을지로5가 275-3번지 일대 | 500% 이하 | 690% 이하 | 법적 2배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준용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허용용적률 690%이하 적용 |
| 변경 | 전지역 | | 500% 이하 | 600% 이하 | 법적 2배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준용 |
| | | 학교이적지 | 400% 이하 | 500% 이하 | 법적 2배이하 | |
| | | 중구 을지로5가 275-3번지 일대 | 500% 이하 | 690% 이하 | 법적 2배이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준용 관광숙박시설에 한하여 허용용적률 690%이하 적용 |
| | 광희동1가 166 일원주5) | | 기본용적률 : 600% 이하 | | 794% 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결정도 참조) |

※ 1)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7항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용
2) 도시환경정비사업시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적용
3) 을지로5가 275-3일대(을지로5가 84-7, 275-4, 275-3, 275-19, 275-16, 275-10, 160-3, 160-2, 160-1, 141, 139-2, 139-1, 138, 137-2, 136, 136-2, 127-2, 127-1)
4) 광희동 1가 166 일대의 상한용적률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내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적용
주5) 광희동 1가 166 일대(광희동 1가 163-2, 164-4, 165-2, 166, 168, 169, 170-1, 235-30)

■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변경내용 | 비고 |
|---|---|---|
| - | · 기본 / 상한용적률 : 600% 이하 / 794% 이하 |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br>· 광희동1가 166 일원에 한함(결정도 참조) |

### 2) 용적률의 완화 결정(변경)조서

(가) 허용용적률(변경없음)

(나) 기본용적률 적용기준(의무사항)(신설)

| 사업조건 항목 | | 적용기준 | 계획내용 | 완화 내용 | 비 고 |
|---|---|---|---|---|---|
| 공공 기여율 |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 · 기본공공기여율 - 부지면적의 8%이상(39.38㎡) |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 39.38㎡(8.0%)+61.28㎡(완화용적률의 50%) = 100.66㎡(20.45%) | 기본 용적률 600% 부여 | 모든 항목을 충족 하여야 함 |
| 건축물 용도 구분 | 비주거비율 | · 10% 이상 ~ 20% 미만 (가로변 비주거 설치 의무) | · 비주거비율 (용적률기준) : 18.6%(725.41㎡) | | |

| | | | | | |
|---|---|---|---|---|---|
| 주택 건설 비중 | 주택규모 |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br>·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 · 주거 : 비주거 (용적률 기준)<br>– 3,164.6㎡ : 725.41㎡<br>(81.4%) : (18.6%)<br>· 공공임대 : 공공지원민간임대<br>= 21세대(20.59%) : 84세대(79.41%)<br>· 공공임대주택<br>– 전용 15.04㎡, 16.32㎡, 18.81㎡ 계획<br>·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br>– 전용 15.04㎡, 16.32㎡, 18.81㎡ 계획 | | |
| 건축물 형태 |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 다음 2가지 이상 목적으로 이행<br>–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br>–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br>– 에너지 효율 건축물<br>– 친환경 건축물 | · 2가지 이상 목적으로 이행<br>– 에너지 효율 건축물<br>– 친환경 건축물 | | |
| 주민 공동 이용 시설 | 커뮤니티 시설 | ·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50㎡ 이상의 주민커뮤니티시설 설치 | · 지상 5층 : 219.15㎡ 계획 | | |

※ 1) 광희동1가 166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2)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2 준용
3) 비주거비율은 용적률 기준으로 하되, 비주거시설은 지하2층~지상2층에서만 설치하여야 함
4)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함

(다) 상한용적률(변경)

| 구분 | 적용지역 | 완화조건 | 산출방법 |
|---|---|---|---|
| 기정 | 전 지역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 허용용적률x(1+1.3x가중치x$\alpha$) 이내<br>※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br>※ $\alpha$ = 공공시설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 변경 | 전 지역 | 공공시설 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 허용용적률x(1+1.3x가중치x$\alpha$) 이내<br>※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제공부지의 용적률 비율<br>※ $\alpha$ = 공공시설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
| | 광희동1가 166 일원 (역세권청년주택 건립에 한함) |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하는 경우 | 증가되는 용적률의 50%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세대수)을 산출<br>(단, 공공임대주택 공공기여량 산출은 기본용적률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과 별도로 산출함) |

※ 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2 준용

## 라.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 1) 최고높이 결정조서

| 적용지역 | | 최고높이 | 비고 |
|---|---|---|---|
| 장충단로변, 특별계획구역 (미공병단 부지,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 | 90m | |
| 학교이적지 (케레스타) | | 70m | |
| 기타 간선가로변 | | 70m | |
| 이면가로변 | 패션 도·소매 상가 | 50m | |
| | 10m이상 도로변 | 50m | |
| | 6m이상 도로변 | 40m | |
| | 6m미만 도로변 | 30m | |
| | 4m이하 도로변 | 20m | |
| 청계천로 변 (평화·신평화·동평화·청평화) | | 30m | |
| 중구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br>(광희동1가 163-2, 164-4, 165-2, 166, 168, 169, 170-1, 235-30) | | 70m | 중구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 1) 대지내 서로 다른 최고높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대지둘레의 1/8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최고높

이 적용(단,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둘레의 1/8미만 접한 도로에 면한 최고높이를 적용)
2) 문화재 보호구역에 의한 높이제한은 관련규정에 따름
3) 도시환경정비사업시에는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 적용

마. 공공기여계획(신설)

| 구분 | 기본용적률 | 상한용적률 | 기본공공기여율 | 계획내용 | 비고 |
|---|---|---|---|---|---|
| 공공임대주택 | 600% 이하 | 794% 이하 | 부지면적의 8% 이상 : 39.38㎡ | 총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20.45% (100.66㎡) | · 중구 광희동1가 166번지 일원 역세권 청년주택에 한함 |

※ 1) 공공기여율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3-2-2 준용
2) 공공임대주택은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설치 제공함
3)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면적은 기본용적률 및 상한용적률 완화를 위한 공공기여율을 합산함
4) 공공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축비는 시장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고, 부속토지는 사업시행자가 시장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함

■ 결정(신설)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변경내용 | 비고 |
|---|---|---|
| - | · 공공기여계획 신설<br>- 기부채납 : 공공임대주택 토지지분 |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을 준용하여 공공기여계획 수립 |

3.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에 관한 결정조서(변경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가.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구 분 |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기정 | · 간선도로(장충단로, 동호로, 다산로, 을지로, 퇴계로, 청계천로)에서 대지로의 차량출입 금지<br>- 동호로 일부구간(을지로5가 275-3)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br>· 이면도로의 가각부는 당해 도로의 폭원만큼 차량출입 금지 | 대지 내로 차량출입이 금지되는 경우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 |
| | 변경 | · 간선도로(장충단로, 동호로, 다산로, 을지로, 퇴계로, 청계천로)에서 대지로의 차량출입 금지<br>- 동호로 일부구간(을지로5가 275-3) 차량출입불허구간 변경<br>· 이면도로의 가각부는 당해 도로의 폭원만큼 차량출입 금지<br>· 광희동1가 166 일원 : 진입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대지 내로 차량출입이 금지되는 경우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br>* 광희동 1가 166일원 결정도 참조 |
| 대형버스 주정차공간 확보 | 기정 | · 『관광숙박시설 건립시 대형승합자동차(버스) 주정차공간 확보 유도기준』에 따라 주정차공간을 확보 | |

■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변경내용 | 비고 |
|---|---|---|
| - |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br>- 광희동 1가 166 일원 진입로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상 차량출입불허구간을 지정하고자 함 |

Ⅲ. 관계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고

Ⅴ. 관계서류 열람방법
- 관계서류는 서울시청 주택공급과(☎02-2133-6294)와 중구청 도시계획과(☎02-3396-5776)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Ⅵ.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청년주택 건립계획 및 임대료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표준 협약서”는 건축허가 전에 서울특별시장과 사업시행자간 협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허가권자(구청장)는 이를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하여야 함

※ 첨부 : 결정도면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변경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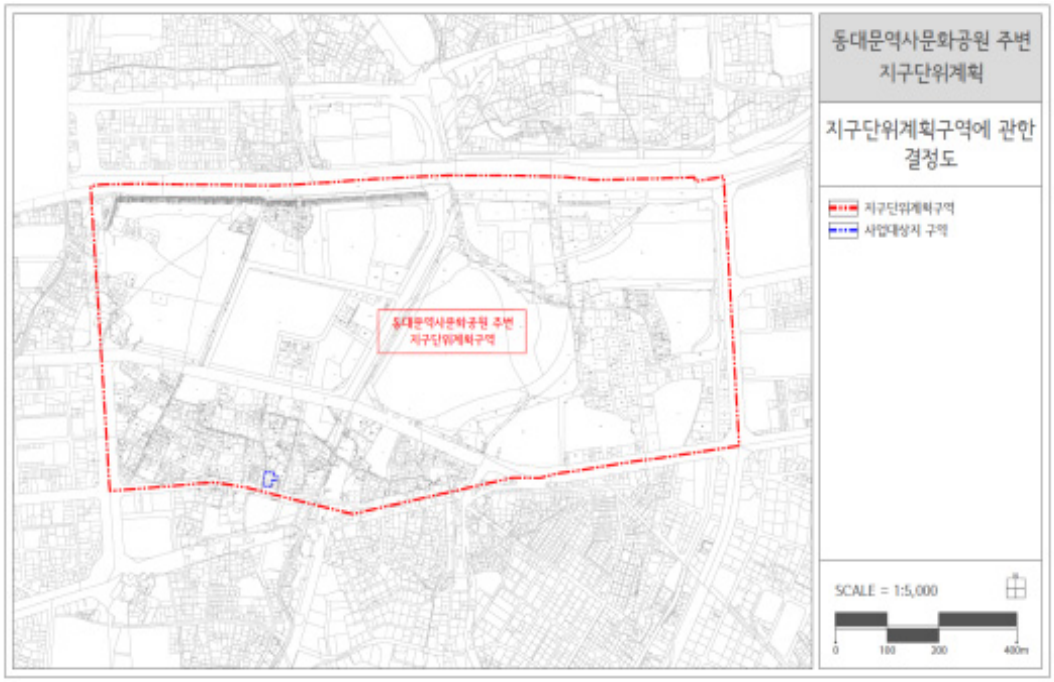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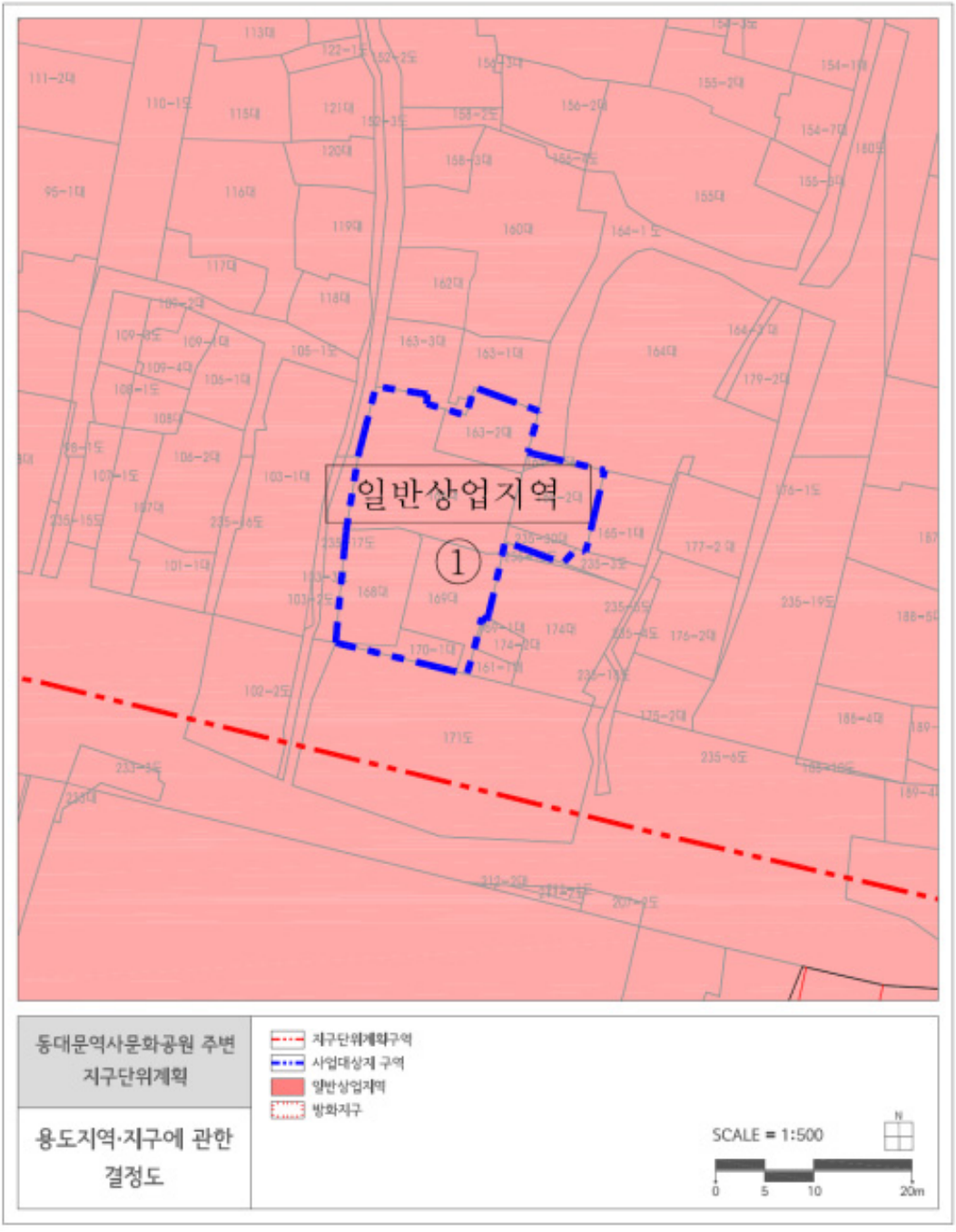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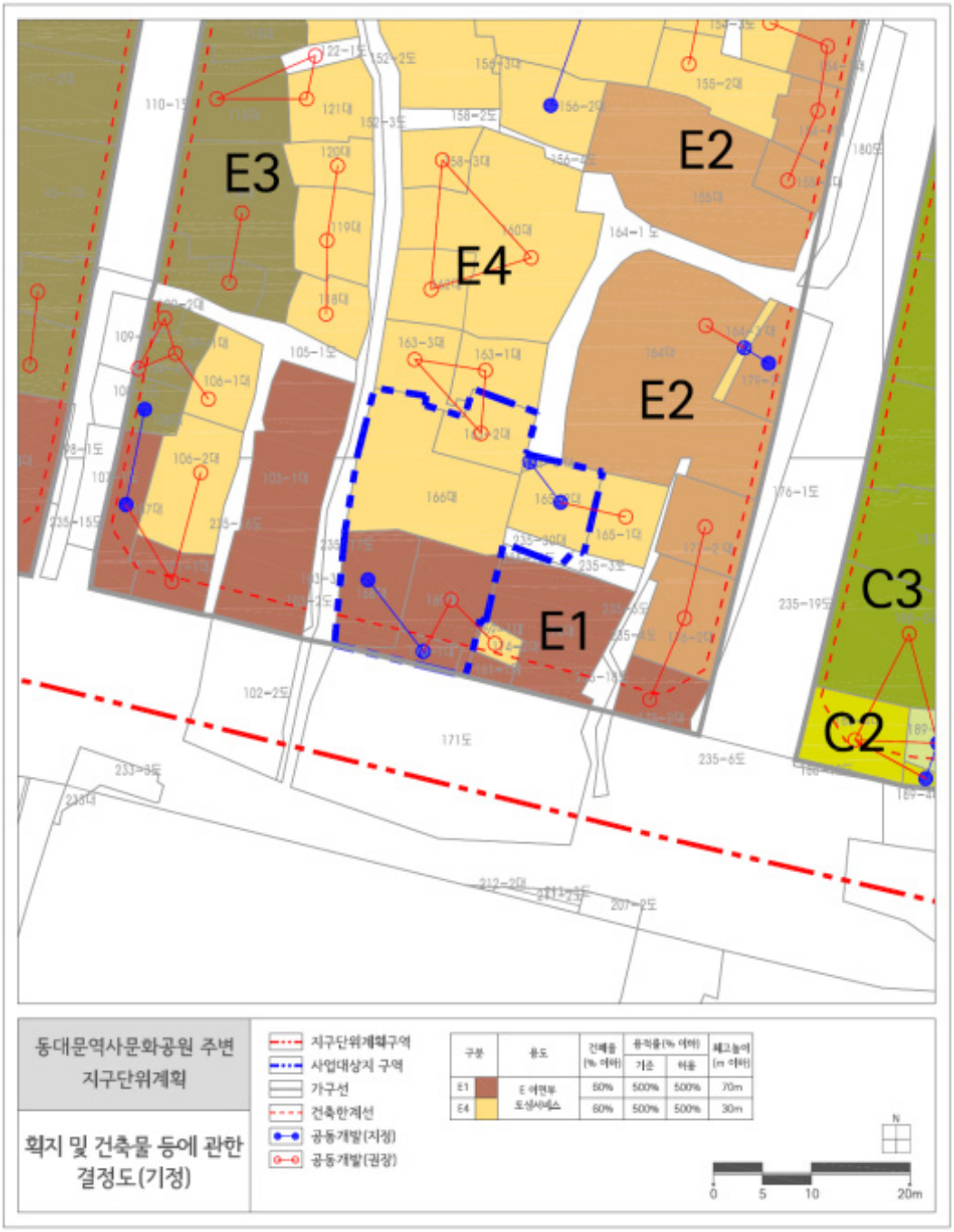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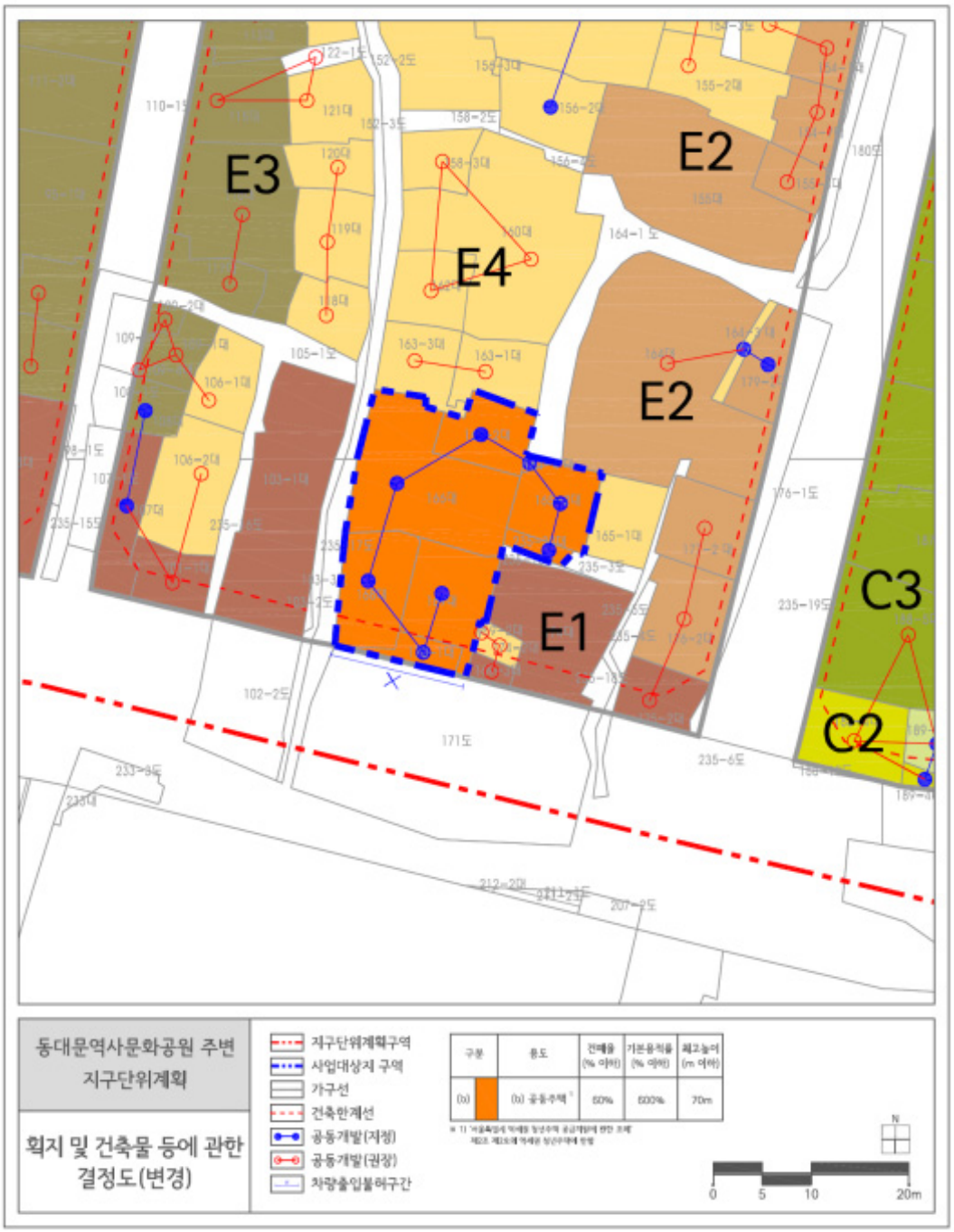

#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423호

##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 등록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등록을 위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6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1조 제4항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 등록 계획을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문화재 등록 계획

가. 문화재 등록 개요

| 등록 예정 종별 | 등록 예정 명칭 | 수량 | 규격(cm) | 조성연대 | 보관장소 (소유자) |
|---|---|---|---|---|---|
| 서울특별시등록 문화재 | 경향신문 (京鄕新聞) | 1건 220점 | 31.0×23.0 등 | 1906-1910년 | 서울시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 |

나. 공고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고함.

1) 등록문화재

【 경향신문(京鄕新聞) 】

『경향신문』은 1906년 10월 19일자로 창간된 주간 국문신문이다.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가 주도하던 한국 천주교회에서 발행하였는데, 사장은 프랑스인 신부가 맡고 한국인 신부와 조력자가 주관하였다. 1910년 12월 30일자까지 만4년 동안 220호가 발간되었으며, 발행부수는 4,000부를 상회한 것으로 보인다. 천주교회에서 발간하였지만 순수한 종교신문이 아닌 일반 시사 신문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한일합병' 직후 조선총독부의 사전검열 강요에 의해서 폐간되었다.

다른 한말 신문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통한 실력 양성을 강조하는 등, 국민계몽을 선도하였으며, 국내와 국외의 소식을 보도하였고, 실용적인 내용과 상식이 많았다. 국문으로 발간되어 국민계몽과 국문 대중화·보급에 크게 기여한 신문이다.

국립한글박물관 소장『경향신문』은 자료적인 가치나 희귀성 등이 매우 주목되며, 천주교회의 문명 개화와 대중계몽에 대한 관심이 잘 드러나므로 이를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

2. 의견 제출 방법 안내

◯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① 전화 : (02) 2133-2632 ② 팩스 : (02) 768-8873

③ 우편 :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팩스나 우편 제출

◯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붙임>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및 입증자료
- 문화재 등록에 대한 찬반의견 및 그 사유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한 조사보고서

【 경향신문(京鄕新聞) 】

1. 문화재 현황

『경향신문』은 1906년 10월 19일자로 창간된 주간 국문신문이다.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가 주도하던 한국 천주교회에서 발행하였는데, 사장은 프랑스인 신부가 맡고 한국인 신부와 조력자가 주관하였다. 1910년 12월 30일자까지 만4년 동안 220호가 발간되었으며, 발행부수는 4,000부를 상회한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대상은 천주교회에서 발간하였지만 순수한 종교 신문이 아닌 일반 시사 신문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지만 천주교회의 정교분리 원칙에서 정치 불간섭을 내세워 현실정치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 폐간은 '한일합병' 직후 조선총독부의 사전검열 강요에 의해서였으며, 1911년부터 격주간의『경향잡지』라는 종교잡지로 전환되었다.

『경향신문』은 다른 한말 신문들과 마찬가지로 교육을 통한 실력 양성을 강조하는 등, 국민계몽을 선도하였다. 국내와 국외의 소식을 보도하였고, 실용적인 내용과 상식이 많았다. 국문으로 발간되어 국민계몽과 국문 대중화 보급에 크게 기여한 신문이다.

현재『경향신문』은 국립한글박물관과 한국교회사연구소에 전질이 소장되어 있으며, 1978년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소장한 신문을 자료총서의 하나로 영인하여 보급한 바 있다.

2. 원형 유지 정도

문화재의 원형은 잘 유지되어 있다.

3. 문화재 지정 가치 여부

현재 국가 등록문화재로는 2012년 지정된 신문과 잡지 8종(제505호-제511호)이 있는데,『독립신문』상해판(제510호)을 제외하면 모두 개항 이후부터 한말 시기에 발간된 것이다.『경향신문』역시 한말에 간행되었으며, 천주교회의 문명 개화와 대중계몽에 대한 관심이 잘 드러난다.

따라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경향신문』은 자료적인 가치나 희귀성 등이 매우 주목되므로 이를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만한 가치가 있다.

| 참고 자료 | 문화재 이미지 |
|---|---|

경향신문 제1호(明治39년 10월 19일) 앞 · 뒷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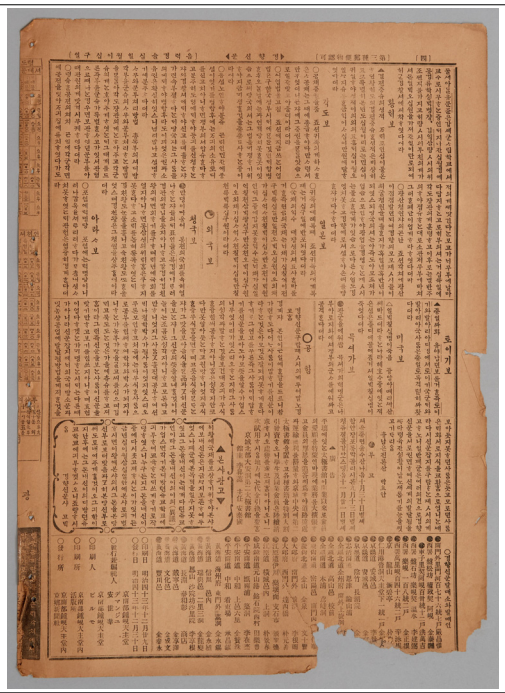

경향신문 제220호 앞 · 뒷면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429호

##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등록말소) 공시송달 공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사업자등록 폐업 사실이 확인된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말소)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0. 8. 27.~2020. 9.10.(14일간)
2. 처분 사전통지 사항

| 업 체 명 (대표자) | 업종 및 등록번호 | 소 재 지 | 처분사유 | 처분내용 | 처분 근거 |
|---|---|---|---|---|---|
| ㈜현진건설산업 (최병현) | 건축공사업 01-4353 |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계로1길 22, 802호(월계동) | 사업자등록(595-86-00759) 폐업 - 폐업일자 : 2020. 6. 5. | 등록말소 (2020. 9.11.) | 법 제83조 제12호 |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26로 문의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449호

##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장 공시송달(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 및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하여 독촉 및 압류 예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능인 대상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혼잡통행료 과태료 독촉 및 압류 예고장 송달불능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제11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 <붙임>
4. 체납자 제재 안내
   가. 당사자는 본 통지를 받은 날(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내지 55조에 규정에 따라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면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체납액이 500만원(감치 1,000만원)이상이면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문의 전화 : 02-2290-6438~9, 6179, 6467 (서울시설공단)
5. 인터넷 납부 : https://etax.seoul.go.kr ※ 공인인증서 필요, 신용카드 납부 가능

붙임 :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 연번 | 요금소 | 통행일시 | 차량번호 | 과태료 | 납부자 | 주소 |
|---|---|---|---|---|---|---|
| 1 | 남산1호터널 | 2019-08-16 10:36:20 | 35누4242 | 10,300 | 주식회사 크레타투자자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8길 12 11층(역삼동, 디앤와이빌딩) |
| 2 | 남산3호터널 | 2019-08-16 11:09:12 | 08어3584 | 5,150 | 주식회사 알타미라소프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289길 5 113호(방배동, 삼영빌딩 1층) |
| 3 | 남산1호터널 | 2019-08-16 11:41:43 | 12두4550 | 10,300 | "CHELLIAH, DERRICK MICHAEL"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PSC 3 BOX 7612 APO AP 96266-0077 |
| 4 | 남산1호터널 | 2019-08-16 12:25:04 | 05버0799 | 10,300 | JIN DONGHUI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천로 431 104동 1504호 (대림동, 新 대림 한솔 솔파크) |
| 5 | 남산1호터널 | 2019-08-16 12:39:32 | 35누4242 | 10,300 | 주식회사 크레타투자자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8길 12 11층(역삼동, 디앤와이빌딩) |
| 6 | 남산1호터널 | 2019-08-16 13:35:09 | 09모1961 | 10,300 | (주)뉴미라코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5길 14 3층(삼성동) |
| 7 | 남산1호터널 | 2019-08-16 13:56:12 | 41하7557 | 10,300 | 주식회사 굿윌파트너즈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51길 10 101-15호(서초동, B1층) |
| 8 | 남산3호터널 | 2019-08-16 19:53:06 | 47소7856 | 10,300 | 디티제트코리아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16 6층(대치동, 새마을운동중앙회) |
| 9 | 남산1호터널 | 2019-08-19 08:27:37 | 34호7658 | 10,300 | 비마이카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55 305-307호(자양동, 타워더모스트광진아크로텔) |
| 10 | 남산3호터널 | 2019-08-19 19:19:06 | 26모2109 | 10,300 | (유)벨베데레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40길 8 1층(논현동, 아산빌딩) |
| 11 | 남산3호터널 | 2019-08-20 07:04:26 | 20고0286 | 10,300 | (주)대한녹용수출입법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약령서길 60 1층(제기동) |
| 12 | 남산3호터널 | 2019-08-20 08:00:05 | 07수8165 | 10,300 | CUI DONGNAN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20번지 110호 2층 2층 |
| 13 | 남산1호터널 | 2019-08-20 08:19:40 | 34호7658 | 10,300 | 비마이카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355 305-307호(자양동, 타워더모스트광진아크로텔) |
| 14 | 남산1호터널 | 2019-08-20 10:13:08 | 63두8663 | 10,300 | (주)브라운컴퍼니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06 602호(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2차) |
| 15 | 남산1호터널 | 2019-08-20 10:39:41 | 10하1180 | 10,300 | (주)썬렌트카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가동 174호(중동, 쥬네브스타월드빌딩) |
| 16 | 남산1호터널 | 2019-08-20 12:32:38 | 69노6150 | 10,300 | 키스톤이앤씨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0길 55 2층(서교동) |
| 17 | 남산1호터널 | 2019-08-20 13:18:09 | 51호6224 | 10,300 | SK네트웍스(주)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영화동) (영화동) |
| 18 | 남산1호터널 | 2019-08-20 13:37:33 | 45누2266 | 10,300 | KIM VLADISLAV |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이덕로 757 101동714호(나우하이빌아파트) |
| 19 | 남산1호터널 | 2019-08-20 20:35:58 | 33무5741 | 5,150 | (주)우보씨아이씨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12길 40 2층(잠실동) |
| 20 | 남산1호터널 | 2019-08-21 12:05:23 | 38호8875 | 10,300 | 제이비우리캐피탈(주)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18층(금암동) |
| 21 | 남산3호터널 | 2019-08-21 15:11:14 | 28오5519 | 5,150 | 한국제이에스홀딩스(주)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779번길 6(이매동 (이매동, 4층동 4층, 케이티분당지사) |
| 22 | 남산1호터널 | 2019-08-21 17:19:34 | 37머4020 | 10,300 | 리케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27길 52 606호(한남동) |
| 23 | 남산1호터널 | 2019-08-21 18:36:03 | 07주8886 | 10,300 | 한국엘리베이터보수관리 주식회사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65번길 17 601호(계산동) |
| 24 | 남산1호터널 | 2019-08-21 18:56:10 | 13러0262 | 10,300 | 주식회사 맹가노니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9길 25(신사동 (신사동, 지층) |
| 25 | 남산3호터널 | 2019-08-22 08:06:27 | 59너7559 | 10,300 | 주식회사 봉산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길 87(계동) (계동) |
| 26 | 남산1호터널 | 2019-08-22 16:42:23 | 26다8878 | 10,300 | (주)단국상의원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214호(죽전동, 단국대학교) |
| 27 | 남산3호터널 | 2019-08-23 09:59:42 | 58로5695 | 10,300 | SHARAVJAMTS GERELMAA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17 103동 502호(상현동, 광교상현 꿈에그린) |
| 28 | 남산1호터널 | 2019-08-23 14:10:09 | 14허8199 | 10,300 | 아이코아즈(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96길 6 508호(삼성동, 엘지트윈빌) |
| 29 | 남산1호터널 | 2019-08-23 14:40:00 | 20소3723 | 10,300 | 주)예감창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56번길 12 타임브릿지 1101(정자동) |
| 30 | 남산3호터널 | 2019-08-23 14:58:39 | 20너2275 | 10,300 | 주-동아일보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서린동) (서린동) |
| 31 | 남산3호터널 | 2019-08-23 17:13:49 | 20너2275 | 10,300 | 주-동아일보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서린동) (서린동) |
| 32 | 남산1호터널 | 2019-08-23 17:19:15 | 54구3137 | 10,300 | 주식회사 그린피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1동 1403호(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
| 33 | 남산1호터널 | 2019-08-26 09:20:17 | 34호7881 | 10,300 | (주)아이언렌트카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 38 204호(삼성동, 경인빌딩) |
| 34 | 남산1호터널 | 2019-08-26 18:06:16 | 67노3966 | 10,300 | (주)큐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골4길 6(내곡동) (내곡동) |
| 35 | 남산1호터널 | 2019-08-27 08:16:20 | 06루7765 | 10,300 | 아키드원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7길 12 4층(삼성동, 한일빌딩) |
| 36 | 남산1호터널 | 2019-08-27 10:36:30 | 37라0490 | 10,300 | 하나캐피탈(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20층(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

| | | | | | | |
|---|---|---|---|---|---|---|
| 37 | 남산1호터널 | 2019-08-27 13:06:14 | 28루6224 | 10,300 | 주식회사 경원테크닉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산로19길 50 5층 501호(양재동, 봉산빌딩) |
| 38 | 남산1호터널 | 2019-08-27 15:13:28 | 65다2902 | 10,300 | 주식회사 투어팩토리여행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2 101호(서초동) |
| 39 | 남산3호터널 | 2019-08-27 15:59:34 | 65버7228 | 10,300 | (주) 한영전기 | 경기도광주시오포읍고산길23-10 |
| 40 | 남산1호터널 | 2019-08-27 17:40:28 | 51호0906 | 10,300 | SK네트웍스(주)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영화동) (영화동) |
| 41 | 남산3호터널 | 2019-08-28 08:56:00 | 21도4448 | 10,300 | (주)파미니티 |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로 2 1104호(별양동) |
| 42 | 남산1호터널 | 2019-08-28 19:25:36 | 27다1864 | 10,300 | (주)나무 | 경기도광주시도척면도척로1123 |
| 43 | 남산1호터널 | 2019-08-29 10:38:41 | 46누2131 | 10,300 | (주)피다웍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6 3층 301호(양재동, 준인빌딩) |
| 44 | 남산3호터널 | 2019-08-29 14:59:07 | 60주7408 | 10,300 |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17 803호(성수동1가, 엘타워) |
| 45 | 남산1호터널 | 2019-08-29 18:40:12 | 53누9933 | 10,300 | 와이에스나인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27 1420호(문정동, 문정대명벨리온) |
| 46 | 남산3호터널 | 2019-08-30 11:38:46 | 20호4865 | 10,300 | 프라임렌트카 주식회사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94 3층(송파동) |
| 47 | 남산1호터널 | 2019-08-30 12:09:19 | 23무0764 | 10,300 | (주)천도건축사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190 4층(도곡동, 서원빌딩) |
| 48 | 남산3호터널 | 2019-08-30 16:18:09 | 55호1400 | 5,150 | SK 네트웍스(주)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5(영화동) (영화동) |
| 49 | 남산1호터널 | 2019-08-30 16:27:34 | 19도4731 | 10,300 | JAKBAROV KOBULJON | 경상남도의령군정곡면의합대로1008 |
| 50 | 남산1호터널 | 2019-08-30 19:43:54 | 32도7490 | 10,300 | 롯데캐피탈㈜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역삼동) (역삼동)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467호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6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61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 대 상 자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 내용 |
|---|---|---|---|
| 성명 | 주 소 | | |
| 조상석 |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달빛로 113 7*9동 28*1호(중산동) | 위반일시 : 2020-06-17 10:26<br>위반장소 : 구파발 시계<br>위반내용 : 차량의 축하중 초과(실측값:11.15t, 초과값:1.15t, 경기06소81**) | 과태료 : 50만원 부과<br>처분일 : 2020-07-27<br>납기일 : 2020-09-30 |
| 유부열 |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105 1*동 2*5호(송림동) | 위반일시: 2020-06-17 10:58<br>위반장소: 강변북로<br>위반내용: 차량의 축하중 초과(실측값:11.3t, 초과값:1.3t, 인천06아53**) | 과태료: 50만원 부과<br>처분일: 2020-07-27<br>납기일: 2020-09-30 |
| 맹인수 | 경기도 시흥시 신천6길 15-*(신천동) | 위반일시: 2020-06-25 05:53<br>위반장소: 충정로<br>위반내용: 차량의 폭 초과(실측값:2.73m, 초과값:0.23m, 서울07나66**) | 과태료: 30만원 부과<br>처분일: 2020-07-27<br>납기일: 2020-09-30 |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납부기한 : 2020. 09. 30.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행정청(이의제기 및 기타 세부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300-8307, 팩스번호: 02-300-8337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471호

##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 등을 위한 의견 수렴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에 따라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2020. 08. 27. ~ 2020. 09. 10.
2. 의견제출: 예비도로명 및 도로구간 설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0. 09. 10.까지 제출
3. 의견 제출 방법: 의견서(붙임 2)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가. 주소: (우편번호: 04524)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나. 전화: 02-2133-5841 (FAX : 02-2133-0777)
4. 도로구간 등의 설정·부여절차

의견수렴공고 ▶ 도로명주소위원회 ▶ 결과통보 및 결정고시

5.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자전거길 도로구간 및 중심선
   - 도로구간

| 연번 | 길이 (km) | 폭 (m) | 위계 | 도로구간 | | 관할 행정 구역 | 기초 간격 (m) | 기초 번호 | 중심선 | 예비도로명 | 도로명 부여사유 |
|---|---|---|---|---|---|---|---|---|---|---|---|
| | | | | 시작지점 | 끝지점 | | | | | | |
| ① | 3.4 | 4 | 길 | 서울성북구 하월곡동226-8 | 서울동대문구 용두동696-6 | 성북구 동대문구 | 10 | 1번부터 연속부여 | 별첨 | 정릉천자전거길 | 하천명을 이용하여 명명 |
| ② | 2.3 | 2~4 | 길 | 서울성북구 삼선동5가400-2 | 서울동대문구신설동 92-44 | 성북구 동대문구 | 10 | 1번부터 연속부여 | | 성북천자전거길 | |

| | | | | | | | | | | | |
|---|---|---|---|---|---|---|---|---|---|---|---|
| ③ | 5.9 | 2~4 | 길 | 서울도봉구 쌍문동420-2 | 서울노원구 월계동476-33 | 도봉구 노원구 | 10 | 1번부터 연속부여 | | 우이천자전거길 (좌안) | |
| ④ | 4.46 | 2~4 | 길 | 서울강북구 수유동141 | 서울성북구 석관동375-4 | 강북구 노원구 성북구 | 10 | 1번부터 연속부여 | | 우이천자전거길 (우안) | |
| ⑤ | 4.45 | 2~4 | 길 | 서울은평구 신사동22-15 | 서울마포구 성산동342-2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10 | 1번부터 연속부여 | | 불광천자건거길 (좌안) | |
| ⑥ | 4.53 | 2~4 | 길 | 서울은평구 응암동114-6 | 서울마포구 성산동342 |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10 | 1번부터 연속부여 | | 불광천자건거길 (우안) | |
| ⑦ | 5.63 | 2~4 | 길 | 서울서대문구 홍은동산11-71 | 서울마포구 삼암동1537 | 서대문구 마포구 | 10 | 1번부터 연속부여 | | 홍제천자건거길 (좌안) | |
| ⑧ | 6.95 | 2~4 | 길 | 서울서대문구 홍제동287-261 | 서울마포구 삼암동1537-3 | 서대문구 마포구 | 10 | 1번부터 연속부여 | | 홍제천자건거길 (우안) | |
| ⑨ | 8.86 | 2~4 | 길 | 서울관악구 신림동808-1 | 서울구로구 신도림동271-84 | 관악구구로구 | 10 | 1번부터 연속부여 | | 도림천자건거길 (좌안) | |
| ⑩ | 5.72 | 2~4 | 길 | 서울동작구 신대방동459-5 | 서울구로구 신도림동271-64 | 동작구구로구 | 10 | 1번부터 연속부여 | | 도림천자건거길 (우안) | |
| ⑪ | 1.51 | 2~4 | 길 | 서울서초구 반포동117-13 | 서울동작구 동작동316-3 | 서초구동작구 | 10 | 1번부터 연속부여 | | 반포천자건거길 | |

붙임1 : 중심선

①정릉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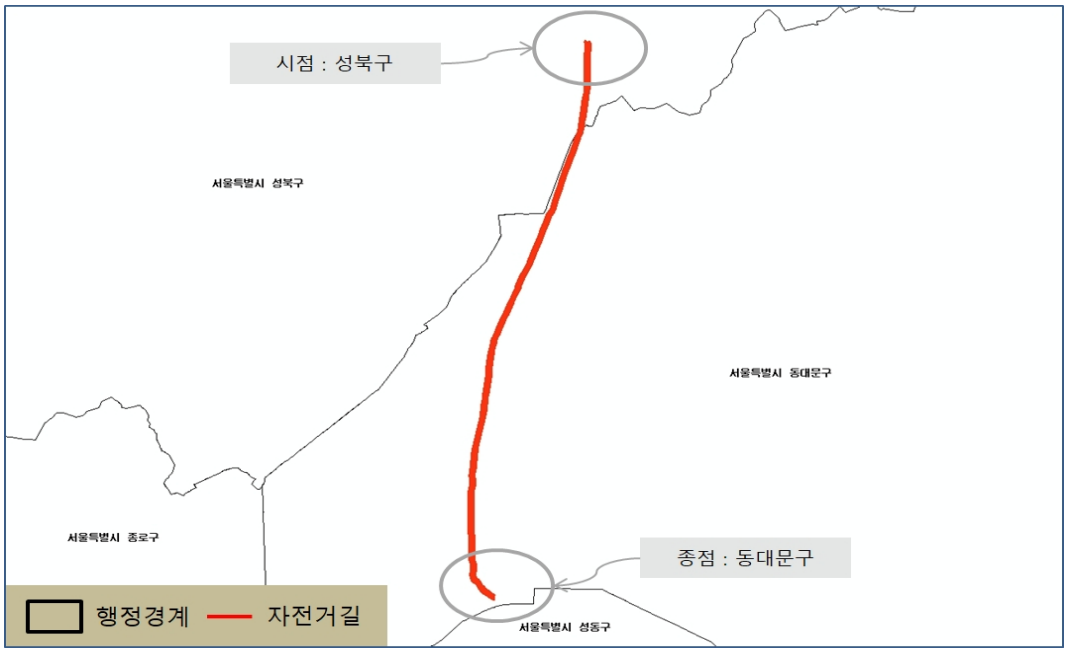

②성북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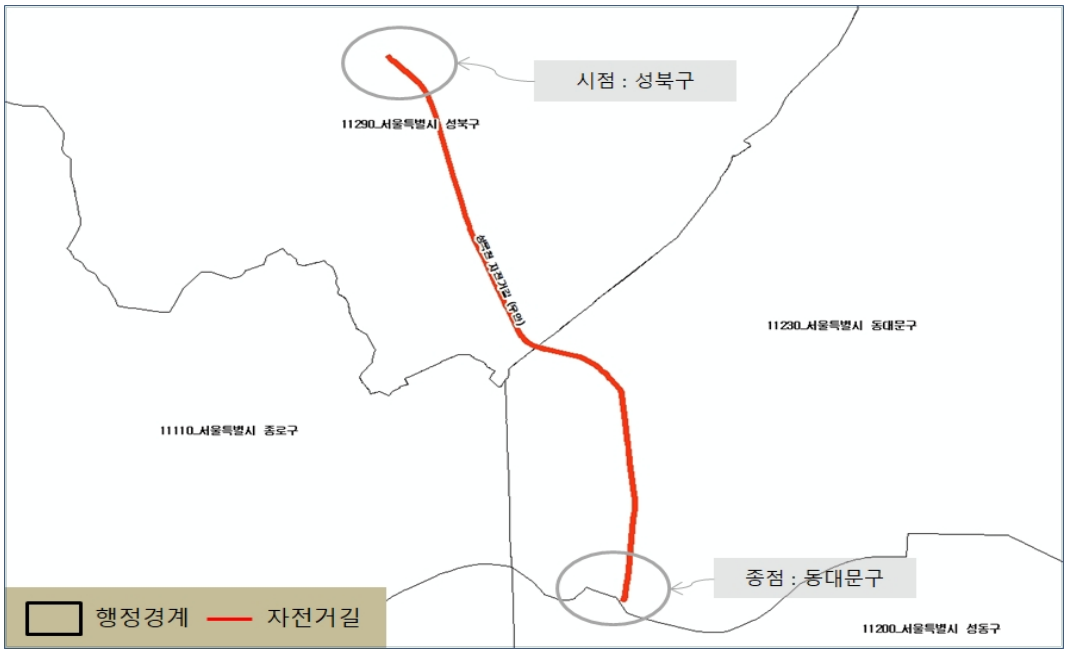
시점 : 성북구
11290_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천 자전거길 (우안)
11230_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1110_서울특별시 종로구
종점 : 동대문구
11200_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경계
자전거길

③우이천좌완

시점(좌안) :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시점(우안) :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종점(좌안) : 노원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점(우안) : 성북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경계
자전거길

④우이천우완

⑤불광천좌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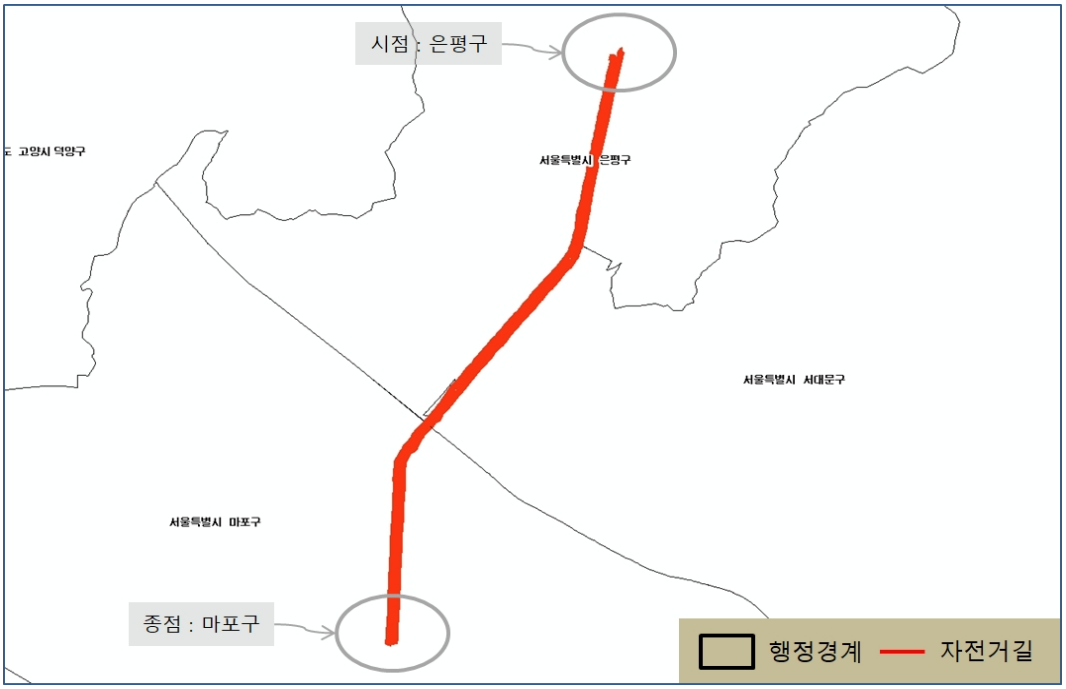

⑥불광천우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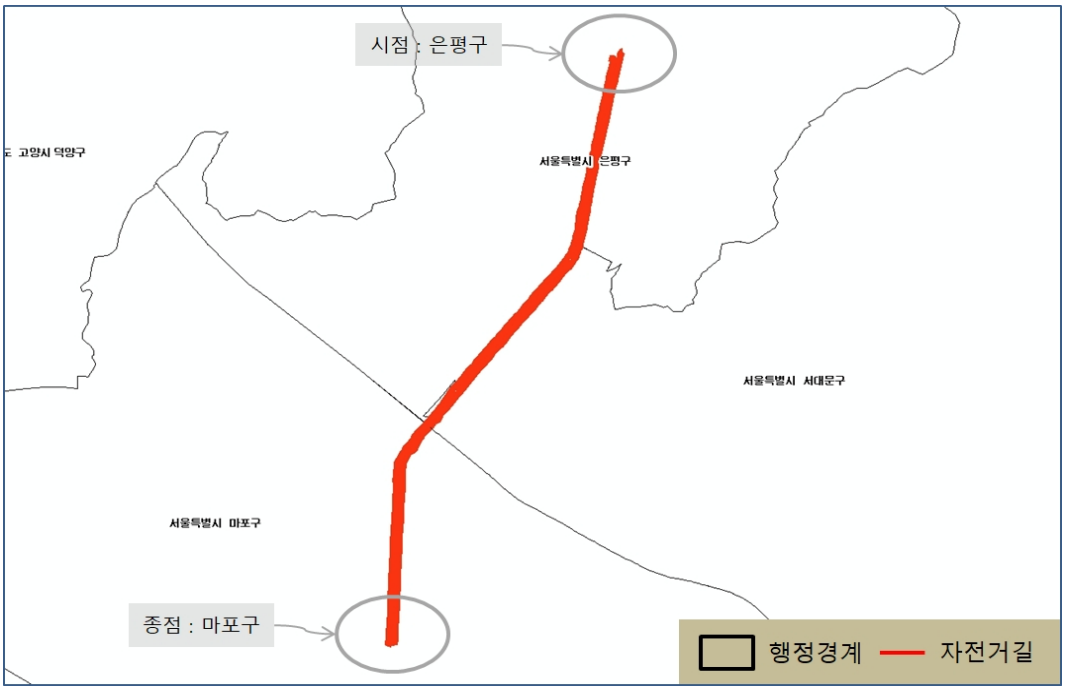


⑦홍제천좌완

⑧홍제천우완

⑨도림천좌완

⑩도림천우완

종점 : 구로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점(우안) : 동작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점(좌안) : 관악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경계
자전거길

⑪반포천

서울특별시 용산구
종점 : 동작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점 : 서초구
행정경계
자전거길

**붙임2: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에 대한 의견서**

| | | |
|---|---|---|
| 신청인 | 성명(법인명) | |
|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주소 | |

| | |
|---|---|
| 의견 제출 대상 | 도로명 부여<br>(정릉천외 6개소 자전거길) |
| 도로명 부여에 대한 의견 | |

도로명 부여 및 예비도로명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처리절차 | | | | | | | |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 → | 결정 | → | 통보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472호

##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107호('89.3.20)로 고시된 "올림픽대로" 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등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하오니,
3. 본 열람공고 및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1) 도로 결정 조서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m)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 | | | | | | |
| 기정 | 대로 | 1 | 64 | 35~ 80 | 주간선도로 | 3,300 | 암사동 | 강일동 | 자동차전용도로 | - | 89.03.20 (건고107) | 올림픽대로 |
| 변경 | 대로 | 1 | 64 | 35~ 90 | 주간선도로 | 3,300 | 암사동 | 강일동 | 자동차전용도로 | | 89.03.20 (건고107) | 일부구간 폭원확대 |

2) 광장 결정 조서

| 구분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 | 최초 결정일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 변경 | 광장 | 교통광장 | 암사동 606-5 | 103,900 | 증) 332 | 104,232 | 89.03.20 (건고107) | |

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사업
   명칭 : 암사 초록길 조성사업
2)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일원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L=870m, B=16.4 ~ 32.8m(왕복4~8차로)
   ○ 지하차도 : 1개소 / 5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강사업본부(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일 :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 2022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주소(변경) - 토지세목조서(별첨)

7) 위치도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8) 사업계획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다. 열람 일시 및 장소

1) 열람 일시 :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09:00~18:00)

2) 열람 장소

◯한강사업본부 기반시설과(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02-3780-0665)

◯강동구 치수과(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 ☎02-3425-6412)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기반시설과(☎02-3780-0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세목조서

| 일련번호 | 소재지 | | 지번 | 지목 | 지적(㎡) | 편입면적(㎡) | 소유자 | | 비고 |
|---|---|---|---|---|---|---|---|---|---|
| | 구 | 동 | | | | | 성명 | 주소 | |
| 1 | 강동 | 암사 | 611 | 제 | 13,849 | 126 | 공 | 서울특별시 | 광장 |
| 2 | 강동 | 암사 | 614-4 | 제 | 384 | 199 | 공 | 서울특별시 | 광장 |
| 3 | 강동 | 암사 | 614-2 | 천 | 8,007 | 972 | 국 | 국토교통부 | 광장 |
| 4 | 강동 | 암사 | 184-1 | 도 | 193 | 53 | 공 | 서울특별시 | 광장 |
| 5 | 강동 | 암사 | 170-9 | 제 | 412 | 403 | 국 | 국토교통부 | 광장 |
| 6 | 강동 | 암사 | 164-12 | 천 | 16,158 | 10,280 | 국 | 국토교통부 | 광장 |
| 7 | 강동 | 암사 | 168-7 | 천 | 693 | 693 | 국 | 국토교통부 | 광장 |
| 8 | 강동 | 암사 | 167-8 | 제 | 374 | 374 | 공 | 서울특별시 | 광장 |
| 9 | 강동 | 암사 | 167-7 | 제 | 26 | 26 | 공 | 서울특별시 | |
| 10 | 강동 | 암사 | 164-2 | 천 | 28,255 | 4,578 | 국 | 국토교통부 | 광장(125) |
| 11 | 강동 | 암사 | 165-2 | 천 | 1,262 | 1,262 | 국 | 국토교통부 | |
| 12 | 강동 | 암사 | 164-9 | 천 | 36 | 36 | 공 | 서울특별시 | |
| 13 | 강동 | 암사 | 164-10 | 천 | 106 | 106 | 공 | 서울특별시 | |
| 14 | 강동 | 암사 | 147-65 | 제 | 1,216 | 384 | 국 | 국토교통부 | |
| 15 | 강동 | 암사 | 148-9 | 천 | 16,000 | 1,143 | 국 | 국토교통부 | |
| 16 | 강동 | 암사 | 166-14 | 제 | 12,865 | 10,339 | 공 | 서울특별시 | 광장 |
| 17 | 강동 | 암사 | 170-1 | 제 | 2,361 | 685 | 국 | 국토교통부 | 광장 |
| 18 | 강동 | 암사 | 167-6 | 전 | 20 | 20 | 이태영 외1인 | 서대문구 북아현동 123-51 | |
| 19 | 강동 | 암사 | 172-4 | 제 | 77 | 54 | 공 | 서울특별시 | |
| 20 | 강동 | 암사 | 166-3 | 제 | 13,996 | 10,681 | 공 | 서울특별시 | 광장(162) |
| 21 | 강동 | 암사 | 147-10 | 제 | 19,220 | 2,979 | 공 | 서울특별시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474호

##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들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차량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 및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근 거: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7조, 「지방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가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부과고지

| 대 상 자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 내용 |
|---|---|---|---|
| 성명 | 주 소 | | |
| 정상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수봉안길13번길 **-**, ***호(숭의동) | 일시: 2020-06-08 14:36<br>장소: 행주대교 북단 과적검문소<br>내용: 제한 축하중 1.45톤 초과 | 처분일: 2020. 7. 28.<br>과태료: 50만 원<br>납기일: 2020. 9. 30. |
| 김용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411번길 **, *동 ***호 (주안동) | 일시: 2020-07-07 05:41<br>장소: 마곡중앙로<br>내용: 제한 축하중 1.7톤 초과 | 처분일: 2020. 7. 28.<br>과태료: 50만 원<br>납기일: 2020. 9. 30. |

나.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독촉고지

| 대 상 자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 내용 |
|---|---|---|---|
| 성명 | 주 소 | | |
| 윤병성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14가길 **, *동 ***호(영등포동1가) | 일시: 2020-04-08 09:40<br>장소: 도림동 252-20 공사 현장<br>내용: 도로법 제77조 제2항 과적방지 의무 위반 | 처분일: 2020. 5. 27.<br>과태료: 50만 원<br>납기일: 2020. 7. 31. |

4.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5. 납부기한: 2020. 9. 30.
6. 납부방법 및 수납기관

가.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시중 은행 본.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및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etax.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전용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나.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최고 73% 가

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안내

가. 이의제기 기한: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60일

나. 이의제기 기한 내에 서면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청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기한 내에 이의제기서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의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법원에 통보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라. 과태료 부과 처분청(이의제기서 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2657-7922, 팩스번호: 02-2657-7950
- 전자우편: skyblue7@seoul.go.kr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478호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2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로 신규 등록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 환경컨설팅회사 신규 등록 내역

| 연번 | 상 호 | 등록번호 | 등록일자 | 영업소 소재지 |
|---|---|---|---|---|
| 1 | 디오켐 | 제173호 | ’20.8.20.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31, 10층 1014호 a11호 (구로동,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2) |
| 2 | 차스텍이앤씨(주) | 제174호 | ’20.8.20.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55길 13, 301호 (도곡동, 서원빌딩) |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479호

###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7조와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하자보증금 반환대상자에게 보증금을 반환 청구하도록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내용 :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을 위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3. 근거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7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1) 계약건명 : 누수복구용 비축자재 구매
   2) 계약일자 : 2012.7.20.
   3) 계약자 : 신광에스알피주식회사(대표자 김미구)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송두4길 56-33
   4) 하자보증기간 : 2012.8.14.~2015.8.13.
   5) 하자보증금액 : 금107,053원(원금94,700원, 이자 12,353원)
5. 송달내용
   당사자께서는 계약건명, 금액 등을 확인하여 반환청구 하실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7조에 의거 시에 세입으로 귀속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문의 : 수도자재관리센터 지출담당 (☎02-3146-191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484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전 청문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 당 사 자 | |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 연번 | 등록번호 | 상 호 및 대표자 | 소재지 | | |
| 1 | 202281 | 주)서신엔지니어링<br>오태진 |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140,601호(삼전동,잠실레이크타워)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중급1인 부족) | 등록취소 전 청문 통지서 |
| 2 | 202194 | 태성이엔씨㈜<br>임성택 | 서울 중랑구 면목로 480 , 401호(상봉동)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 (중급1,초급1인 부족) | 등록취소 전 청문 통지서 |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제66조(영업정지, 등록취소),
동법시행령 제21조, 제50조(영업정지 등) 및 별표8의13
3. 문의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담당자: 조용성(☎(02)2133-2897, 전자우편 q369369@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498호

## 서울특별시 문화재 등록 계획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 등록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하여「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재 등록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문화재 등록 개요

| 등록예정 종별 | 등록예정 명칭 | 수 량 | 조성연대 | 소재지 | 소유자 |
|---|---|---|---|---|---|
|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 | 서울시립대학교 구 본관 및 교사 | 건물 2동 | 1937년 | 동대문구 전농동 90번지 | 서울특별시 |
| | 서울시립대학교 구 강당 | 건물 1동 | 1937년 | 동대문구 전농동 90번지 | 서울특별시 |
| | 고려대학교 4.18기념탑 | 기념탑 1기 | 1961년 |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 고려대학교 |

나. 공고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서울특별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고자 하는 바,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고함.

[서울시립대학교 구 본관 및 교사]

서울시립대학교 구 본관(경농관)과 교사(박물관)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역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이다. 서울시립대학교는 1918년 5월 1일「경성공립농업학교」로 출발하였는데 1937년 본관동과 교사동, 그리고 강당이 건축되었다. ‘경농관’이라는 본관의 명칭은 ‘경성공립농업학교’에서 유래했다.

구 본관은 지상1층 규모의 벽돌조 건물로 지붕은 맞배형태이며, 건축면적과 연면적은 1,259.5㎡이다. 평면은 길이 약 108미터, 폭 약 11미터 규모의 동서로 긴 장방형 형태로 중앙 홀을 중심으로 전·후면에 주 출입구 및 후문을 내고, 좌우로는 대칭형으로 실을 배치하였으며, 양 측단에 부출입구를 두었는데, 건축당시에는 복도와 업무공간이 구분된 편복도 형태였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일부 장막벽을 제거하고 공간을 통합하여 연구 및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조는 적벽돌을 쌓아 벽체를 구축하고, 구조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 벽체 중간에 수직 부축벽 및 방화벽을 두어 벽면을 구획하였으며, 일정 간격으로 세로로 긴 창을 내었는데, 수장고

측 일부 창문은 벽돌을 쌓아 막은 상태이다. 외벽마감 벽돌은 건축된 이후 개수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연대는 확인되지 않는다.

지붕은 변형된 형태의 목재 트러스구조이고, 지붕면은 건축당시 동판이었다고 하나, 이후 아스팔트 싱글로 교체되었다가 2012년 리모델링공사 시 티타늄 아연판으로 교체되었다.

입면은 전면 주 출입부에 포치(porch)를 두고, 페디먼트(pediment)로 장식하였으며, 좌우대칭으로 창을 일정하게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중심부가 강조되는 형태를 취하였다. 이러한 구조와 형태는 근대기 우리나라에 건축된 교육시설의 전형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구 본관(경농관)의 후면에 위치한 구 교사는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지상1층 규모의 벽돌조 건물로 지붕은 박공형태이며, 건축면적과 연면적은 535.81㎡이다. 남아있는 교사동의 평면은 길이 49.2미터, 폭 10.3미터 규모의 동서로 긴 장방형이고, 입면은 서측 주 출입부에 포치(porch)를 두었는데, 박공형태의 페디먼트(pediment)에 3개의 창을 내어 파사드(facade)의 정면성을 강조하였다. 구조는 적벽돌을 쌓아 벽체를 구축하고, 측면에는 조적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폭이 좁은 세로로 긴 형태의 창을 일정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건축당시 있었던 굴뚝은 철거되었고, 외벽마감 벽돌은 개수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연대는 확인되지 않는다.

지붕은 목재 프랫(pratt)트러스 구조이고, 지붕면은 건축당시 동판이었다고 하나, 이후 아스팔트 싱글로 교체되었다가 2012년 리모델링공사 시 티타늄 아연판으로 교체되었다.

내부 벽체 및 지붕 구조부의 경우, 건축당시 모습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데, 2012년 공사 당시 원래의 부재가 최대한 노출되도록 정비하여 건물의 역사성을 부각하는 한편, 공간의 개방감을 높였다.

옛 사진에 나타난 교사동의 모습은 당초 남측에 면한 본관동과 유사한 규모였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절반이상이 축소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정확한 변화연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1984년 박물관 개관당시의 사진을 통해 1984년 이전에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립대학교 구 본관(경농관)과 교사(박물관)는 건축이후, 몇 차례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지만, 서울을 대표하는 고등교육시설의 상징으로 근대시기 학교건축의 전형이 잘 남아있고, 활용의 모범이 되는 바, 서울시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서울시립대학교 구 강당]

서울시립대학교 구 강당은 서울시립대학교의 역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건물로 '자작마루'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구 강당은 지상1층 규모의 벽돌조 건물로 지붕은 박공형태이며, 건축면적과 연면적은 452.89㎡이다. 평면은 길이 약 25.5미터, 폭 약 16.4미터 규모의 동서로 긴 장방형의 단순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입면은 전면에 포치(porch)를 두고, 그 위를 박공형태의 페디먼트(pediment)에 3개의 둥근 아치창을 내어 주 출입부(파사드, facade)의 정면성을 강조함으로써 근대기 우리나라에 건축된 학교 강당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추가로 좌측면에 별도의 부 출입구를 둔 것이 특징적이며, 건축당시 있었던 굴뚝은 현재 철거된 상태이다. 구조는 적벽돌을 쌓아 벽체를 구축하고, 측면에는 조적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폭이 좁은 세로로 긴 형태의 창을 일정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지붕은 변형된 형태의 목재 트러스구조를 취하고 있고, 지붕면은 건축당시 동판이었다고 하나, 이후 아스팔트 싱글로 교체되었다가 2012년 리모델링공사 시 티타늄 아연판으로 교체되었다.

내부는 크게 방풍실, 강당, 무대로 구분되는데, 방풍실 상부는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 벽체의 경우, 외벽에 비해 상당부분 벽돌이 교체되어 있으나, 지붕틀은 옛 부재가 대부분 남아 있다. 내부 바닥은 무근 콘크리트와 목재 쪽널로 마감되어 있고, 시설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철골조로 구조를 보강하였으며, 공조 및 조명설비가 추가되어 있다.

1937년에 건축된 이래, 2001년까지 별다른 수리 보수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고, 2001년에 현대식 문화공간으로 전면 개조된 바 있으며, 2012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한 후, 2019년 2월경에 일부 구조를 보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2년에 공사당시, 외벽의 몰탈 뿜칠 및 도색을 걷어내고, 적벽돌의 원형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벽체와 지붕구조를 보강하는 한편, 현관 및 창틀 부재 일부를 교체하였으나, 전체적인 구조 및 형태는 원래의 모습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을 차용하였다.

서울시립대학교 구 강당(자작마루)은 서울을 대표하는 고등교육시설의 상징으로 근대시기 학교 강당건축의 전형이 비교적 잘 남아있고, 기능적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 특히, 1928년에 작성된 설계도가 함께 남아 있어 원형을 확인할 수 있고, 적벽돌 건축의 보수보강 기법 및 활용방안 연구에 귀중한 사료가 된다는 점에서 건축사적 가치가 높아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고려대학교 4.18 기념탑]

고려대학교 4.18 기념탑은 헌법정신의 근간이 되는 4.19의 도화선이 되었던 1960년 4월 18일 고대생들이 중심이 된 4.18 시위를 기념하기 위해 1주년이 되던 해인 1961년 4월 18일에 설치한 탑이다.

가로 513.2 cm, 세로 300cm, 두께 113cm 크기의 장방형 그리드 패턴으로 이루어진 화강석 배경에 학생들이 「스크럼」을 짜서 불의에 항거한 모습을 FRP 소재로 민복진이 조각했다. 우측 하단에는 검정색 오석(烏石)에 4.18을 기념하는 조지훈 교수의 글이 김충현의 글씨로 새겨져 있고, 오석 밑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월계수가 동판으로 제작되어 있다. 비교적 단순하지만 간결한 형태의 기념탑으로 불의에 항거한 4.19 정신을 잘 나타내고 있 있다.

4.19 운동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획기적인 사건이다. 이 기념탑은 4.19 운동의 자유와 민권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의 배치 구조가 그동안 많이 바뀌었지만, 4.18기념탑은 1961년 4월 18일 제막식이 거행된 이후 현재까지 원래의 위치와 원형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2. 문화재 등록 시 주요 법적 제약사항

○ 문화재로 등록되는 대상

- 문화재보호법 제74조(준용규정) 제3항·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64조(등록문화재의 신고 사항)·제65조(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됨

3. 의견제출 방법 안내

○ 제출기간 : 공고일부터 30일간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① 전화 : (02) 2133-2630
② 팩스 : (02) 768-8873
③ 우편 :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또는 팩스나 우편 제출
○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문화재 등록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02-2133-26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499호**

## 중도매업 허가취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중도매업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허가취소 처분하고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연락이 두절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2020. 8. 27. ~ 9. 10. (15일간)
2. 처분대상

| 상 호 | 허가번호 | 소 재 지 | 대표자 |
|---|---|---|---|
| 전용갑 | 2가특0199 |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 전*갑 |

3. 처분의 내용 : 중도매업 허가취소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3개월 연속 무실적
5. 처분근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 4]
6. 처 분 일: 2020. 9. 11.
7. 이의제기 안내

- 동 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을,
- 또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을 제기할 수 있음

8. 허가취소에 따른 행정절차 안내
   -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내 배정받은 점포 반납, 보증금 환급 등의 절차를 거쳐 중도매업 허가취소 처리됨
     ※ 허가취소 절차 관련 문의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농산팀 ☎3435-0416
9. 기타 문의처 : 도시농업과 도매시장관리팀(☎2133-538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513호**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전용차로의 설치) 및 제160조 제3항에 따라 전용차로 위반차량 소유주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의견진술)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이사,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 송달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및 제160조 제3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그린랩스 등 295명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 08. 27 ~ '20. 09. 10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 2020. 08. 27 ~ 2020. 09. 10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별첨 '의견진술서 작성예시' 참조),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인터넷(http://cartax.seoul.go.kr)또는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

태료 감경 50%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 및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의견제출처

- 주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층 교통지도과 전용차로과징팀)
- 전화번호 : 02-2133-4570~76, 팩스번호 : 02-2133-4904

※ 인터넷(http://cartax.seoul.go.kr)통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붙임 :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 주요 의견제출 대상 및 기타 참고사항 1부.

## 공시송달(사전통지서)명단

| 구분 | 차량 소유주 | | | | | | |
|---|---|---|---|---|---|---|---|
| 연번 | 최초차량번호 | 성 명 | 단속일시 | 주 소 | 단속장소 | 위반내용 | 금 액 |
| 1 | 235저8410 | (주)그린랩스 | 2020-07-11 15:25 | 서울특별시 | 양재동 양재IC 상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 | 235저8410 | (주)그린랩스 | 2020-07-11 15:28 | 서울특별시 | 서초동 반포IC 상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3 | 04머1729 | (주)기아자동차비룡대리점 | 2020-07-22 14:15 | 경기도 안성시 | 서초동 반포IC 상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4 | 152호6480 | (주)느루 | 2020-07-11 12:01 | 서울특별시 | 서초동 서초IC 하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5 | 12무4055 | (주)동성사 | 2020-07-23 19:38 | 경기도 파주시 | 서초동 반포IC 상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6 | 65머5211 | (주)두로네트웍스 | 2020-07-10 08:43 | 서울특별시 |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7 | 71서1445 | (주)마이다스커뮤니케이션 | 2020-07-02 18:42 | 서울특별시 | 합정역~양화대교 남단 방향 | 전용차로위반 | 60,000 |
| 8 | 60호1456 | (주)비비드플래닛 | 2020-07-03 14:27 | 서울특별시 |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9 | 38우7412 | (주)소나무 | 2020-07-25 20:31 | 부산광역시 |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0 | 22더9737 | (주)아이비코리아 | 2020-07-24 16:08 | 강원도 횡성군 | 서초동 서초IC 상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1 | 29거5905 | (주)엠앤에이치엔터테인먼트 | 2020-07-15 13:02 | 서울특별시 | 서울 송파구 잠실동 255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2 | 36도3676 | (주)올롤로 | 2020-07-24 17:13 | 서울특별시 |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3 | 47하0472 | (주)정무이앤에이 | 2020-07-16 14:29 | 서울특별시 |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4 | 23조5777 | (주)조양실업 | 2020-07-24 18:31 | 경기도 파주시 | 공릉소방서(구리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5 | 85도0379 | (주)트윈마스터 | 2020-07-17 17:50 | 서울특별시 | 양화대교 북단~남단 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6 | 57호9102 | (주)파코미디어 | 2020-07-13 08:30 | 서울특별시 | 양화대교북단~남단 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7 | 42가5936 | A** | 2020-07-25 12:52 | 서울특별시 | 서초동 서초IC 하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8 | 42가5936 | A** | 2020-07-25 12:54 | 서울특별시 | 서초동 양재IC 하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9 | 61고4904 | B** | 2020-07-21 22:16 | 경기도 남양주시 | 상봉동 중랑역 건너편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0 | 43수2616 | H** | 2020-07-22 17:12 | 서울특별시 |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1 | 104허2872 | H** | 2020-07-17 17:40 | 서울특별시 |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2 | 38도8827 | H** | 2020-07-17 19:30 | 서울특별시 |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3 | 37다1646 | J** | 2020-07-22 07:33 | 경기도 부천시 |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4 | 231서6618 | J** | 2020-07-21 11:02 |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5 | 17더8802 | J** | 2020-07-25 20:22 | 경기도 화성시 | 서초동 반포IC 상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6 | 45러2924 | K** | 2020-07-20 12:08 | 경상남도 통영시 | 서초동 서초IC 상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7 | 16모7523 | K** | 2020-07-20 18:03 | 인천광역시 | 서초동 반포IC 상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8 | 36누5827 | K** | 2020-07-22 12:29 | 경기도 과천시 | 남현동 남태령고개 시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9 | 58조9496 | K** | 2020-07-24 11:25 | 충청남도 당진시 | 양재동 양재IC 상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30 | 282수6499 | L** | 2020-07-23 11:17 |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31 | 03너2793 | M** | 2020-07-23 14:14 | 경기도 수원시 | 서초동 반포IC 상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32 | 17라9800 | N** | 2020-07-23 20:27 | 경기도 용인시 | 내곡동 시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33 | 63다9061 | T** | 2020-07-24 19:17 | 인천광역시 | 삼육대학교(구리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34 | 53러0953 | Y** | 2020-07-20 09:30 | 서울특별시 |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35 | 25너0366 | Y** | 2020-07-22 17:55 | 서울특별시 |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앞 시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36 | 16무1084 | Z** | 2020-07-21 13:52 | 경기도 화성시 | 서초동 서초IC 하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37 | 38우1937 | Z** | 2020-07-24 09:09 | 경기도 부천시 |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38 | 14서2126 | 가** | 2020-07-08 12:13 | 경기도 용인시 | 남현동 남태령고개 시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39 | 27서7105 | 가** | 2020-07-23 19:38 | 서울특별시 |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40 | 20더5771 | 강** | 2020-07-24 18:12 | 경기도 수원시 |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41 | 48조0632 | 강** | 2020-07-23 19:26 | 경기도 구리시 | 서울여대(구리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42 | 서울81사7567 | 강** | 2020-07-20 12:26 | 서울특별시 | 남현동 남태령고개 시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43 | 42도3703 | 강** | 2020-07-22 17:25 | 울산광역시 |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44 | 경기32바6500 | 구** | 2020-07-23 09:35 | 경기도 성남시 | 장지역~복정역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45 | 13두2247 | 구** | 2020-07-21 19:49 | 경기도 안양시 |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46 | 13두2247 | 구** | 2020-07-20 18:34 | 경기도 안양시 |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47 | 46모2713 | 국** | 2020-07-25 21:45 | 서울특별시 | 동양미래대학 구로성심병원 정류소앞 시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48 | 63두5987 | 권** | 2020-07-24 16:29 |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49 | 42더8675 | 권** | 2020-07-24 18:19 | 서울특별시 | 서초동 반포IC 상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50 | 18누2763 | 김** | 2020-07-22 14:47 | 경기도 시흥시 | 상봉동 중랑역 건너편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51 | 서울31바6976 | 김** | 2020-07-23 20:17 | 경기도 남양주시 | 삼육대학교(구리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52 | 29너3031 | 김** | 2020-07-24 19:42 | 인천광역시 |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53 | 16부9039 | 김** | 2020-07-16 16:35 | 서울특별시 | 상계10동우체국 - 온수골사거리 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54 | 19로7224 | 김** | 2020-07-24 13:47 | 인천광역시 | 서초동 양재IC 하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55 | 24라0328 | 김** | 2020-07-22 16:01 |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56 | 29오0188 | 김** | 2020-07-25 15:50 | 서울특별시 | 잠원동 잠원현대훼밀리아파트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57 | 63조6140 | 김** | 2020-07-24 09:44 | 전라북도 전주시 |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58 | 14거8646 | 김** | 2020-07-20 19:33 | 서울특별시 |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 | | | | | | |
|---|---|---|---|---|---|---|---|
| 59 | 66주6715 | 김** | 2020-07-25 14:24 | 서울특별시 | 서초동 반포IC 상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60 | 235주6655 | 김** | 2020-07-23 19:17 | 서울특별시 |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61 | 42무6848 | 김** | 2020-07-24 19:34 | 서울특별시 |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62 | 12두4206 | 김** | 2020-07-22 17:22 | 서울특별시 |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63 | 41라5333 | 김** | 2020-07-24 17:27 | 경기도 고양시 | 공릉소방서(구리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64 | 52버7930 | 김** | 2020-07-21 17:43 | 경기도 성남시 | 방배동 남태령고개 시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65 | 서울31사7065 | 김** | 2020-07-23 17:20 | 서울특별시 |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66 | 경기84배1287 | 김** | 2020-07-15 08:30 | 경기도 의정부시 | 서울여대~회랑대사거리 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67 | 24구3444 | 김** | 2020-07-23 20:42 | 서울특별시 |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68 | 47노7876 | 김** | 2020-07-21 20:03 | 강원도 속초시 | 내곡동 시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69 | 52머7837 | 김** | 2020-07-22 09:19 | 경기도 안양시 | 서초동 반포IC 상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70 | 38루0455 | 김** | 2020-07-22 16:41 | 경상남도 통영시 |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71 | 53구6367 | 김** | 2020-07-21 10:15 |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72 | 46저1233 | 김** | 2020-07-22 07:59 | 서울특별시 |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73 | 29너9844 | 김** | 2020-07-24 20:36 | 경기도 남양주시 | 공릉소방서(구리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74 | 서울32바5882 | 김** | 2020-07-20 08:53 | 서울특별시 |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75 | 62주0354 | 김** | 2020-07-23 18:14 | 서울특별시 |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76 | 39조1222 | 김** | 2020-07-20 18:36 | 서울특별시 | 공릉소방서(구리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77 | 48두7525 | 김** | 2020-07-22 08:47 | 경기도 평택시 | 상계동 상계백병원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78 | 12너3935 | 김** | 2020-07-22 19:08 | 서울특별시 | 잠원동 잠원현대훼밀리아파트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79 | 22마7600 | 김** | 2020-07-16 16:35 | 서울특별시 | 상계10동우체국 - 온수골사거리 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80 | 서울32바5988 | 김** | 2020-07-22 17:53 | 서울특별시 | 서울여대~회랑대사거리 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81 | 03서9981 | 김** | 2020-07-20 19:59 | 경기도 고양시 | 상계동 상계백병원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82 | 161다3374 | 김** | 2020-07-23 17:24 | 충청남도 당진시 | 내곡동 시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83 | 17모9671 | 김** | 2020-07-20 08:01 | 서울특별시 |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84 | 50주3875 | 김** | 2020-07-21 18:45 | 서울특별시 | 태릉강릉(서울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85 | 08누5689 | 김** | 2020-07-22 20:00 | 전라남도 나주시 |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86 | 36부9077 | 김** | 2020-07-24 19:59 | 경기도 가평군 | 삼육대학교(구리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87 | 33하7786 | 김** | 2020-07-04 18:23 | 경기도 수원시 | 상봉동 중랑역 건너편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88 | 39노0218 | 김** | 2020-07-20 14:45 |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89 | 09고5793 | 김** | 2020-07-23 19:17 | 서울특별시 |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90 | 48거7648 | 김** | 2020-07-23 19:25 | 경기도 의정부시 |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91 | 42노9460 | 김** | 2020-07-24 18:32 | 서울특별시 |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92 | 51도9041 | 김** | 2020-07-24 09:46 | 경기도 하남시 |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93 | 52수7999 | 김** | 2020-07-23 20:02 | 서울특별시 |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94 | 52주8069 | 김** | 2020-07-22 20:47 | 경기도 남양주시 | 공릉소방서(구리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95 | 17부4286 | 김** | 2020-07-23 17:12 | 경기도 남양주시 | 공릉소방서(구리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96 | 45서3100 | 김** | 2020-07-21 17:23 | 충청남도 서산시 |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97 | 16러1649 | 김** | 2020-07-24 11:12 | 서울특별시 |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98 | 93더5300 | 김** | 2020-07-07 07:45 | 경기도 성남시 | 사당역~이수역사거리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99 | 63나7230 | 김** | 2020-07-21 20:15 | 서울특별시 |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00 | 54두3213 | 김** | 2020-07-24 17:35 | 서울특별시 |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01 | 23다4590 | 김** | 2020-07-24 14:03 |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02 | 15나7149 | 김** | 2020-07-20 16:26 | 서울특별시 |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03 | 33하7934 | 김** | 2020-07-11 17:57 | 경기도 성남시 | 방배동 남태령고개 시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04 | 02소2526 | 김** | 2020-07-24 17:33 | 서울특별시 |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05 | 32부7423 | 김** | 2020-07-22 15:15 | 경상북도 김천시 | 서초동 반포IC 상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06 | 서울87자3541 | 김** | 2020-07-21 17:23 | 서울특별시 | 태릉강릉(서울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07 | 61루2535 | 김** | 2020-07-22 07:48 | 서울특별시 | 내곡동 시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08 | 32도0582 | 김** | 2020-07-22 09:18 | 서울특별시 | 서초동 서초IC 하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09 | 83너3423 | 김** | 2020-07-13 09:57 | 경기도 남양주시 | 서울여대~회랑대사거리 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10 | 55나0339 | 김** | 2020-07-22 19:49 | 서울특별시 |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11 | 서울32버8177 | 김** | 2020-07-25 15:17 | 서울특별시 | 잠원동 잠원현대훼밀리아파트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12 | 228노5953 | 김** | 2020-07-20 17:36 | 경기도 수원시 |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13 | 서울31사2836 | 나** | 2020-07-21 17:50 | 경기도 남양주시 |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14 | 23러1228 | 나** | 2020-07-23 20:10 | 경기도 시흥시 |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15 | 67어7335 | 남** | 2020-07-23 12:13 | 강원도 정선군 |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16 | 81거2865 | 노** | 2020-07-23 19:10 | 경기도 부천시 |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17 | 경기45러2487 | 노** | 2020-07-24 20:31 | 경기도 고양시 | 공릉소방서(구리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18 | 42루4702 | 디** | 2020-07-24 16:24 | 서울특별시 | 서울 송파구 잠실동 22-9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19 | 48고4172 | 류** | 2020-07-24 18:49 | 경상남도 양산시 | 서초동 서초IC 하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 | | | | | | |
|---|---|---|---|---|---|---|---|
| 120 | 48고4172 | 류** | 2020-07-24 18:51 | 경상남도 양산시 | 서초동 양재IC 하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21 | 50누3305 | 문** | 2020-07-20 09:06 | 경기도 성남시 | 서초동 반포IC 상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22 | 서울31사2941 | 문** | 2020-07-22 16:37 | 서울특별시 | 양화대교 북단~남단 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23 | 43누4760 | 민** | 2020-07-24 18:54 | 경기도 성남시 | 서울 송파구 잠실동 20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24 | 39더7043 | 민** | 2020-07-20 12:53 | 경기도 안산시 |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25 | 08부4511 | 박** | 2020-07-13 09:56 | 서울특별시 | 여의도동 3-4 가로판매대51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26 | 46거8391 | 박** | 2020-07-22 08:37 | 전라북도 전주시 | 태릉강릉(서울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27 | 69마4583 | 박** | 2020-07-23 10:29 | 서울특별시 |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28 | 40러4893 | 박** | 2020-07-21 18:41 | 서울특별시 | 공릉소방서(구리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29 | 05머2543 | 박** | 2020-07-24 08:38 | 경기도 과천시 | 방배동 남태령고개 시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30 | 33다8252 | 박** | 2020-07-22 18:42 | 서울특별시 | 공릉소방서(구리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31 | 65머1658 | 박** | 2020-07-22 19:57 | 경기도 남양주시 | 공릉소방서(구리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32 | 43다9807 | 박** | 2020-07-23 20:05 | 서울특별시 | 내곡동 시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33 | 20우6295 | 박** | 2020-07-23 18:22 | 경기도 여주시 | 내곡동 시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34 | 46도0576 | 박** | 2020-07-23 19:10 | 서울특별시 |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35 | 160우6202 | 박** | 2020-07-22 19:37 | 경기도 남양주시 | 공릉소방서(구리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36 | 89저6279 | 박** | 2020-07-21 19:00 | 서울특별시 |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37 | 41서9166 | 박** | 2020-07-22 19:53 | 서울특별시 |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38 | 04더5143 | 박** | 2020-07-16 12:43 | 서울특별시 | 서울 송파구 오금동 34-2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39 | 57소2856 | 박** | 2020-07-21 07:59 | 경기도 시흥시 |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40 | 82노5187 | 박** | 2020-07-22 16:37 | 경기도 고양시 | 양화대교 북단~남단 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41 | 64노2844 | 박** | 2020-07-20 19:04 | 서울특별시 |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42 | 50소1140 | 박** | 2020-07-24 18:11 | 경상북도 구미시 |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43 | 42오5611 | 박** | 2020-07-24 20:39 | 서울특별시 |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44 | 서울32사8258 | 박** | 2020-07-20 17:21 | 인천광역시 |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45 | 60하6916 | 박** | 2020-07-06 20:36 | 경기도 수원시 |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46 | 20어0155 | 박** | 2020-07-20 09:33 | 서울특별시 |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47 | 서울84자8167 | 배** | 2020-07-15 09:49 | 서울특별시 | 여의도동 27-2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48 | 22마4797 | 서** | 2020-07-22 09:40 |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49 | 24어0617 | 설** | 2020-07-20 14:18 | 경기도 성남시 |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50 | 63누0882 | 세** | 2020-07-21 09:36 | 경기도 포천시 |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51 | 68버7994 | 손** | 2020-07-23 20:26 | 경기도 의정부시 | 육사 야구장~화랑대역 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52 | 252저3565 | 손** | 2020-07-22 20:42 | 서울특별시 |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53 | 88서0599 | 송** | 2020-07-23 18:06 | 전라북도 완주군 |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54 | 03나0722 | 송** | 2020-07-23 18:15 | 인천광역시 |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55 | 42주3630 | 신** | 2020-07-26 16:08 | 서울특별시 | 저동1가 삼일로 영락교회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56 | 81오0319 | 신** | 2020-07-17 13:52 | 서울특별시 | 여의도동 27-1 한국투자증권빌딩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57 | 128허8431 | 신** | 2020-07-07 08:38 | 경기도 수원시 | 공릉소방서(구리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58 | 서울31아7547 | 신** | 2020-07-23 13:52 | 경기도 성남시 | 잠원동 잠원현대훼밀리아파트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59 | 127호1104 | 심** | 2020-07-07 10:44 | 대구광역시 | 서초동 반포IC 상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60 | 150우9516 | 심** | 2020-07-23 11:57 |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61 | 34도5647 | 심** | 2020-07-23 20:39 | 경기도 양주시 |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62 | 60호9697 | 안** | 2020-04-14 17:27 | 대구광역시 | 공릉소방서(구리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63 | 92저4924 | 안** | 2020-07-22 17:33 | 경기도 남양주시 |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64 | 66하0478 | 안** | 2020-07-10 14:54 | 서울특별시 | 영등포구 롯데캐슬아이비 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65 | 51부4736 | 안** | 2020-07-23 20:28 | 서울특별시 |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66 | 23러0735 | 양** | 2020-07-20 09:28 | 서울특별시 | 공릉소방서(구리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67 | 36두6103 | 양** | 2020-07-21 19:03 | 서울특별시 | 서울 관악구 봉천동 976-6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68 | 35러6729 | 여** | 2020-07-14 16:28 | 서울특별시 | 연희IC~모래내고가차도 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69 | 22주7398 | 오** | 2020-07-23 09:02 | 경기도 남양주시 | 공릉소방서(구리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70 | 37라0856 | 오** | 2020-07-24 18:19 | 서울특별시 | 서초동 서초IC 하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71 | 49조4006 | 오** | 2020-07-24 12:54 | 경기도 하남시 |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72 | 서울31자1368 | 우** | 2020-07-22 19:47 | 서울특별시 | 육사야구장~서울여자대학교 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73 | 40어2173 | 우** | 2020-07-20 16:07 | 서울특별시 |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74 | 24호2895 | 원** | 2020-07-09 18:18 | 경기도 하남시 |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75 | 130무2396 | 위** | 2020-06-25 07:40 | 서울특별시 | 학여울역~대치우성아파트교차로 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76 | 48가7102 | 유** | 2020-07-24 20:48 | 서울특별시 |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77 | 04두4360 | 유** | 2020-07-23 19:43 | 서울특별시 |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78 | 64무5098 | 윤** | 2020-07-22 18:45 | 경기도 화성시 | 서초동 양재IC 하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79 | 25더4063 | 윤** | 2020-07-21 09:44 | 대구광역시 | 서초동 서초IC 상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80 | 25더4063 | 윤** | 2020-07-21 09:45 | 대구광역시 | 서초동 반포IC 상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 | | | | | | |
|---|---|---|---|---|---|---|---|
| 181 | 65주1429 | 윤** | 2020-07-22 17:44 | 서울특별시 | 종암경찰서~고대앞교차로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82 | 18더3257 | 윤** | 2020-07-20 07:21 | 서울특별시 |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83 | 07더0378 | 윤** | 2020-07-23 07:13 | 경기도 성남시 | 내곡동 시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84 | 49로5203 | 윤** | 2020-07-21 14:09 | 인천광역시 | 서초동 서초IC 하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85 | 49로5203 | 윤** | 2020-07-21 14:10 | 인천광역시 | 서초동 양재IC 하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86 | 26고3933 | 이** | 2020-07-21 20:20 | 경기도 성남시 |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87 | 25우5882 | 이** | 2020-07-22 08:54 | 경기도 성남시 |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88 | 43주3321 | 이** | 2020-07-06 08:39 | 충청남도 천안시 | 양화대교 북단~남단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89 | 56도1568 | 이** | 2020-07-22 20:00 | 경기도 성남시 | 태릉강릉(서울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90 | 11무7884 | 이** | 2020-07-24 20:15 | 경기도 남양주시 | 공릉소방서(구리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91 | 서울32아4019 | 이** | 2020-07-22 10:36 | 서울특별시 |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남단 교차로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92 | 19부2985 | 이** | 2020-07-24 12:07 | 경기도 파주시 |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93 | 56버4183 | 이** | 2020-07-24 17:55 | 인천광역시 |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94 | 58주0442 | 이** | 2020-07-23 18:20 | 경기도 용인시 |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95 | 33부2336 | 이** | 2020-07-23 18:49 | 서울특별시 | 국립현충원~흑석역 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96 | 158루1866 | 이** | 2020-07-21 10:28 | 경기도 시흥시 | 서초동 서초IC 상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97 | 12머6553 | 이** | 2020-07-22 17:26 | 서울특별시 |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98 | 24가0639 | 이** | 2020-07-22 14:49 | 경기도 성남시 |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199 | 338어9551 | 이** | 2020-07-22 17:44 | 경기도 포천시 | 공릉소방서(구리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00 | 24로4917 | 이** | 2020-07-22 14:08 | 서울특별시 | 양재동 양재IC 상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01 | 50노4562 | 이** | 2020-07-23 17:59 | 서울특별시 | 공릉소방서(구리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02 | 82서7063 | 이** | 2020-07-17 16:19 | 경기도 하남시 | 서울 송파구 잠실동 33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03 | 149도8089 | 이** | 2020-07-20 19:22 | 경기도 구리시 | 공릉소방서(구리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04 | 14버0223 | 이** | 2020-07-24 20:36 | 경기도 남양주시 | 삼육대학교(구리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05 | 90머3566 | 이** | 2020-07-21 08:26 | 서울특별시 |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06 | 01마5973 | 이** | 2020-07-17 20:50 | 서울특별시 |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07 | 63나5736 | 이** | 2020-07-24 17:22 | 서울특별시 | 공릉소방서(구리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08 | 11더4341 | 이** | 2020-07-22 07:58 | 서울특별시 | 태릉강릉(서울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09 | 11어3163 | 이** | 2020-07-24 22:04 | 서울특별시 | 개봉동 영화아파트 SK충전소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10 | 80노0559 | 이** | 2020-07-24 07:40 | 경기도 남양주시 | 태릉강릉(서울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11 | 390수4884 | 이** | 2020-07-21 20:33 | 서울특별시 |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12 | 서울35바7914 | 이** | 2020-07-24 17:33 | 서울특별시 |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13 | 48소3306 | 이** | 2020-07-20 19:55 | 서울특별시 |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14 | 46모0522 | 이** | 2020-07-23 20:20 | 서울특별시 | 내곡동 시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15 | 64가4407 | 임** | 2020-07-21 13:41 |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16 | 47고1669 | 임** | 2020-07-12 17:25 | 서울특별시 | 남가좌동 385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17 | 68가8805 | 임** | 2020-07-24 18:30 | 서울특별시 |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18 | 서울31자4098 | 임** | 2020-07-24 17:03 | 서울특별시 | 고려대역~종암사거리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19 | 45누0454 | 임** | 2020-07-23 19:32 | 경기도 과천시 | 내곡동 시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20 | 33우5943 | 장** | 2020-07-20 19:36 | 강원도 춘천시 |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21 | 357모8710 | 장** | 2020-07-21 13:00 | 서울특별시 |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22 | 53루8235 | 장** | 2020-07-03 17:17 | 서울특별시 |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23 | 서울31사8541 | 장** | 2020-07-24 11:42 | 서울특별시 | 잠실역~송파구청 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24 | 35수0309 | 장** | 2020-07-21 17:29 |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25 | 46가1655 | 전** | 2020-07-20 14:31 | 경기도 용인시 | 잠원동 잠원현대훼밀리아파트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26 | 43허4855 | 전** | 2020-06-16 18:27 | 경기도 화성시 | 공릉소방서(구리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27 | 30구8642 | 전** | 2020-07-24 18:58 | 서울특별시 | 서울 송파구 잠실동 20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28 | 66두7262 | 전** | 2020-07-22 11:25 | 경기도 남양주시 |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29 | 54머5028 | 전** | 2020-07-23 19:20 | 경기도 부천시 |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30 | 88마3968 | 정** | 2020-07-24 19:07 | 서울특별시 |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31 | 60하2463 | 정** | 2020-07-10 20:15 | 서울특별시 | 서초동 서초IC 하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32 | 60하2463 | 정** | 2020-07-10 20:18 | 서울특별시 | 서초동 양재IC 하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33 | 서울31바3225 | 정** | 2020-07-24 17:37 | 서울특별시 | 대치동 은마아파트1동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34 | 17조2446 | 정** | 2020-07-24 14:10 | 서울특별시 | 남현동 남태령고개 시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35 | 39서3654 | 정** | 2020-07-22 17:14 | 인천광역시 |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36 | 19서2647 | 정** | 2020-07-21 18:12 | 서울특별시 | 성산동 성산1교~성산2교 교차로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37 | 서울57가7667 | 정** | 2020-07-21 09:46 | 서울특별시 | 남현동 남태령고개 시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38 | 62머7916 | 정** | 2020-07-24 07:29 | 서울특별시 |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39 | 62더7999 | 정** | 2020-07-20 15:41 | 인천광역시 |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40 | 32무3244 | 조** | 2020-07-23 08:50 | 서울특별시 | 삼육대학교(구리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41 | 11더6479 | 조** | 2020-07-23 20:14 | 경기도 양주시 |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 | | | | | | |
|---|---|---|---|---|---|---|---|
| 242 | 225마1671 | 조** | 2020-07-21 12:27 | 서울특별시 |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43 | 서울31사1710 | 조** | 2020-07-22 09:27 | 서울특별시 |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44 | 37누2196 | 주** | 2020-07-23 22:28 | 서울특별시 | 잠원동 잠원현대훼밀리아파트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45 | 45구1834 | 주** | 2020-07-10 14:42 | 서울특별시 | 여의도동 3 여의도역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46 | 15러6350 | 주** | 2020-07-24 08:59 | 서울특별시 | 내곡동 시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47 | 37구3428 | 주** | 2020-07-25 18:41 | 경기도 의정부시 | 서초동 반포IC 상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48 | 37구3428 | 주** | 2020-07-25 20:33 | 경기도 의정부시 | 서초동 양재IC 하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49 | 37구3428 | 주** | 2020-07-25 20:31 | 경기도 의정부시 | 서초동 서초IC 하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50 | 24오7023 | 주** | 2020-07-23 16:24 | 경기도 김포시 | 압구정로데오역~성수대교남단교차로 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51 | 60호2620 | 주** | 2020-07-09 17:01 | 서울특별시 | 잠실동 엘스아파트 111동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52 | 43마3099 | 주** | 2020-07-21 19:01 | 서울특별시 | 상계동 상계백병원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53 | 28더8685 | 주** | 2020-07-23 10:15 | 서울특별시 | 서초동 서초IC 상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54 | 49하4977 | 주** | 2020-07-25 11:03 | 경기도 고양시 | 서초동 반포IC 상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55 | 49호0509 | 주** | 2020-07-26 15:20 | 서울특별시 | 서초동 반포IC 상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56 | 49호0509 | 주** | 2020-07-24 14:23 | 서울특별시 | 서초동 양재IC 하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57 | 49호0509 | 주** | 2020-07-24 14:21 | 서울특별시 | 서초동 서초IC 하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58 | 42하3182 | 주** | 2020-07-26 17:54 | 서울특별시 | 서초동 양재IC 하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59 | 42하3182 | 주** | 2020-07-26 17:52 | 서울특별시 | 서초동 서초IC 하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60 | 68서4951 | 주** | 2020-07-22 07:54 | 서울특별시 |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61 | 83보6375 | 주** | 2020-07-24 19:33 | 서울특별시 | 공릉소방서(구리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62 | 48오7103 | 지** | 2020-07-21 18:11 |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63 | 35버8298 | 차** | 2020-07-22 15:03 | 인천광역시 |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64 | 89더1766 | 차** | 2020-07-14 08:35 | 경기도 남양주시 | 서울여대~희랑대사거리 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65 | 56저2797 | 채** | 2020-06-24 16:37 | 경기도 남양주시 | 한남IC~잠원IC 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66 | 96다9118 | 최** | 2020-07-23 17:45 | 경기도 군포시 |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67 | 서울32사2649 | 최** | 2020-07-22 19:26 | 서울특별시 |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68 | 23호6901 | 최** | 2020-07-06 20:41 |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69 | 35거8435 | 최** | 2020-07-20 16:29 | 서울특별시 | 서울 성동구 천호대로 360 (용답동)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70 | 95누7849 | 최** | 2020-07-24 19:49 | 경기도 동두천시 | 화랑대주유소(서울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71 | 21거1582 | 최** | 2020-07-24 20:20 | 경기도 수원시 | 공릉소방서(구리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72 | 서울31아6364 | 최** | 2020-07-11 10:13 | 서울특별시 | 아차산역(어린이대공원후문)~아차산역사거리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73 | 05너0627 | 최** | 2020-07-22 07:58 | 경기도 성남시 | 내곡동 시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74 | 03조4697 | 최** | 2020-07-24 15:56 | 서울특별시 | 남현동 남태령고개 시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75 | 60호9552 | 쿠** | 2020-07-06 18:04 |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76 | 01누2750 | 큐** | 2020-07-24 14:47 | 서울특별시 | 학여울역~대치우성아파트교차로 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77 | 57나4471 | 태** | 2020-07-24 09:01 | 광주광역시 | 서초동 반포IC 상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78 | 15노6540 | 태** | 2020-07-15 16:02 | 서울특별시 | 삼성교~종합운동장역 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79 | 67누2258 | 한** | 2020-07-23 17:21 | 경기도 광주시 |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80 | 69하0348 | 한** | 2020-07-17 14:42 |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81 | 19로9123 | 한** | 2020-07-24 12:44 |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잠실점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82 | 58고5964 | 한** | 2020-07-07 18:41 | 경기도 남양주시 | 송파구 올림픽회관앞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83 | 30다6321 | 함** | 2020-07-21 11:19 | 인천광역시 | 남현동 남태령고개 시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84 | 34호7502 | 함** | 2020-07-03 18:47 | 서울특별시 |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85 | 서울89자4189 | 허** | 2020-07-21 09:39 | 경기도 의정부시 | 월계동 월계주공아파트1단지 건너편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86 | 56거1387 | 허** | 2020-07-22 08:07 | 경기도 화성시 | 행당동 한양대전철역 1번 출구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87 | 38우8379 | 허** | 2020-07-23 09:37 | 경기도 평택시 | 서초동 반포IC 상행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88 | 83소6652 | 호** | 2020-07-21 19:09 | 서울특별시 | 공릉소방서(구리방향)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89 | 22거2002 | 홍** | 2020-07-17 20:17 | 서울특별시 |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90 | 88머8790 | 홍** | 2020-07-24 18:41 | 경기도 수원시 | 잠실동 송파YMCA 체육관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91 | 서울31바8577 | 홍** | 2020-07-23 09:28 | 경기도 부천시 | 성산동 SK성산대교주유소 건너편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92 | 04고0650 | 홍** | 2020-07-17 20:48 | 경기도 양평군 | 상계동 상계주공아파트 10단지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93 | 서울45나9620 | 황** | 2020-07-23 17:52 | 서울특별시 | 대치동 개포우성2차아파트 12동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94 | 94소0698 | 황** | 2020-07-22 09:47 | 경기도 고양시 | 상계동 마들역 7번출구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295 | 66로6708 | 황** | 2020-07-22 17:57 | 서울특별시 | 상계동 상계백병원 | 전용차로위반 | 50,000 |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521호

##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보통신공사업자 행정처분 내역

| 당 사 자 | |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
| 연번 | 등록번호 | 상 호 및 대표자 | 소재지 | | |
| 1 | 201699 | ㈜기술과정보<br>송정성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9길 72, 1017호 (역삼동)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br>(초급1인 부족) | 1차 영업정지<br>처분 통지서<br>( '20.08.17.~<br>' 20.9.15.) |
| 2 | 140487 | ㈜그린아이씨티<br>정상욱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길 23, 산정빌딩 (여의도동)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br>(중급1,초급1,기능계1인 부족) | 1차 영업정지<br>처분 통지서<br>( '20.08.17.~<br>' 20.9.15.) |
| 3 | 200248 | 크레이코리아인크한국<br>지점(영업소)<br>최진현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27, 센트럴프라자 317호 (서초동)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br>(초급1,초급2,기능계1인 부족) | 1차 영업정지<br>처분 통지서<br>( '20.08.17.~<br>' 20.9.15.) |
| 4 | 200599 | ㈜엔씨디지넷<br>이종훈 |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47길 57, 3층1호(암사동, 강동종합시장)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br>(초급1,기능계1인 부족) | 1차 영업정지<br>처분 통지서<br>( '20.08.17.~<br>' 20.9.15.) |
| 5 | 202239 | ㈜티플러스<br>이정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217, 강남빌딩 3층 (신사동)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미달<br>(기능계1인 부족) | 1차 영업정지<br>처분 통지서<br>( '20.08.17.~<br>' 20.9.15.) |

2. 근거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제66조(영업정지, 등록취소),
동법시행령 제21조, 제50조(영업정지 등) 및 별표8의13

3. 문의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담당자: 조용성(☎(02)2133-2897, 전자우편 q369369@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2530호

## 종합공사시공업 행정처분(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 하고 이 사실을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20.8.28.~2020.9.10.(14일간)
2. 처분대상 및 내용

| 업 체 명<br>(대 표 자) | 업종 및<br>등록번호 | 소 재 지 | 처분사유 | 관련<br>법규 | 처분내용 | 처분<br>근거 |
|---|---|---|---|---|---|---|
| 신원이엔지<br>종합건설㈜<br>(신원식) | 건축공사업<br>03-0606 | 서울특별시<br>송파구<br>백제고분로<br>220,<br>4층(삼전동,<br>젠코아빌딩) |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불이행(2020년 수시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 법<br>제49조<br>제1항 | 시정명령<br>[건설업 등록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자본금, 기술능력, 사무실 등록기준 적합 여부 관련)를 2020.9.10.(목)까지 대한건설협회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법<br>제81조<br>제9호 |

3. 위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행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24으로 문의 바랍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 ◈ 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 제2020-8호

### 2020년 수시 재산변동사항 공고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 수시 재산변동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 소속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직위 | 원장 | 성명 | 송관영 |
|---|---|---|---|---|---|
| | | | | | (단위 : 천원) |
| 본인과의 관계 | 재산의 종류 | 소재지 면적 등 권리의 명세 | 가액<br>(실거래가격) | 비고 | |
| ▶ 건물(소계) | | | 1,473,000 | | |
| 본인 | 아파트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건물 297.00㎡ 중 148.50㎡ | 736,500<br>(295,000) | | |
| 모 | 아파트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건물 297.00㎡ 중 148.50㎡ | 736,500<br>(295,000) | | |
| ▶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소계) | | | 67,710 | | |
| 본인 | 자동차 | 2018년식 벤츠 배기량(1,991cc) | 23,900<br>(34,500) | | |
| 배우자 | 자동차 | 2018년식 벤츠 배기량(1,991cc) | 23,900<br>(34,500) | | |
| 배우자 | 자동차 | 2010년식 도요타 배기량(2,494cc) | 8,680<br>(34,000) | | |
| 배우자 | 자동차 | 2016년식 티볼리 배기량(1,597cc) | 5,615<br>(10,500) | | |

| | | | | |
|---|---|---|---|---|
| 차녀 | 자동차 | 2016년식 티볼리 배기량(1,597cc) | 5,615<br>(10,500) | |
| ▶ 예금(소계) | | | 405,900 | |
| 본인 | | (주)KEB하나은행 4,829, 교보생명보험 24,600, 국민은행 5,000, 삼성화재해상보험 27,544, 신한은행 71,468,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68,333, 우리은행 297 | 202,071 | |
| 배우자 | | 국민은행 16,939, 삼성화재해상보험 50,579, 신한은행 45,208 | 112,726 | |
| 모 |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10, 신한은행 36,019, 우리은행 7 | 36,036 | |
| 차남 | | 신한은행 10,910 | 10,910 | |
| 장녀 | | (주)KEB하나은행 49, 삼성화재해상보험 900, 신한은행 39,053, 우리은행 22 | 40,024 | |
| 차녀 | | (주)KEB하나은행 1,909, 삼성화재해상보험 900, 신한은행 1,324 | 4,133 | |
| ▶ 채무(소계) | | | 673,922 | |
| 본인 | 금융채무 | 신한은행 564,172,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10,000 | 574,172 | |
| 배우자 | 금융채무 | KB캐피탈 4,751, 신한은행 25,000 | 29,751 | |
| 모 | 금융채무 | 신한은행 69,999 | 69,999 | |
| 총 계 | | | 1,272,688 | |

# 구 고 시

◈ 종로구고시 제2020-129호

## 도시계획시설(숭인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38호(1977.07.14.)」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3418호(2017.07.13.)」로 최종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된 숭인근린공원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숭인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작성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20-46호(2020.5.7.)」 실시계획인가 고시한 숭인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고시합니다.
3. 토지 및 물건 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종 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6-176번지 등 59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2) 명　　칭 : 도시계획시설(숭인근린공원) 조성사업
  3) 사업내용 :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다. 사업면적 : 56필지 1,632.80㎡ ▶ 59필지 1,632.90㎡ (3필지 0.1㎡ 증)
라. 변경사유 : 토지분할로 인한 지번 및 편입면적 등 변동사유 발생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2)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바. 사업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 당초: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0. 12. 31.까지
  - 변경: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1. 12. 31.까지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붙임참조
아. 공고방법: 서울시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자.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종로구청 공원녹지과(☎02-2148-28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숭인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변경 전)

| 연번 | 소재지 | 지목 |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비고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소유권 이외의권리 | |
| 계 | | | | | | | | | | |
| 1 | 숭인동 56-176 | 대 | 32.1 | 32.1 | 한혜승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360-20 광진동양파라곤 102-902 | | | | |
| 2 | 숭인동 56-175 | 대 | 32.1 | 32.1 | 장미르 | 경기도 양주시 옥정서로 254 301동 406호 | | | | |
| 3 | 숭인동 56-189 | 임야 | 49.9 | 49.9 | 정기성 | 서울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43-1 | | | | |
| 4 | 숭인동 56-183 | 임야 | 49.9 | 49.9 | 승인숙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36길 14 화성빌딩 2층 | | | | |
| 5 | 숭인동 56-164 | 대지 | 7.9 | 7.9 | 박온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산 4 | | | | |
| 6 | 숭인동 56-185 | 임야 | 46.6 | 46.6 | 승인숙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36길 14 화성빌딩 2층 | | | | |
| 7 | 숭인동 56-181 | 임야 | 19.8 | 19.8 | 승인숙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36길 14 화성빌딩 2층 | | | | |
| 8 | 숭인동 56-157 | 임야 | 87.6 | 87.6 | 윤오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0-108 | | | | |
| 9 | 숭인동 56-155 | 임야 | 46.9 | 7.0 | 이정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6-155 | | | | |
| | | | | | 김중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15-120 | | | | |
| 10 | 숭인동 56-156 | 임야 | 12.6 | 12.6 | 이경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산 4 | | | | |
| 11 | 숭인동 58-516 | 임야 | 114.7 | 114.7 | 강경옥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9-7 향촌아파트 101-401 | | | | |
| | | | | | 유난숙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518번길 15 206동 901호 (보정동, 포스홈타운1단지) | | | | |
| 12 | 숭인동 56-252 | 임야 | 13.0 | 13.0 | 김순열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동 101 | 서울시 | | 권리자(압류) | |
| | | | | | | | 국세청 | | 근저당권자 | |
| 13 | 숭인동 58-529 | 임야 | 188.4 | 188.4 | 황석균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19-4 | | | | |
| 14 | 숭인동 58-521 | 임야 | 19.8 | 19.8 | 김종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8-526 | | | | |
| 15 | 숭인동 58-482 | 임야 | 23.1 | 23.1 | 유종옥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8-482 | | | | |
| 16 | 숭인동 58-520 | 임야 | 5.3 | 5.3 | 이만봉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8-520 | | | | |
| 17 | 숭인동 58-484 | 임야 | 16.5 | 16.5 | 이복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8-484 | | | | |
| 18 | 숭인동 58-527 | 임야 | 6.3 | 6.3 | 장진룡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8-531 | | | | |
| 19 | 숭인동 58-531 | 임야 | 27.4 | 27.4 | 장진룡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8-531 | | | | |
| 20 | 숭인동 58-485 | 임야 | 75.4 | 75.4 | 심판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8-485 | | | | |
| 21 | 숭인동 58-488 | 임야 | 29.8 | 29.8 | 조군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8-488 | | | | |
| 22 | 숭인동 57-42 | 잡 | 78.7 | 12.0 | 김인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7-26 | | | | |
| 23 | 숭인동 57-54 | 대 | 47.3 | 33.0 | 박주형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556 | 서울시 | | 권리자 (압류) | |
| 24 | 숭인동 57-56 | 임야 | 24.1 | 7.0 | 유덕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7-56 | | | | |

| | | | | | | | | | | |
|---|---|---|---|---|---|---|---|---|---|---|
| 25 | 숭인동 57-1 | 대지 | 69.4 | 15.0 | 도정자 |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51 한성아파트 105동 504호 | | | | |
| 26 | 숭인동 58-494 | 임야 | 16.5 | 16.5 | 김용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산4 | | | | |
| 27 | 숭인동 58-496 | 임야 | 26.4 | 26.4 | 임한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8-496 | | | | |
| 28 | 숭인동 58-497 | 임야 | 23.1 | 23.1 | 이현택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8-497 | | | | |
| 29 | 숭인동 58-498 | 임야 | 8.9 | 8.9 | 김태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8-498 | | | | |
| 30 | 숭인동 58-38 | 임야 | 49.6 | 49.6 | 홍진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8-38 | | | | |
| 31 | 숭인동 58-13 | 임야 | 6.3 | 6.3 | 김교영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1가 36-23 | | | | |
| | | | | | 강경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77-1 아이파크빌102-202 | | | | |
| 32 | 숭인동 58-1 | 대 | 36.4 | 24.0 | 박진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6가 209-140 | | | | |
| 33 | 숭인동 58-462 | 대 | 16.5 | 16.5 | 김교영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1가 36-23 | | | | |
| | | | | | 강경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77-1 아이파크빌102-202 | | | | |
| 34 | 숭인동 58-464 | 대 | 5.0 | 5.0 | 김교영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1가 36-23 | | | | |
| | | | | | 강경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77-1 아이파크빌102-202 | | | | |
| 35 | 숭인동 58-543 | 대 | 28.8 | 28.8 | 이재윤 |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촌동 158-2 | | | | |
| 36 | 숭인동 58-514 | 대 | 52.9 | 52.9 | 이재윤 |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촌동 158-2 | | | | |
| 37 | 숭인동 58-175 | 임야 | 5.3 | 5.3 | 민태학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녹번동 75-20 | | | | |
| | | | | | 김교영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1가 36-23 | | | | |
| 38 | 숭인동 58-434 | 임야 | 10.6 | 10.6 | 도영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68-66 | | | | |
| 39 | 숭인동 58-425 | 임야 | 1.3 | 1.3 | 김교영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1가 36-23 | | | | |
| | | | | | 강경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77-1아이파크빌102-202 | | | | |
| 40 | 숭인동 58-413 | 임야 | 13.2 | 13.2 | 박형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51-53 | | | | |
| 41 | 숭인동 58-414 | 임야 | 0.7 | 0.7 | 김교영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1가36-23 | | | | |
| | | | | | 강경원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77-1아이파크빌102-202 | | | | |
| 42 | 숭인동 68-7 | 도로 | 26.4 | 26.4 | 배경희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14 목동신시가지아파트 804-905 | | | | |
| 43 | 숭인동 68-16 | 임야 | 16.5 | 16.5 | 김경희 |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두령이길 10-10 | | | | |
| 44 | 숭인동 72-36 | 도로 | 287.6 | 2.0 | 재단법인보성전문학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1 | | | | |
| 45 | 숭인동 68-49 | 임야 | 165.6 | 60.0 | 조후연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235-33 | | | | |
| | | | | | 박소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7-6 청명마을 벽산아파트 332-1402 | | | | |
| 46 | 숭인동 68-65 | 대 | 1.7 | 1.7 | 임종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68-68 | | | | |

| | | | | | | | | | | |
|---|---|---|---|---|---|---|---|---|---|---|
| 47 | 숭인동 68-58 | 임야 | 2.6 | 2.6 | 김정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68-69 | | | | |
| 48 | 숭인동 68-57 | 임야 | 2.6 | 2.6 | 이병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68-63 | | | | |
| 49 | 숭인동 68-56 | 대 | 8.6 | 8.6 | 박차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486-2 | | | | |
| 50 | 숭인동 68-61 | 임야 | 8.3 | 8.3 | 김경희 |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두령이길 10-10 | | | | |
| 51 | 숭인동 68-3 | 임야 | 6.6 | 6.6 | 경태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8-445 | | | | |
| 52 | 숭인동 68-1 | 대 | 13.2 | 13.2 | 암촌종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의동 37 | | | | |
| | | | | | 지산훈 |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4-2 | | | | |
| 53 | 숭인동 58-341 | 대 | 93.6 | 15.0 | 윤기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8-341 | 창신3동 새마을금고 | 종로구 지봉로 99-1(창신동) | 근저당권자 | |
| 54 | 숭인동 58-277 | 임야 | 43.0 | 43.0 | 남상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8-277 | | | | |
| 55 | 숭인동 58-273 | 임야 | 39.7 | 39.7 | 윤기석 | 경북 상주군 화북면 중열리 2구 | | | | |
| 56 | 숭인동 58-542 | 임야 | 165.3 | 165.3 | 강창근 |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 187 | | | | |

## 수용 또는 사용 할 물건조서

▢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숭인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연번 | 소재지 | 물건의 종류 | 구조 규격 | 면적(㎡) |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비고 |
|---|---|---|---|---|---|---|---|---|---|---|---|
| | | | |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 1 | 숭인동 56-155 | 일반건축물 | 세멘 부럭조 | 50.6 | 4.1 | 이정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6-155 | | | | |
| | | | | | | 김중삼 | 서울특별시 종로구창신동 615-120 | | | | |
| 2 | 숭인동 58-516 | 무허가 | - | 68.5 | 31.1 | 강경옥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9-7 향촌아파트 101-401 | | | | |
| | | | | | | 유난숙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741 푸르지오아파트 101-401 | | | | |
| 3 | 숭인동 58-1 | 무허가 | 벽돌 | 46.5 | 14.2 | 박진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6가 209-140 | | | | |

#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조서

▢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숭인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변경 후)

| 연번 | 소재지 | 지목 |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비고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소유권 이외의권리 | |
| 계 | | | | | | | | | | |
| 1 | 숭인동 56-176 | 대 | 32.1 | 32.1 | 한혜승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동 360-20 광진동양파라곤 102-902 | | | | |
| 2 | 숭인동 56-175 | 대 | 32.1 | 32.1 | 장미르 | 경기도 양주시 옥정서로 254 301동 406호 | | | | |
| 3 | 숭인동 56-189 | 임야 | 49.9 | 49.9 | 정기성 | 서울시 성동구 상왕십리동 43-1 | | | | |
| 4 | 숭인동 56-183 | 임야 | 49.9 | 49.9 | 승인숙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36길 14 화성빌딩 2층 | | | | |
| 5 | 숭인동 56-164 | 대지 | 7.9 | 7.9 | 박온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산 4 | | | | |
| 6 | 숭인동 56-185 | 임야 | 46.6 | 46.6 | 승인숙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36길 14 화성빌딩 2층 | | | | |
| 7 | 숭인동 56-181 | 임야 | 19.8 | 19.8 | 승인숙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36길 14 화성빌딩 2층 | | | | |
| 8 | 숭인동 56-157 | 임야 | 87.6 | 87.6 | 윤오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60-108 | | | | |
| 9 | 숭인동 56-267 | 임야 | 6.9 | 6.9 | 이정원(1/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6-155 | | | | 지적분할 (숭인동56-155) |
| | | | | | 김중삼(1/2)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15-120 | | | | |
| 10 | 숭인동 56-156 | 임야 | 12.6 | 12.6 | 이경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산 4 | | | | |
| 11 | 숭인동 58-516 | 임야 | 114.7 | 114.7 | 강경옥(1/2)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9-7 향촌아파트 101-401 | | | | |
| | | | | | 유난숙(1/2)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518번길 15 206동 901호(보정동, 포스홈타운1단지) | | | | |
| 12 | 숭인동 56-252 | 임야 | 13.0 | 13.0 | 김순열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동 101 | 서울시 | | 권리자(압류) | |
| | | | | | | | 국세청 | | 근저당권자 | |
| 13 | 숭인동 58-529 | 임야 | 188.4 | 188.4 | 황석균 | 서울특별시 종로구 옥인동 19-4 | | | | |
| 14 | 숭인동 58-521 | 임야 | 19.8 | 19.8 | 김종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8-526 | | | | |
| 15 | 숭인동 58-482 | 임야 | 23.1 | 23.1 | 유종옥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8-482 | | | | |
| 16 | 숭인동 58-520 | 임야 | 5.3 | 5.3 | 이만봉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8-520 | | | | |
| 17 | 숭인동 58-484 | 임야 | 16.5 | 16.5 | 이복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8-484 | | | | |
| 18 | 숭인동 58-527 | 임야 | 6.3 | 6.3 | 장진룡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8-531 | | | | |
| 19 | 숭인동 58-531 | 임야 | 27.4 | 27.4 | 장진룡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8-531 | | | | |
| 20 | 숭인동 58-485 | 임야 | 75.4 | 75.4 | 심판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8-485 | | | | |
| 21 | 숭인동 58-488 | 임야 | 29.8 | 29.8 | 조군섭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8-488 | | | | |

| | | | | | | | | | | |
|---|---|---|---|---|---|---|---|---|---|---|
| 22 | 숭인동 57-78 | 잡 | 10.4 | 10.4 | 김인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7-26 | | | | 지적 분할<br>(숭인동57-42) |
| 23 | 숭인동 57-79 | 대 | 40.0 | 40.0 | 박주형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556 | 서울시 | | 권리자 (압류) | 지적분할<br>(숭인동57-54) |
| 24 | 숭인동 57-80 | 임야 | 6.4 | 6.4 | 유덕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7-56 | | | | 지적분할<br>(숭인동57-56) |
| 25 | 숭인동 57-77 | 대지 | 14.7 | 14.7 | 도정자 | 경기도 구리시 이문안로 51<br>한성아파트 105동 504호 | | | | 지적분할<br>(숭인동57-1) |
| 26 | 숭인동 58-494 | 임야 | 16.5 | 16.5 | 김용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산4 | | | | |
| 27 | 숭인동 58-496 | 임야 | 26.4 | 26.4 | 임한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8-496 | | | | |
| 28 | 숭인동 58-497 | 임야 | 23.1 | 23.1 | 이현택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8-497 | | | | |
| 29 | 숭인동 58-498 | 임야 | 8.9 | 8.9 | 김태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8-498 | | | | |
| 30 | 숭인동 58-38 | 임야 | 49.6 | 49.6 | 홍진한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8-38 | | | | |
| 31 | 숭인동 58-13 | 임야 | 6.3 | 6.3 | 김교영(1/2)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1가 36-23 | | | | |
| | | | | | 강경원(1/2)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br>1477-1 아이파크빌102-202 | | | | |
| 32 | 숭인동 58-597 | 대 | 19.6 | 19.6 | 박진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6가 209-140 | | | | 지적분할<br>(숭인동58-1) |
| 33 | 숭인동 58-462 | 대 | 16.5 | 16.5 | 김교영(1/2)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1가 36-23 | | | | |
| | | | | | 강경원(1/2)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br>1477-1 아이파크빌102-202 | | | | |
| 34 | 숭인동 58-464 | 대 | 5.0 | 5.0 | 김교영(1/2)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1가 36-23 | | | | |
| | | | | | 강경원(1/2)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br>1477-1 아이파크빌102-202 | | | | |
| 35 | 숭인동 58-543 | 대 | 28.8 | 28.8 | 이재윤 |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촌동 158-2 | | | | |
| 36 | 숭인동 58-514 | 대 | 52.9 | 52.9 | 이재윤 |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촌동 158-2 | | | | |
| 37 | 숭인동 58-175 | 임야 | 5.3 | 5.3 | 민태학(1/2)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녹번동 75-20 | | | | |
| | | | | | 김교영(1/2)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1가 36-23 | | | | |
| 38 | 숭인동 58-434 | 임야 | 10.6 | 10.6 | 도영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68-66 | | | | |
| 39 | 숭인동 58-425 | 임야 | 1.3 | 1.3 | 김교영(1/2)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1가 36-23 | | | | |
| | | | | | 강경원(1/2)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br>1477-1아이파크빌102-202 | | | | |
| 40 | 숭인동 58-413 | 임야 | 13.2 | 13.2 | 박형숙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51-53 | | | | |
| 41 | 숭인동 58-414 | 임야 | 0.7 | 0.7 | 김교영(1/2)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1가36-23 | | | | |
| | | | | | 강경원(1/2)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br>1477-1아이파크빌102-202 | | | | |
| 42 | 숭인동 68-7 | 도로 | 26.4 | 26.4 | 배경희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br>314 목동신시가지아파트 804-905 | | | | |
| 43 | 숭인동 68-16 | 임야 | 16.5 | 16.5 | 김경희 |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두렁이길 10-10 | | | | |

| | | | | | | | | | | |
|---|---|---|---|---|---|---|---|---|---|---|
| 44 | 숭인동 72-264 | 도로 | 1.2 | 1.2 | 재단법인보성전문학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1 | | | | 지적분할(숭인동72-36) |
| 45 | 숭인동 68-82 | 임야 | 40.5 | 40.5 | 조후연(1/2)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235-33 | | | | 지적분할(숭인동68-49) |
| | | | | | 박소연(1/2)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7-6 청명마을 벽산아파트 332-1402 | | | | |
| 46 | 숭인동 68-83 | 임야 | 4.5 | 4.5 | 조후연(1/2)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235-33 | | | | 지적분할(숭인동68-49) |
| | | | | | 박소연(1/2)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7-6 청명마을 벽산아파트 332-1402 | | | | |
| 47 | 숭인동 68-84 | 임야 | 15.1 | 15.1 | 조후연(1/2)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235-33 | | | | 지적분할(숭인동68-49) |
| | | | | | 박소연(1/2)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7-6 청명마을 벽산아파트 332-1402 | | | | |
| 48 | 숭인동 68-85 | 임야 | 2.3 | 2.3 | 조후연(1/2) |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235-33 | | | | 지적분할(숭인동68-49) |
| | | | | | 박소연(1/2)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7-6 청명마을 벽산아파트 332-1402 | | | | |
| 49 | 숭인동 68-65 | 대 | 1.7 | 1.7 | 임종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68-68 | | | | |
| 50 | 숭인동 68-58 | 임야 | 2.6 | 2.6 | 김정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68-69 | | | | |
| 51 | 숭인동 68-57 | 임야 | 2.6 | 2.6 | 이병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68-63 | | | | |
| 52 | 숭인동 68-56 | 대 | 8.6 | 8.6 | 박차출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486-2 | | | | |
| 53 | 숭인동 68-61 | 임야 | 8.3 | 8.3 | 김경희 |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두렁이길 10-10 | | | | |
| 54 | 숭인동 68-3 | 임야 | 6.6 | 6.6 | 경태웅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8-445 | | | | |
| 55 | 숭인동 68-1 | 대 | 13.2 | 13.2 | 암촌종구(1/2)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의동 37 | | | | |
| | | | | | 지산훈(1/2) |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4-2 | | | | |
| 56 | 숭인동 58-598 | 대 | 13.5 | 13.5 | 윤기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8-341 | 창신3동 새마을금고 | 종로구 지봉로 99-1(창신동) | 근저당권자 | 지적분할(숭인동58-341) |
| 57 | 숭인동 58-277 | 임야 | 43.0 | 43.0 | 남상목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8-277 | | | | |
| 58 | 숭인동 58-273 | 임야 | 39.7 | 39.7 | 윤기석 | 경북 상주군 화북면 중열리 2구 | | | | |
| 59 | 숭인동 58-542 | 임야 | 165.3 | 165.3 | 강창근 | 강원도 춘천시 운교동 187 | | | | |

# 수용 또는 사용 할 물건조서

▢ 사 업 명: 도시계획시설(숭인근린공원)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 연번 | 소재지 | 물건의 종류 | 구조 규격 | 면적(㎡) |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비고 |
|---|---|---|---|---|---|---|---|---|---|---|---|
| | | | | 전체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 1 | 숭인동 56-267 | 일반건축물 | 세멘 부럭조 | 50.6 | 4.1 | 이정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56-155 | | | | 지적 분할 (숭인동 56-155) |
| | | | | | | 김중삼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 615-120 | | | | |
| 2 | 숭인동 58-516 | 무허가 | - | 68.5 | 31.1 | 강경옥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9-7 향촌아파트 101-401 | | | | |
| | | | | | | 유난숙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518번길 15 206동 901호(보정동, 포스홈타운1단지) | | | | |
| 3 | 숭인동 58-597 | 무허가 | 벽돌 | 46.5 | 14.2 | 박진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6가 209-140 | | | | 지적 분할 (숭인동 58-1) |

◈ 종로구고시 제2020-132호

##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65호(2010. 2. 25.)로 결정된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운니동 8-1번지 일대 대지내 공지(전면공지) 변경에 대하여 2020년 제3차 종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0. 6. 25.)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종 로 구 청 장

1.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도 : 변경

| 기 정 | 변 경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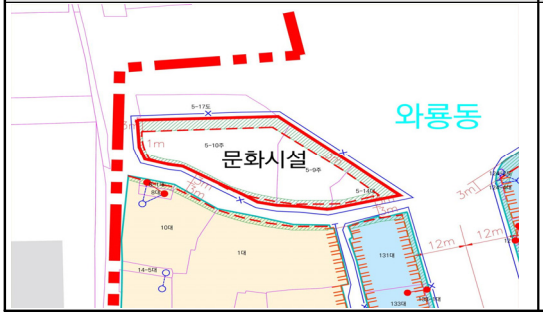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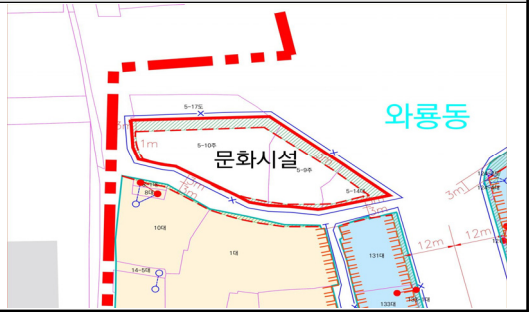 |



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변경 사유서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 변 경<br>- 위치 : 운니동 8-1번지 일대<br>- 내용 : 대지내 공지계획 결정도 변경 | · 돈화문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당시(서울시고시 제2010-65호) 돈화문로11가길 일부 구간에 건축한계선 변경(도로중심으로부터 4m→3m)되었으나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변경)도면」에 미 반영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열람장소 : 종로구청 건축과(☎2148-281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로구고시 제2020-134호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2가 93번지 상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종 로 구 청 장

1. 사 업 명 : 명륜2가 93번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대표 이창하, 이창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
3. 사업개요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2가 93번지
나. 대지면적 : 809.9㎡
다. 사업규모 : 지하2층/지상7층, 연면적 2,707.69㎡,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주택) 5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2020. 9. 30 ~ 2021. 6. 30.
5. 관계법률에 의거 의제 처리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6. 기 타 : 관련도서(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조건 포함)는 종로구청 도시개발과 (☎02-2148-268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용산구고시 제2020-151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건교부 고시 제1963-560(1963. 09. 19.)호로 결정 고시된『청파동2가 10-7 ~ 104-6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도로과:☎02-2199-7856, 건설관리과 ☎02-2199-7690)에 비치하고 토지,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8월 27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 업 의 종 류 및 명 칭 | 사 업 구 간 | 사업규모 | 사업시행자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고시 |
|---|---|---|---|---|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br>명칭: 청파동2가 10-7 ~104-6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청파동2가<br>10-7 ~ 104-6 | 폭:6m<br>연장:90m | 용산구청장 | 건교부고시<br>제560호<br>(1963. 9. 19.) |

나.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

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 별첨

라. 토지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별첨

붙임 :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토지조서 1부. 끝.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청일빌딩
청파하우드
쌍용자동차
동진주택
화원빌라
삼일교회C관
삼일교회
예인고시원
SK주유소
귀뚜라미 보일러
동진주택
금화빌
엘마레
쌍용자동차
청파타워빌라
커피더캠프
에프에스 휘트니스
청석빌라
청파 하이츠빌라
특새푸드 편의점
삼성디지털 프라자
현대리서치 연구소
삼일24시 슈퍼마켓
정가악회
한국약학 교육평가원
은행연립
삼일기사식당
동민상사
고래할인문고
쌍대포
청파로미쁘다
청파어린이 영어도서관
덕수빌라
청파동 주민센터
스시사이꼬
호텔더 디자이너스
CU
GS25
청파어린이집
크린에이드
BS빌딩
마포식당
뚜레쥬르
숙명여대입구 교차로
갈월동지하차도
리소헤어
달다
원스동물병원
메디팜 미래로약국
청파로47길
숙대포토
서울청파3가 우편취급국
한입소반
정일품 축산마트
하나
베나레스

##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용산구청장
▣ 사업명칭 : 청파동2가 10-7 ~ 104-6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연번 | 소재지 (위치) | 지목 | 지적 면적 (㎡) | 편입 면적 (㎡) |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비고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소유권이외의 권리 | |
| 1 | 21-3 | 대 | 4 | 4 | 정광원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3가 107-51 | | | | |
| 2 | 22-3 | 대 | 1.8 | 1.8 | 김영봉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53길14 (청파동2가) | ㈜국민은행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남영동지점) | 근저당권 | 공동담보 [건물] 청파동2가22 |
| 3 | 28-11 | 대 | 3.2 | 3.2 | 유재인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609-1 한진아파트 212-603 | 삼화제지(주)<br>중소기업 은행 |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오산가좌로415-14<br>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50 (을지로지점) | 근저당권 | |
| 4 | 28-10 | 대 | 7.8 | 7.8 | 김영화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동1가 1-35 | 용산구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60 | 압류 | |
| 5 | 104-34 | 대 | 1.2 | 1.2 | 박경자 | 전남 광주시 북구 우산동 506-6 | | | | |

## 물 건 조 서

| 연번 | 소재지 (위치) | 물건의 종류 | 규격 및 구조 | 면적 (㎡) | 물건 소유자 | | 이해관계인 |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소유권이외의 권리 |
| 1 | 22-3 | 지하 건물 | 철근 콘크리트조 | 2.8 | 한광일 | 청파동3가 118-137 | | | |
| | | 대문 | 철제 | 1식 | | | | | |

◈ 동대문구고시 제2020-90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건설교통부고시 제1997-194호(1997.06.1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81호(1997.08.20.)로 지형도면 고시되고 동대문구공고 제2020-691호(2020.06.29.)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한 「망우로21길(휘경동 267-42~255-40) 도로확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2020년 8월 27일
동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동 267-42 ~ 255-40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 업 명 : 망우로21길 도로확장
라. 사업의 규모 : 도로확장, 폭 6m→8m, 연장 7m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동대문구청장
  2)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25(용두동)
바. 사업착공 및 준공년월일 : 인가일로부터 2년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도로과(☎2127-48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망우로21길 도로확장]

| 연번 | 소재지 | | 물건의 종 류 | 규격및 구조 | 편입 면적 (㎡) | 소 유 자 | | 이해관계인 | | | 비고 (저촉필지) |
|---|---|---|---|---|---|---|---|---|---|---|---|
| | 동 | 지 번 | | |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권리관계 | |
| 1 | 휘경2동 | 267-73 | 지층 | 연와조 | 2 | 남화강 | 동대문구 망우로21길 97-2 | | | | 267-137 |
| | | | 1층 | 연와조 | 2 | | | | | | |
| | | | 2층 | 연와조 | 2 | | | | | | |
| | | | 판넬 가건물 | | 3 | | | | | | |

◈ 구로구고시 제2020-169호

## 도시관리계획(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90호(2016.12.01)로 변경 결정된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획지계획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결정(경미한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구 로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위치한 도시계획시설(도로, 대1-48) 집행계획에 따른 도로 및 획지면적 변경 등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하는 사항임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조서
   1)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구분 | 규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최초결정일 | 비고 |
|---|---|---|---|---|---|---|---|---|---|---|---|
| | 기정 | 류별 | 번호 | 폭원 (m) | | | | | | | |
| 기정 | 대로 | 1 | 48 | 35 | 주간선 | 807 (340) | 신도림동 418-10 (광3-2) | 신도림동 281-132 (북측구역계) | 일반 도로 | 건고393호 (78.12.7) | 십자로 |
| 변경 | 대로 | 1 | 48 | 35 | 주간선 | 807 (340) | 신도림동 418-10 (광3-2) | 신도림동 281-132 (북측구역계) | 일반 도로 | 건고393호 (78.12.7) | 십자로 |

○ 도로변경 사유서

| 변경전도로명 | 변경후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대로 1-48 | 대로 1-48 | · 도로폭원변경 - 가각부 변경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부 실효구간 집행계획에 따라 도로 폭원(가각부)을 변경하고자 함 |

2)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경미한 변경)조서
○ 획지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 구분 | 가구 번호 | 획지번호 | 지번 | 면적 (㎡) | 계획내용 | 비고 |
|---|---|---|---|---|---|---|
| 기정 | B5 | 2(가) | 419-21구, 430-13대, 430-14대, 431-6대, 431-7대, 431- 9대, 431-10대, 431-13대, 431-29대, 432-4전, 432-5전, 432-6대, 432-9대, 432-11대, 432-12대, 433-17대, 433-18대, 433-20대, 433-21대, 433-23대, 433-24대, 433-30대, 435-1도, 435-16장, 435-17도 432-37전, 432-38대, 432-36전, 431-30대 | 2,627.5 | 획지선 지정 | |
| 변경 | B5 | 2(가) | 419-21구, 430-13대, 430-14대, 431-6대, 431-7대, 431- 9대, 431-10대, 431-13대, 431-29대, 432-4전, 432-5전, 432-6대, 432-9대, 432-11대, 432-12대, 433-17대, 433-18대, 433-20대, 433-21대, 433-23대, 433-24대, 433-30대, 435-1도, 435-16장, 435-17도 | 2,569.5 | 획지선 지정 | |

○ 획지 변경 사유서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 획지면적 변경 | ·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에 따른 획지면적 변경 |

3) 그외 기타 지구단위계획 : 변경없음

3. 관계도면 : 지형도면(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 첨부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신관3층) 도시계획과(☎02-860-29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 및 획지 및 건축물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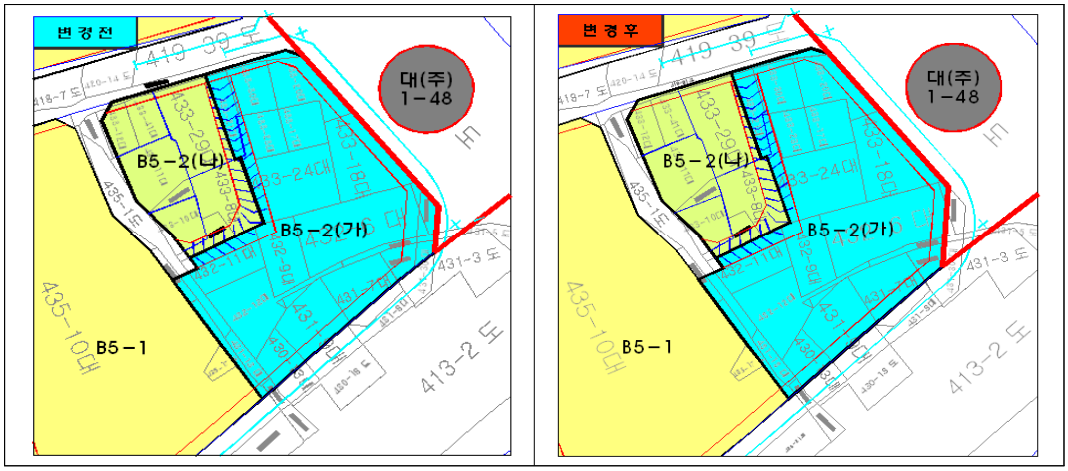

◈ 강동구고시 제2020-145호

## 도시계획시설(암사역사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85호(2006.5.1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29호(2006.9.28)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며, 강동구 고시 제2020-138호(2020.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암사역사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변경인가를 위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3)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20년 8월 27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당초: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36-3, 137-6, 137-7, 192-3(4필지)
- 변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136-3, 137-6, 137-7, 192-4(4필지)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1) 성명: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2)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25(성내동)

다.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도시계획시설(암사역사공원) 사업

라. 사업의내용(변경없음): 공원조성(토지보상)

마. 규　　모(변경없음): 토지보상 1,509㎡

바. 사업기간(변경없음):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1. 12. 31.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따로붙임

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푸른도시과(☎02-3425-6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 연번 | 소재지 | | 지목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소 유 자 | | | 이해관계인 | | | 비고 |
|---|---|---|---|---|---|---|---|---|---|---|---|---|---|---|
| | 당초 | 변경 |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성명 | 주 소 | 지분 | 성명 | 주 소 | 소유권이외권리명세 | |
| 계 | 4필지 | 4필지 | | 1,551 | 1,509 | 1,509 | 1,509 | | | | | | | |
| 1 | 136-3 | 136-3 | 전 | 741 | 741 | 741 | 741 | 안*용 | 서울특별시 송파구 **로 ***, ***동 ****호(**동,********) | 480/1920 | | | | |
| | | | | | | | | 김*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 320/1920 | 송*호 | 충청북도 청주시 **구 **동 ***-*, ***호 | 근저당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
| | | | | | | | | 박*식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산**-* | 80/1920 | | | | |
| | | | | | | | | 이*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가 ***-** | 80/1920 | | | | |
| | | | | | | | | 김*성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 **동 ***호 | 80/1920 | | | | |
| | | | | | | | | 홍*기 | 인천광역시 계양구 **로 ***, *동 ****호 (**동, **아파트) | 80/1920 | | | | |
| | | | | | | | | 이*주 | 서울특별시 동작구 **로 ***, ***동 ****호 (**동, *****아파트) | 240/1920 | | | | |
| | | | | | | | | 김*정 | 서울특별시 서초구 **로**길 **, ***동 ***호 (**동, ****** 아파트) | 80/1920 | | | | |
| | | | | | | | | 김*영 | 서울특별시 강동구 ***로***길 **-*, ***호(*동) | 80/1920 | | | | |
| | | | | | | | | 이*형 |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동 ****호 (**동, *******) | 160/1920 | | | | |
| | | | | | | | | 김*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로***번길 **, ***동 ***호(**동, ******아파트) | 160/1920 | | | | |
| | | | | | | | | 강*호 | 경기도 부천시 ***로 ***, ***동 ***호 (*동, *****) | 80/1920 | | | | |
| 2 | 137-6 | 137-6 | 전 | 331 | 331 | 331 | 331 | 신*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길 **-*(**동) | 3/9 | | | | |
| | | | | | | | | 김*연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로 ***, ***동 ****호 (**동, ****아파트) | 2/9 | | | | |
| | | | | | | | | 김*경 |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길 **, ***호 (**동, ****) | 2/9 | | | | |
| | | | | | | | | 김*화 |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길 **, ***동 ***호(**동, **아파트) | 2/9 | | | | |
| 3 | 137-7 | 137-7 | 전 | 331 | 331 | 331 | 331 | 박*택 | 서울특별시 도봉구 ***로**길 **-**, ***호 (**동, *******) | | | | | |
| 4 | 192-3 | 192-4 | 전 | 148 | 106 | 106 | 106 | 사회복지법인 ******* |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길 **(**동) | | | | | |

# 사용 또는 수용할 물건조서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 구분 | 연번 | 소재지 |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면적 및 수량 | 이용현황 | 소 유 자 | | | 이해관계인 | | | 비고 |
|---|---|---|---|---|---|---|---|---|---|---|---|---|---|
| | | | | | | | 성명 | 주 소 | 지분 | 성명 | 주 소 | 소유권이외권리명세 | |
| 당초 | 1 | 136-3 | 비닐하우스 | 비닐, 보온덮개 | 890㎡, 4동 | 농업용 | 안*용 | 서울특별시 송파구 **로 ***, ***동 ****호(**동,********) | 480/1920 | | | | |
| | | | | | | | 김*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 320/1920 | 송*호 | 충청북도 청주시 **구 **동 ***-*, ***호 | 근저당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
| | | | | | | | 박*식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 산**-* | 80/1920 | | | | |
| | | | | | | | 이*규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동*가 ***-** | 80/1920 | | | | |
| | | | | | | | 김*성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 **동 ***호 | 80/1920 | | | | |
| | | | | | | | 홍*기 | 인천광역시 계양구 **로 ***, *동 ****호(**동, **아파트) | 80/1920 | | | | |
| | | | | | | | 이*주 | 서울특별시 동작구 **로 ***, ***동 ****호(**동, *****아파트) | 240/1920 | | | | |
| | | | | | | | 김*정 | 서울특별시 서초구 **로**길 **, ***동 ***호(**동, ****** 아파트) | 80/1920 | | | | |
| | | | | | | | 김*영 | 서울특별시 강동구 ***로***길 **-*, ***호(*동) | 80/1920 | | | | |
| | | | | | | | 이*형 |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 ****동 ****호(**동, *******) | 160/1920 | | | | |
| | | | | | | | 김*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로***번길 **, ***동 ***호(**동,******아파트) | 160/1920 | | | | |
| | | | | | | | 강*호 | 경기도 부천시 ***로 ***, ***동 ***호(*동, *****) | 80/1920 | | | | |
| 변경 | 1 | 136-3 | 비닐하우스 | 비닐, 보온덮개 | 890㎡, 3동 | 농업용 | 김*임 | 서울특별시 강동구 ***로**길(**동) | | | | | |

| 연번 | 소재지 | |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면적 및 수량 | | 이용현황 | 소 유 자 | | | 이해관계인 | | | 비고 |
|---|---|---|---|---|---|---|---|---|---|---|---|---|---|---|
| | 당초 | 변경 | | | 당초 | 변경 | | 성명 | 주 소 | 지분 | 성명 | 주 소 | 소유권이외권리명세 | |
| 계 | | | | | | | | | | | | | | |
| 1 | - | 137-6 | 창고 | 10m×6m | - | 60㎡ | 농업용 | 신*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길 **-*(**동) | 3/9 | | | | |
| | | | | | | | | 김*연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로 ***, ***동 ****호(**동, ****아파트) | 2/9 | | | | |
| | | | | | | | | 김*경 |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길 **, ***호(**동, ****) | 2/9 | | | | |
| | | | | | | | | 김*화 |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길 **, ***동 ***호(**동, **아파트) | 2/9 | | | | |
| 2 | | | 창고 | 5m×3m | - | 15㎡ | 농업용 | 신*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길 **-*(**동) | 3/9 | | | | |
| | | | | | | | | 김*연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로 ***, ***동 ****호(**동, ****아파트) | 2/9 | | | | |
| | | | | | | | | 김*경 |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길 **, ***호(**동, ****) | 2/9 | | | | |
| | | | | | | | | 김*화 |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길 **, ***동 ***호(**동, **아파트) | 2/9 | | | | |
| 3 | | | 물탱크 | 철재 | - | 1개 | 농업용 | 신*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길 **-*(**동) | 3/9 | | | | |
| | | | | | | | | 김*연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로 ***, ***동 ****호(**동, ****아파트) | 2/9 | | | | |
| | | | | | | | | 김*경 |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길 **, ***호(**동, ****) | 2/9 | | | | |
| | | | | | | | | 김*화 | 서울특별시 광진구 ***로**길 **, ***동 ***호(**동, **아파트) | 2/9 | | | | |

# 구 공 고

◈ 강북구공고 제2020-959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위한 열람공고(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69-3호(1969.0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하고, 강북구고시 제1999-20호(1999.05.27.)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한 아래 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 및 2항에 의하여 강북구공고 제2020-462호(2020.04.16.)로 열람공고 하고, 강북구고시 제2020-77호(2020.05.28.)로 실시계획 작성고시 하고, 강북구공고 제2020-684호(2020.06.11.)로 열람공고(변경) 하고, 강북구고시 제2020-72호(2020.07.02.)로 실시계획 작성고시(변경)하였으나 물건조서 변경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하며,
2.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로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강북구청 도로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7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사업 개요

| 구분 | 사업의 명칭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업규모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비고 |
|---|---|---|---|---|---|
| 당초 | 오현로6길 2 ~ 106 도로개설 | 오현로6길 2 ~ 106 | 폭 6m 연장 520m | 강북구고시 제1999-20호 (1999.05.27.) | 일부 물건조서 제외 |
| 변경 | | 오현로6길 2 ~ 106 | 폭 6m 연장 520m | | |

다.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강북구 도봉로89길 13(수유동)]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작성 변경 고시일로부터 2년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등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토지조서 : 변경없음
- 물건조서 : 변경(붙임)

바.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도로관리과(☎901-58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사업의 명칭 : 오현로6길 2 ~ 106 도로개설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연번 | 구분 | 소재지 지 번 | 지목 | 지적 (㎡) | 편입 면적 (㎡) | 소 유 자 | | | 이 해 관 계 인 | | | 비고 |
|---|---|---|---|---|---|---|---|---|---|---|---|---|
| | | | | | | 주 소 | 성 명 | 지분 | 주 소 | 성 명 | 권리의 내 용 | |
| 1 | 기정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5-357 | 도로 | 460 | 460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219 동신아파트 102-1901 | 오명환 | 1/2 | - | - | - | 변경없음 |
| | | |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10 두산아파트 119-1703 | 오점종 | 1/2 | - | - | - | |
| 2 | 기정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5-315 | 구거 | 2 | 2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397, 208동 206호(장암동, 장암2단지 주공아파트) | 곽정이 | 30/77 | - | - | - | 변경없음 |
| | | | | |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1026 | 정승호 | 47/77 | - | - | - | |
| 3 | 기정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5-326 | 대 | 1 | 1 | 춘천시 효자2동 155-2 | 박병우 | 1 | - | - | - | 변경없음 |
| 4 | 기정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5-318 | 구거 | 22 | 22 |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 397, 208동 206호(장암동, 장암2단지 주공아파트) | 곽정이 | 30/77 | - | - | - | 변경없음 |
| | | | | |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1026 | 정승호 | 47/77 | - | - | - | |
| 5 | 기정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54-316 | 도로 | 12 | 12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1가 166 | 안동규 | 1 | - | - | - | 변경없음 |
| 6 | 기정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52-93 | 도로 | 1 | 1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1가 166 | 안동규 | 1 | - | - | - | 변경없음 |
| 7 | 기정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54-317 | 도로 | 50 | 50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1가 166 | 안동규 | 1 | - | - | - | 변경없음 |
| 8 | 기정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54-318 | 대 | 1 | 1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6길 94 | 신경임 | 1 | - | - | - | 변경없음 |

#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조서

사업의 명칭 : 오현로6길 2~106 도로개설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연번 | 구분 | 소재지 지번 |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수량 (㎡) | 소유자 | | | 이해관계인 | | | 비고 |
|---|---|---|---|---|---|---|---|---|---|---|---|---|
| | | | | | | 주소 | 성명 | 지분 | 주소 | 성명 | 권리의 내용 | |
| 1 | 기정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87-88 | 건물 | 시멘트벽돌조 경사지붕 단층주택 | 13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18나길 5 | 유성순 |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66 (을지로2가)(미아사거리역점) | 주식회사 하나은행 | 근저당권 | 변경없음, 공동담보토지 미아동 87-177 |
| | | | 옹벽 | | 1식 | | | | | | | |
| 2 | 기정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5-357 | 담장 및 대문 | | 1식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6길 23 | 조학주 |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미아동지점) | 주식회사 우리은행 | 근저당권 | 변경없음, 공동담보토지 미아동 87-31 |
| | | | | | | | |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미아동지점) | 주식회사 우리은행 | 근저당권 | |
| 3 | 기정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5-357 | 대문 | | 1식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패산로 139-1(미아동) | 성하룡 | | | | | 변경없음 |
| 4 | 기정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5-317 | 건물 |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세멘부록조 평옥개물치 | 2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5-42 미아아파트 8동 306호 | 이호연 |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84(을지로2가) (미아역지점) | 주식회사 국민은행 | 근저당권 | 공동담보토지 미아동 75-20 |
| | | | 대문 | | 1식 | | | | | | | |
| | 변경 | 제 외 | | | | | | | | | | |
| 5 | 기정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5-318 | 건물 |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 5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5-21 | 박인영 | | | | | |
| | | | 담장 | | 1식 | | | | | | | |
| | 변경 | 제 외 | | | | | | | | | | |
| 6 | 기정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5-240 | 건물 | 연와조, 세멘와즙 평가건주택, 세멘부록조 평옥개물치 | 2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6길 52 | 김옥남 | | | | | |
| | | | 담장 및 대문 | | 1식 | | | | | | | |
| | 변경 | 제 외 | | | | | | | | | | |
| 7 | 기정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5-240 | 건물 | 무허가건축물 | 2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225 래미안월곡아파트 110-701 | 최환영 | | | | | |
| | 변경 | 제 외 | | | | | | | | | | |
| 8 | 기정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5-212 | 건물 | 연와조 세멘와즙 | 2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4길 4-1 | 김진희 | | | | | |
| | | | 대문 및 담장 | | 1식 | | | | | | | |
| | 변경 | 제 외 | | | | | | | | | | |
| 9 | 기정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5-212 | 건물 | 1층 | 벽돌조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77, 112동 806호(중흥파크맨션) | 정정현 | 1 | | | | |
| | | | 건물 | 2층 | 벽돌조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77, 112동 806호(중흥파크맨션) | 정정현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숭인로 50, 111동 1603호 (래미안길음센터피스아파트) | 신옥희 | 1/2 | | | | |
| | | | 건물 | 지하층 | 벽돌조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숭인로 50, 111동 1603호 (래미안길음센터피스아파트) | 강심구 | 1 | | | | |
| | 변경 | 제 외 | | | | | | | | | | |
| 10 | 기정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5-212 | 담장 및 대문 | | 1식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77, 112동 806호(중흥파크맨션) | 정정현 | 31/93 | | | | |
| | | | | | |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77, 112동 806호(중흥파크맨션) | 정정현 | 15.5/93 | | | | |
| | | | 계단 | | 1식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숭인로 50, 111동 1603호 (래미안길음센터피스아파트) | 신옥희 | 15.5/93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숭인로 50, 111동 1603호 (래미안길음센터피스아파트) | 강심구 | 31/93 | | | | |
| | 변경 | 제 외 | | | | | | | | | | |
| 11 | 기정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5-212 | 대문 및 담장 | | 1식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49-87 | 송영심 | 1 |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압류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압류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강북구 | 압류 | |
| | 변경 | 제 외 | | | | | | | | | | |
| 12 | 기정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5-212 | 건물 | 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주택 | 3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 서울주택 도시공사 | 1 | | | | |
| | | | 대문 및 담장 | | 1식 | | | | | | | |
| | 변경 | 제 외 | | | | | | | | | | |
| 13 | 기정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5-212 | 대문 및 담장 | | 1식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 27, 302호(동방빌라) | 이병옥 | 1 | | | | |
| | 변경 | 제 외 | | | | | | | | | | |
| 14 | 기정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5-212 | 건물 | 연와조, 세멘와즙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 6 | 서울특별시 강북구 오현로6길 57 | 하정호 | 1/2 | | | | |
| | | | | |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5-120 | 김금희 | 1/2 | | | | |
| | 변경 | 제 외 | | | | | | | | | | |
| 15 | 기정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54-141 | 대문 및 담장 | | 1식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화랑로 495, 12동2002호 (예술인아파트) | 윤석호 | | | | | |
| | 변경 | 제 외 | | | | | | | | | | |
| 16 | 기정 |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54-141 | 대문 및 담장 | | 1식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10길 5, 203호 (현대빌라) | 이은례 | | | | | |
| | 변경 | 제 외 | | | | | | | | | | |

□ 위 치 도

송중초등학교
폭 6m, 연장 520m
미아사거리역
송샘로
삼양입구 사거리
송중초교앞 사거리
오현로
수도회
씨엠홀딩스
새생명 감리교회
송중동 주민센터
광은장로교회
미아경남 아너스빌1차
우리은행
솔샘빌딩
영진빌리트
미란빌라
김원장한의원
유봉빌딩
롯데백화점
와이스퀘어
영훈국제 중학교
영훈고등학교
영훈초등학교
승인시장
농협
홍익한의원
일도씨닭갈비 미아점
바다포차
CGV
에코피아
현대정밀
창문여자 고등학교
꿈나무문고
공영
래미안 길음센터피스

□ 현장사진

◈ 서초구공고 제2020-1294호

##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시설:예술의전당)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75호(1984.02.14)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315호(1984.05.26)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되어, 서초구고시 제2001-5호(2001.01.05), 서초구고시 제2003-100호(2003.09.01), 서초구고시 제2008-12호(2008.03.21), 서초구고시 제2008-31호(2008.06.16), 서초구고시 제2008-88호(2008.09.29), 서초구고시 제2009-74호(2009.12.17), 서초구고시 제2010-56호(2010.12.30), 서초구고시 제2013-53호(2013.05.16), 서초구고시 제2014-120호(2014.10.02), 서초구고시 제2015-94호(2015.08.06), 서초구 고시 제2016-109(2016.11.24.), 서초구고시 제2018-5호(2018.01.11.)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된 서초구 서초동 산130-6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 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3)에 비치되어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며, 본 열람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7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산130-6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1)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문화시설)
 2) 명칭 : 예술의전당
다.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1) 면적 : 166,789㎡(건축면적 32,359.95㎡, 연면적 128,577.54㎡)
 2) 규모 : 건폐율 19.40%, 용적률 48.24%, 건물동수 9동
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1) 대표자 : (기존) 예술의전당 사장 고학찬
 (변경) 예술의전당 사장 유인택
 2)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마. 사업의 시행기간 : (기존) 1984.5.28.~2019.12.31.
 (변경) 1984.5.28.~2021.12.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사. 열람장소 :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3)
아.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 서초구공고 제2020-1295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공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9-81호(2019.05.02.)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0-172호(2020.08.06.)로 실시계획 인가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 초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92-15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칭 : 서초구 서초동 1592-1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도시계획시설[소(국)3-3로선] 확장사업-
3. 사업의 규모

| 규모 | | |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결정일 | 비고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 | | | | |
| 소로 | 3 | 3 | 6 | 국지도로 | 131 | 서초동 1592-17 | 서초동 1590-15 | 2019.05.02. (서초구2019-81호) | - |

4. 사업시행자 명칭 및 주소
   - 명칭 : 마스턴제12호서초피에프브이 주식회사(대표 하병훈)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465, 20층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도시계획과(☎02-2155-6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파구공고 제2020-1322호

## 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18-1743('18.12.13)호로 열람공고하고, 2020년 제9차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20.07.08) 심의를 통해 수정가결 된 문정택지 (문정동 150번지 일대)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재열람공고 합니다.

3.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8월 27일
송 파 구 청 장

가. 공 고 일 : 2020.08.27.
나. 열람기간 : 2020.08.27. ~ 2020.09.10.
다. 열람장소 :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 | 비고 |
|---|---|---|---|---|---|---|
| | | | 기정 | 변경 | 변경 후 | |
| 신설 | 문정택지<br>지구단위계획구역 | 송파구 문정동<br>150번지 일대 | - | 증)447,135 | 447,135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 구역명 | 변경내용 | 결정(변경) 사유 |
|---|---|---|
| 문정택지<br>지구단위계획구역 | 신규지정:<br>증)447,135㎡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기존 도시기반시설(도로) 등에 관한 결정 사항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배치, 건축선 등에 관한 결정 사항
마. 관계도서 : 생략 (열람 장소에 비치)
바.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열람편의 및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담당: 정은애/☏:2147-3001)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끝.

# 사업소고시

##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0-239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 허가 받은자 | | 점용허가(사용) 개요 | | | | 허가 연월일 |
|---|---|---|---|---|---|---|
| 성 명 | 주 소 | 허가구역 | 점용면적 | 점용목적 | 점용기간 | |
|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서울시계 내 한강 (한남대교 외 1개소) | 선박 2척 | 정밀안전점검 | 2020.8.27.~ 2020.9.10. | 2020. 8.24. |

##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0-240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 허가 받은자 | | 점용허가(사용) 개요 | | | | 허가 연월일 |
|---|---|---|---|---|---|---|
| 성 명 | 주 소 | 허가구역 | 점용면적 | 점용목적 | 점용기간 | |
|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서울시계 내 한강 (가양대교 외 1개소) | 선박 2척 | 정밀안전점검 | 2020.9.1.~ 2020.9.25. | 2020. 8.24. |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20-241호

##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 허가 받은자 | | 점용허가(사용) 개요 | | | | 허가 연월일 |
|---|---|---|---|---|---|---|
| 성 명 | 주 소 | 허가구역 | 점용면적 | 점용목적 | 점용기간 | |
| 서울시설공단 |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 서울시계 내 한강(서호교) | 선박 2척 | 정밀안전점검 | 2020.9.1.~ 2020.10.8. | 2020. 8.24. |

# 사업소공고

◈ 한강사업본부공고 제2020-242호

## 한강 불법어구 폐기처분 공고(안)

내수면어업법 제26조(몰수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한강에서 몰수한 불법어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폐기처분함을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건　　명 : 한강 불법어구 폐기처분 공고
2. 근　　거 : 내수면어업법 제6조(면허어업), 한강어로제한고시( '86.9.1, 제627호)
3. 공고기간 : 2020. 8. 27 ~ 9.10.(15일간)
4. 불법어구

| 품 명 | 수 량 | 몰수일 | 몰수장소 | 비고 |
|---|---|---|---|---|
| 정치망 | 4 | 2020.8.20 | 난지생태섬 인근<br>(가양대교 기준 상류 약150m~350m 지점) | |
| 앵카 | 7 | | | |

5. 유의사항
   - 상기 불법어구는 한강사업본부 여의도관공선(02-3780-0574)에 보관중이며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공고 기간내에 소유자 확인이 안 될 경우 폐기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강사업본부 환경수질과(02-3780-07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타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251호

###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중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예스코
   - 주 소: 서울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23(용답동)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 403-3호
   - 면 적: 10.8㎡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지역정압기 설치
   - 내 역: 정압기실(2.7m×4.1m) 1개소
5. 점용기간: (당초)2015.07.24.~2020.07.23.
   (변경)2020.07.23.~2025.12.31.

##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253호

###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굴포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주식회사 E1
   -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간대로 92 LS용산타워 20층, 21층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 701-9, 701-11
   - 면　적: 19.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오수관로 매설
   - 내　역: 오수관로 매설 1식
5. 점용기간: (당초)2016.06.01.~2019.05.31.
   (변경)2019.06.01.~2024.06.30.

# 정 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54호

##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지정 정정 고시

「문화재보호법」 제70조,「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지정 사실을 고시합니다.

2020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개요

가. 문화재 지정 개요

| [당초]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정정] 지정종별 및 지정번호 | 지정 명칭 | 수량 | 규격(cm) | 조성연대 | 보관장소 (소유자) |
|---|---|---|---|---|---|---|
|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제477호 |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제77호 | 봉원사 대방 석조여래좌상 (奉元寺 大房 石造如來坐像) | 1구 | 상 높이 37, 무릎 너비 23 | 조선 후기 (19세기) |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 |

나. 지정 사유

1) 문화재자료

【 봉원사 대방 석조여래좌상(奉元寺 大房 石造如來坐像) 】

봉원사의 대방에 봉안되어 있는 37cm 크기의 작은 석조여래좌상으로, 석조여래좌상의 바닥에는 복장공이 뚫려 있고, 안에는 각종 복장물이 납입되어 있었음. 불상 조성 당시의 복장발원문은 없고,『금강반야바라밀경』, <팔엽대홍련지도>, <준제구자천원지도>, <열금강지방지도> 등 각종 다라니만 발견되었음. 복장낭은 '證明臣 華應 亨眞 謹封' 라 쓰인 띠를 둘러 봉했는데, 이들 경전과 다라니는 20세기 전반에 활동했던 화응형진이 봉한 것으로 보아 불상 조성 당시에 넣은 것이 아니라, 20세기 전반에 재복장한 복장물로 추정됨.

본 조사대상은 경주 불석으로 만든 작은 크기의 상으로, 19세기 경주 불석으로 제작한 불상의 특징인 동안의 얼굴, 짧은 목, 단순하고 간결한 옷주름, 양 손을 최대한 신체에 밀착시키고 있어 강원도 양구 심곡사 석조여래좌상(1887) 등과 같이 19세기 후반 서울, 경기도, 강원도를 비롯해 경상도 지역 등에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음.

봉원사 대방 석조여래좌상은 정확한 제작 연대를 알려주는 복장발원문이 발견 되지 않았지만, 19세기 후반 경주 불석으로 제작한 불좌상들과 동일한 형식 및 양식을 지니고 있어 제작 시기를 쉽게 추정할 수 있으며, 보존 상태 또한 양호하여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로 지정해 보호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됨.

2. 문화재 지정일자 : 서울시보 고시일자
3. 문화재자료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붙임 1> 참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02-2133-26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서울특별시 문화재자료 지정을 위한 조사보고서

【 봉원사 대방 석조여래좌상(奉元寺 大房 石造如來坐像) 】

서대문구 봉원사의 대방에 봉안되어 있는 37cm 크기의 작은 석조여래좌상이다. 대방은 잘 알려진 것처럼 사찰에 머물며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한 곳인데, 봉원사 대방은 1967년에 홍선대원군의 별장인 '아소정(我笑亭)'을 옮겨 세운 것이다. 대방 석조여래좌상은 불석(佛石 혹은 沸石, Zeolite)이라 불리는 경도가 낮은 돌로 조각했다. 불좌상의 바닥에는 14.3×12cm 크기의 복장을 넣기 위한 구멍이 뚫려 있고, 안에는 각종 복장물이 납입되어 있다. 아쉽게도 불상 조성 당시의 복장발원문은 없고, 『금강반야바라밀경』과 <팔엽대홍련지도(八葉大紅蓮之圖)>, <준제구자천원지도(准提九字天圓之圖)>, <열금강지방지도(列金剛地方之圖)> 등 각종 다라니만 발견되었는데, 이 경전과 다라니는 종이로 만든 방형의 복장낭 안에 들어 있었다. 복장낭은 '證明臣 華應 亭眞 謹封'라 쓰인 띠를 둘러 봉했는데, 이들 경전과 다라니는 불상 조성 당시에 넣은 것이 아니라, 20세기 전반에 재복장한 복장물로 추정한다. 띠에 적힌 화응형진(和應亨眞)이 20세기 전반에 활동하던 승려이기 때문이다. 전반에 활동해은 1923년 10월 15일에 강원도 보개산 석대암에서 생전예수천일기도대법회(生前預修天日器度大法會)를 개최했으며, 1928년 강화 보문사 마애석불좌상에도 '造佛華應禪師'라고 그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의 행적은 마곡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화승 약효금호(若效錦湖, 1875-1928)의 행장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쉽게도 복장발원문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이 불좌상은 재료, 양식 특징으로 미루어 19세기 후반에 조성했음을 알 수 있다. 경주 불석이 불상의 재료로 유행하기 시작한 때는 18세기 무렵부터이지만, 이 불좌상과 같이 크기가 작고, 양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린 모습의 상은 특히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주로 유행했기 때문이다.

봉원사 대방의 석조여래좌상은 육계 없이 정상에 정상계주(頂上髻珠)와 그 아래로 반달 모양의 중심계주(中心髻珠)를 두었으며, 둥글넓적한 얼굴에는 이목구비를 조그맣게 그려 넣었다. 특히 코가 짧고 뭉툭하며, 인중이 짧고, 턱에 살이 많아 아기와 같은 얼굴 모습을 하고 있어, '아기부처'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마에 백호는 별도로 그려 넣지 않았다. 나발(螺髮)도 한 돌로 같이 조각했는데, 앞면과 옆면만 나발을 새기고 뒷면은 새기지 않았다. 목이 짧고, 목에는 삼도가 없다. 어깨는 좁고 상체가 짧으며 무릎이 높은데, 두 손 모두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가지런히 무릎 위에 두었다. 두 장의 가사를 어깨에 둘렀는데, 가장 바깥의 대의(大衣)는 변형 편단우견 형식으로 걸쳤다. 전체적으로 호분이 두텁게 발라져 있어 조각선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처럼 아기 같은 얼굴에 작은 불상 크기, 독특한 손 모양을 하고 있는 불상은 서울,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19세기에는 일명 '아기부처'라고 불리는 이와 같은 30cm 조금 넘는 석조여래좌상을 각 사찰에서 많이 조성했는데, 이 가운데 1887년작 양구 심곡사 석조여래좌상은 제작 연대가 정확히 밝혀져 있다. 심곡사 상을 비롯해 서울시 성북구 진관사 칠성각 석조여래좌상, 종로구 청룡사 심검당 석조여래좌상, 경국사 석조여래좌상, 경기도 파주군 보광사 수구암, 춘천시 흥국사 대웅전 석조여래좌상, 강릉시 법왕사 삼성각 석조여래좌상 등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동일한 모습의 불좌상을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재질이 경주 불석이며, 제작 시기는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이다.

불석이 불상의 재료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대략 18세기 무렵부터이다. 불석은 경상북도 경주 동해변의 불석산(佛石山, 혹은 佛靈山)에서 산출되는 제오라이트 계통의 약한 돌이다. 불석은 돌이지만 재질이 부드러워 제작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 잘 부숴진다는 단점도 있다. 불석의 산지인 불석산은 함월산 자락에 있으며, 이런 이유로 불석을 재료로 하는 불상은 경주 기림사 인근에서 주로 제작되었으며, 배로 이동하기 쉬운 해안선 인근의 사찰에서 많이 봉안했다. 해안선을 따라 전라도 사찰에도 그 예가 적지 않으며, 기림사 인근의 내륙 지역은 육로를 이용해 불상을 옮겨 봉안했다. 이처럼 18세기부터 경주 불석을 이용한 불상이 유행하기 시작하지만, 봉원사 대방의 석조여래좌상과 같이 크기가 작고 양손을 두 무릎에 얹은 손 모양의 불좌상은 주로 19세기에 많이 조성했다. 불상 제작에서 화강암과 달리 부드러운 재질의 불석을 재료로 하는 경우 파손 방지를 위해 돌출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특징이 있다. 이런 이유로 신체를 두툼하게 표현하며, 양 손을 무릎 위에 붙여 파손 방지를 의도했다.

봉원사 대방의 석조여래좌상은 경주 불석으로 만든 작은 크기의 상이다. 19세기 경주 불석으로 제작한 불상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동안의 얼굴, 짧은 목, 단순하고 간결한 옷주름, 양 손을 최대한 신체에 밀착시키고 있어 이 불좌상의 제작 시기를 알려준다. 유사한 사례는 서울, 경기도, 강원도를 비롯해 경상도 지역 등에서 여러 예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강원도 양구 심곡사의 1887년 석조여래좌상은 복장발원문을 통해 정확한 제작 시기를 알 수 있어 봉원사 대방 석조여래좌상의 제작 연대를 추정하는데 좋은 자료가 된다.

봉원사 대방의 석조여래좌상은 아쉽게도 정확한 제작 연대를 알려주는 복장발원문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경주 불석으로 제작한 여러 불좌상과 동일한 형식 및 양식을 지니고 있어, 제작 시기를 쉽게 추정할 수 있으며, 보존 상태 또한 양호하여 서울시 문화재자료로 지정해 보호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다,

| 참고 자료 | 문화재 이미지 |
|---|---|

도 1. 봉원사 대방 석조여래좌상

도 2. 봉원사 대방 석조여래좌상 뒷면

도 3. 봉원사 대방 석조여래좌상 복장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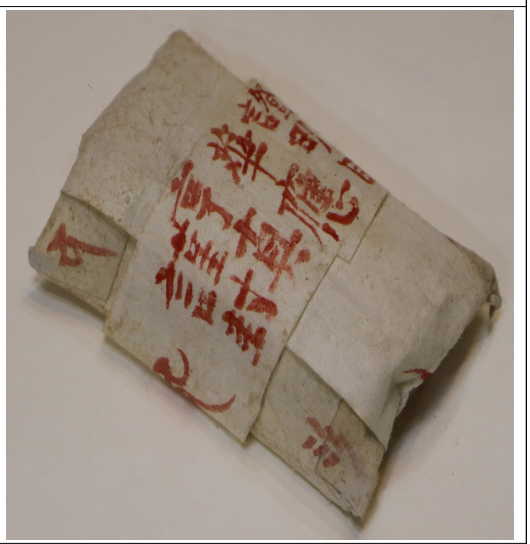

도 4. 봉원사 대방 석조여래좌상 복장물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 기관의 장 | 공람 | | | | | | | | |
|---|---|---|---|---|---|---|---|---|---|
| 선람 | | | | | | | | | |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시민소통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43 문의 : ☎120